

우리농산물 사용, 학교직영, 무상급식 실현을 위한

'학교급식법' 개정 공청회



- 일시 : 2004년 7월 21일 (수) 오후 3시 ~ 6시
- 장소 : 국회의원회관 대강당
- 주최 : 학교급식법 개정과 조례제정을 위한 국민운동본부

프로그램

14:30 등록

15:00 개회식 - 사회 ; 이병주 (국민운동본부 공동집행위원장)

- 개회사 : 문경식 (국민운동본부공동대표)
- 축 사 : 3당 대표의원인사
- 인 사 : 참가단체대표 및 지역연대대표

15:20 공청회 주제 발제 - 사회 ; 배옥병 (국민운동본부 공동대표)

- 학교급식 개선은 공교육과 우리 농업을 살리는 일입니다
이빈파 (국민운동본부 공동집행위원장, 학교급식전국네트워크 사무처장)
- 우리농산물 학교급식을 위한 예산지원의 WTO 협정상의 조건
송기호 (변호사, 푸드시스템연구회)

16:00 휴식

16:10 패널 토론

- 복기왕 (열린우리당 국회의원)
- 김영숙 (한나라당 국회의원)
- 최순영 (민주노동당 국회의원)
- 이유훈 (교육부 특수교육보건과장)
- 최대휴 (농림부 농산물유통국 식품산업과장)
- 장상진 (국무조정실 식품안전 T/F팀장)
- 이철호 (전교조 참교육연구소 부소장)
- 박응두 (전국농민회총연합 정책위원장)

17:30 질의응답 및 장내토론

18:00 폐회

글심는 순서

■ 인사말	1
■ 발제문	
학교급식 개선은 공교육과 우리 농업을 살리는 일입니다	15
- 이빈파 (국민운동본부 공동집행위원장, 학교급식전국네트워크 사무처장)	
우리농산물 학교급식을 위한 예산지원의 WTO 협정상의 조건	64
- 송기호 (변호사, 푸드시스템연구회)	
■ 패널 토론문	
학교급식법 개정을 위한 공청회 토론문	72
- 복기왕 (열린우리당 국회의원)	
미래세대의 튼튼한 체력은 국가경쟁력	74
- 김영숙 (한나라당 국회의원)	
교육과 농업, 인간과 자연을 위한 과감하고 야심찬 도전, 학교급식법 개정	78
- 최순영 (민주노동당 국회의원)	
학교급식법 개정에 대한 의견	83
- 이유훈 (교육부 특수교육보건과장)	
학교급식법 개정방안 토론	87
- 최대휴 (농림부 농산물유통국 식품산업과장)	
학교급식법 개정방안 토론	88
- 장상진 (국무조정실 식품안전 T/F팀장)	
교육과 생명은 상품이 아니다	90
- 이철호 (전교조 참교육연구소 부소장)	
학교급식법 개정방안 토론	94
- 박응두 (전국농민회총연합 정책위원장)	
참고자료/ 학교급식조례제정과정의 갈등해소 방안 국무조정실	97

학교급식이 학교교육으로 도입된 지 어언 10여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이제 전국 거의 모든 학교에서 704만 명이나 되는 학생이 매일 한 끼 이상을 제공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학교급식 운영에 있어서 수입식품을 비롯한 질 낮은 급식재료 사용과 잦은 식중독사고로 우리 아이들을 괴롭혀왔습니다.

학교급식의 질 개선을 목표로 전국의 시민사회단체가 연대하여 학교급식법 개정과 조례제정을 위한 운동에 헌신해 왔습니다. 오늘의 이 공청회는 그동안의 전국적인 범국민 행동으로 진행해온 학교급식법 개정과 조례 제정운동의 성과를 모으고, 앞으로 학교급식 운동을 더욱 힘있게 진행하기 위한 방향을 찾는 자리로 마련되었습니다.

학교급식은 • 학교가 직접운영하며 • 안전한 우리 농산물사용을 원칙으로 • 첨진적으로 무상급식을 확대해가는 국가공교육으로 자리매김 되어야 합니다. 올바른 방향으로 학교급식법이 개정되어 우리아이들에게 질 높은 급식을 제공하면서, 국가의 생명기반산업인 농업발전에도 조금은 기여할 수 있도록 좋은 의견을 나누어 주시기 바랍니다.

2004. 7. 21

학교급식법개정과 조례제정을 위한 국민운동본부

문경식(전국농민회총연맹), 박경양(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배옥병(학교급식전국네트워크), 조희주(전국교직원노동조합, 이상 부문별상임공동대표) 고병수(제주), 김정숙(영남권), 정방환(중부권), 이복흠(호남권, 이상 지역별 상임공동대표)

개회사

여러분의 소중한 활동과 노력이 한국농업과
우리 아이들을 지키는 소중한 밑거름이 될 것입니다

문 경 식

전국농민회총연맹 의장

오늘 이렇게 우리 농업과 아이들의 소중한 미래를 책임지겠다는 열의로 이곳까지 달려와 주신 많은 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1년의 반을 훌쩍 보내며 지난 시기를 되돌아보면 우리는 너무나도 많고 엄청난 역사의 질곡을 걸어온 것 같습니다.

사상 유래 없는 대통령에 대한 탄핵 처리가 있었고, 4.15총선은 여야를 바꾸고 명실상부한 진보정당인 민주노동당의 국회진출을 이루어냈습니다. 명분 없는 전쟁이 되어버린 이라크에 추가파병을 결정하고, 국민의 소중한 생명이 사라지는 어처구니없는 결과는 우리에게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도대체 이 나라가 가고 있는 길이 어딘지 고민하게 됩니다.

작년 우리농민들이 그렇게 반대했음에도 불구하고, 한·칠레 자유무역협정이 체결되지 않으면 곧 나라가 망할 듯이 떠들어 대던 정부와 언론의 거짓말은 엄청난 무역적자가 발생함으로써 백일하에 드러났습니다. 그런 정부가 한 술 더 떠 이제는 한일, 한미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하려 합니다. 또한 올해 쌀 재협상을 통하여 우리농민들의 마지막 생명이며 보루인 쌀마저 외국에 팔아넘기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기에 '학교급식법개정과 조례제정을 위한 국민운동본부'(이하 급식운동본부)의 활동은 우리농업과 우리민족을 지키겠다는 막중한 역사적 의미까지 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동안 몇 가지 쟁점도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학교급식에 있어 우리농산물로 할 것이냐 아니면 우수농산물로 할 것이냐 하는 것들입니다.

급식운동본부는 입장차이와 견해를 달리한 부분에 대해서는 수많은 찬반 토론과 회의를 통해 차이를 극복하고 이해를 넓혀왔습니다. 우리농산물로 할 것이냐 아니면 우수농산물로 할 것이냐 하는 쟁점은 '우리농산물'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WTO 위반 운운하며 트집을 잡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는 우리의 농업과 우리의 아이들을 지키려고 하는 의지가 없다는 것이 여실히 드러났습니다.

동지여러분 그리고 내빈여러분

우리는 많은 논란과 어려움을 딛고 학교급식법을 스스로 만들고 국회에 제안까지 했습니다. 좀더 강력한 활동을 통하여 17대국회에서는 우리가 만든 법안이 한자의 자구 수정도 없이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합니다.

그리하여 우리농촌과 농민, 국민모두가 잘사는 사회를 만들어 가는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합시다.

다시 한번 이 자리에 참석해주신 모든 분들께 급식운동본부 대표님들을 대신해서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끝까지 활발한 토론과 의견을 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측사

학교급식의 방향은 무상, 직영급식, 친환경 우리농산물 사용입니다

유 기 홍

열린우리당 국회의원, 교육희망 연구책임의원

올바른 학교급식법개정을 위한 공청회가 열리게 됨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아울러 의미있는 자리를 준비하신 <학교급식법개정과 조례제정을 위한 국민운동본부>께 수고와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현재 거의 모든 학교에서 학교급식을 시행하고 있고, 약 700여만명의 학생들이 하루 한 끼 이상의 식사를 제공받고 있습니다. 10년전 처음 실시되었을 때에 비해 양적, 질적으로 학교급식이 확대, 개선되었고, 각급 학교별로 영양사를 두어 학생들의 성장에 맞는 균형적 식사조절을 하고 있다고 교육부는 설명합니다.

그러나 개선해야 할 문제점이 있습니다. 우선, 우리 청소년들의 건강한 식생활을 위해 학교급식을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는 보다 확고한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일부 사립학교의 교장 및 교직원이 학생들의 급식업체 선정에 위탁급식업체로부터 들어오는 금품과 향응의 정도에 따라 결정했다는 작년 10월의 충격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폐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학교급식에 대한 감시 기능이 강화되어야 하며, 학교급식업체의 선정에 대한 선명한 기준과 선발과정이 준비되어야 합니다. 결국 학교구성원이 학교급식의 전 과정에 보다 밀착하여 참여할 수 있도록 학교자치를 실현해야 합니다.

국민운동본부가 제안하는 바대로, 학교급식에 대해 국가와 학교의 최소한의 책무를 다하기 위해서는 무상급식이, 급식의 질과 위생안전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직영급식이 학교급식이 나아갈 방향입니다. 덧붙여 학교급식의 질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친환경적인, 우리 농산물 중심의 식재료를 사용함은 물론, 위생안전 관리체계를 제대로 구축하고 전문인력 양성도 종합적으로 고려되어야 합니다.

학교급식이 제대로 관리·운영되지 않는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우리의 아이들에게 되돌아올 것입니다. 올바른 학교급식법의 방향과 과제에 대해 여야 교육위원과 시민사회단체가 함께 검토하고 상의할 수 있는 자리가 마련되어 반갑기 그지없습니다. 학교급식의 제도적 개선책에 대한 오늘 논의가 학교급식법의 올바른 개정으로 이어질 것을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학교급식개선은 정말로 국가와 공교육, 그리고 우리 농업을 살리는 일입니다

박 홍 수

열린우리당 국회의원

제가 국회에 들어온 지 어언 두 달이 지나갑니다. 특히나 제가 농민단체의 회장으로 늘 상대해야 했던 국회의원, 농정현안에 대해서 때로는 협조를 부탁하고 때로는 반협박에 가까운 억지를 부리던 대상이던 국회의원 당사자가 되고 보니 느끼는 점도 많고 감회가 새로운 점도 많습니다.

국민들의 개혁열망을 받아 안고 출범한 17대 국회가 그동안의 정치적 현안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과연, 그 열망에 얼마나 부응했는지에 대해서는 다양한 평가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이번 17대 국회는 16대 국회보다는 조금이라도 전진했다는 것입니다. 이번 학교급식법 개정을 위한 공청회를 접하면서 그러한 생각이 더욱 듭니다.

학교급식법 개정은 2001년 6월부터 제가 정치권을 향해 꾸준히 제기해 온 사항입니다. 건의도 하고 농민단체 공동으로 입법 청원도 해 보았지만 결국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 동안 많은 의원님들이 관심을 가지고 개정안을 제출해 주셨던 덕분에 교육인적자원부의 시행령도 바뀌었고 각 자치단체의 학교급식 조례도 제정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그러나 아직 우리가 요구하는 학교급식법의 핵심적인 개정 요구 사항들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번만큼은 학교 급식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와 많은 의원님들의 지지속에 반드시 개정되리라 믿습니다. 저 또한 학교급식법 개정에 적극적으로 발벗고 나서겠습니다.

이 자리에 오기까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애써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리며 마지막으로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학교급식 개선은 정말로 국가와 공교육, 그리고 우리 농업을 살리는 길입니다”

아이들에게 건강을! 농민에게 희망을!

강 기 갑

민주노동당 국회의원

우리농산물 사용, 학교직영, 무상급식 실현을 위한 '학교급식법' 개정 공청회 개최를 축하드립니다.

민족의 미래인 아이들에게 건강한 먹거리를 공급하는 것은 더는 미룰 수 없는 우리 사회의 책무입니다. 또한 농업을 국민 건강의 디딤돌이자 안전한 먹거리 제공의 산실로 만드는 것 또한 우리 사회의 중요한 역할입니다. 이것을 가능케 해주는 제도적 틀이 바로 '학교급식법'이라고 생각합니다.

1년이 넘는 동안 급식운동본부 구성원 여러분의 각고의 노력이 없었다면 우리 사회에 이 같은 가치를 확산 시킬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동안 WTO규정 운운하며 '우리 농산물 사용'을 법제화 하는 것이 어렵다는 입장만을 되풀이해왔던 정부도 시군구 기초자치단체는 가능하다는 새로운 유권해석을 내렸습니다. 아직 미완이지만 분명한 전진입니다.

학교급식법의 올바른 개정과 이를 위한 각계의 노력은 우리 사회에 '건강한 삶과 농업농촌'에 대한 새로운 인식과 희망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노력을 더욱 배가하여 학교급식법을 제대로 개정해 냅시다. 우리 사회 변화의 작지만 소중한 희망의 불꽃이 되리라 확신합니다.

'아이들에게 건강을! 농민에게 희망을!'

이 두 가지는 별개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의 문제입니다. 건강과 희망을 주는 학교급식법이 되도록 저 역시 미력이나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공청회 개최를 축하드립니다.

마침내 열매 맺기 시작한 「학교급식조례 제정운동」과 전국에서 들불처럼 타오른 학교급식개선운동을 급식법 개정으로 “우리아이들에게 최고의 급식을”

배 옥 병

학교급식법개정과조례제정을위한국민운동본부 공동대표
학교급식전국네트워크 상임대표

이 자리를 빛내주시고 함께 하시기 위해 먼 길을 달려오신 전국에 급식조례제정운동을 위해 앞장서온 많은 동지들과 각 정당의 의원님들, 관계부처의 관계자여러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전국의 각 시도와 시군구에서, 그야말로 전국이 「학교급식법 개정과 조례제정을 위한 국민운동 본부」를 중심으로 광범위하게 전개되어 온 급식개선 운동은 이제 학교급식을 개선하자는 운동의 차원을 넘어, 풀뿌리시민운동과 민중운동이 주도하는 자치입법운동이자, 친환경 생명운동으로 까지 발전되었습니다.

전국에서 산발적으로 추진되던 학교급식 조례 제정운동의 성과들이 모여 국민운동 본부가 창립된 바로 전날인 11월 10일에, 교육인적자원부와 행정자치부는 ‘급식법 시행령을 고쳐서 자치단체장이 초중고교 급식재료비 지원을 위한 조례를 제정할 수 있도록 검토하겠다’고 발표하였고, 2003년 12월 30일에 학교급식법시행령중개정령을 공포되었습니다. 이로써, “법령으로 학교급식의 질 개선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지원 근거가 마련”되면서, 학교급식 조례 제정 서명운동은 전국의 16개 시도와 대부분의 시군구에서 더욱 활발히 전개되었고, 그러한 서명운동의 결과(서울 21만명, 경기15만명 전국 수십만명 등)로 만들어진 지자체별 학교급식조례들이 하나 둘씩 효력을 발생하여 마침내 전남, 인천시, 나주시, 등에서 열매를 맺기 시작한 학교급식조례제정운동은 우리운동의 새로운 문화를 창출 하였습니다.

학교급식 개선 운동이 이처럼 확산되고 발전되게 된 배경으로는, 학교급식 문제가 학부모로 대표되는 전체 국민들의 이해와 깊은 관계가 있는 문제라는 점과 함께, 공통의 관심을 가진 활동가들이 자발적이고 전국적인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각 지역의 운동 진전 상황과 성과들을 신속하게 공유하면서 운동이 전국에 확산되었던 것입니다.

시행령이 개정되고 조례가 제정된다고 해서 학교급식이 개선될 것이라고 선불리 예단할 수 없는 것은, 성급한 급식 확대 정책과 효율성의 논리에 따라 학교급식을 해 온 위탁급식 업체들의 반발이 적지 않고, 특히, 막강한 자본력을 배경으로 한 일부 대기업 위탁업체들의 반발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듯 어려운 상황에서 오늘 우리는 급식법개정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국민운동본부의 전신인 '학교급식법개정과 조례제정을 위한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이하 연대회의)는 지난 16대 국회에서 국회의원들을 통한 급식법개정을 위해 노력을 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지난해 3월 서울지역 14개학교(경기 2개학교)에서 1,900여명의 학생들이 동시다발적인 대형 집단 식중독이 발생하여 사회문제로 대두되었고, 이로써 학교급식의 근본적인 개선과 대책이 필요하다는 여론이 확산되면서 국회에서도 공식적으로 문제제기를 함으로써 교육부장관으로부터 직영으로 전환하겠다는 답변을 끌어낸 바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법개정 작업은 진전이 이루어지지 않자 연대회의는 2003년 6월12일 이미경의원을 대표로 국회에 발의하여 학교급식법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하였으나 16대 국회가 폐기하였습니다.

지금 전국적으로 펼쳐지고 있는 급식법개정과 조례제정 운동은 단지 학교급식의 질을 향상시키는 운동이라는 차원을 넘어서, 우리나라의 사회운동사에서 다음과 같은 의미를 함께 갖고 있습니다.

첫째, 학교급식 개선운동은 아이들이 건강한 몸과 마음을 갖게 하는 운동입니다. 그런 점에서 급식개선 운동은 온갖 부정과 비리로 얼룩진 우리 사회 어른들의 이미지를 벗고, 아이들로부터 존경과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운동이 될 것입니다.

둘째, 급식 조례를 통해서 안전한 우리농산물, 친환경적인 농축수산물의 사용을 권장하고 필요한 예산을 자치단체와 정부가 적극 지원함으로써, 무너져 가는 우리 농축수 산업을 회생시키고, 농어민들에게 삶의 희망을 키워줄 수 있는 운동입니다.

셋째,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일어서서 지방의회와 자치단체장을 움직이고 자치입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진정한 풀뿌리 자치를 배우며 몸에 익히는 운동입니다.

앞으로, 급식법 개정과 조례 제정 운동은 머지않아, 안전한 우리 농산물을 아이들에게 먹일 수 있게 되고, 아이들에게 전통적인 식습관을 익히게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고사 위기에 있는 우리 농업을 회생시켜 농민들에게 새로운 삶의 희망을 주게 되고, 무엇보다도 자연과 생명이 존중되는 친환경 사회를 만드는 일에 기여 할 것이라고 굳게 믿습니다.

끝으로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우리 모두가 염원하는 우리농산물사용 직영 무상급식을 실현하기 위한 학교급식법개정에 힘을 모읍시다.

학교급식의 올바른 운영은 국가 공교육의 중요한 핵심입니다

박 경 양

학교급식법개정과조례제정국민운동본부 상임대표
(사)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회장

학교급식의 올바른 운영은 국가 공교육의 중요한 핵심이 됩니다. 학교급식의 목표를 세우고 이를 실행하는 모든 과정에서 가장 교육적인 방법으로 운영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교육의 주체인 학부모들과 학생들, 교사들이 학교 급식을 통해 학교의 민주주의를 체험하고 상호 학습하며 그 결과 서로 신뢰하는 교육공동체를 실현할 수 있는 길이기도 합니다.

우리나라 학교급식은 학생 대부분이 급식을 하고 있으나 아직 교육의 일환으로서 운영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특히 위탁업체의 운영이 보장된 90년대 말의 학교급식법 개정으로 우리 학교 급식은 안전성이나 투명성문제가 위태로울 만큼 퇴보한 것도 사실입니다. 게다가 최근 학부모들의 참여를 보장하기 위한 학교급식소위원회나 급식점검단 활동은 근거 법률이 미약하다는 소극적 해석으로 단위 학교의 학부모 활동이 위축되거나 정당한 활동 조차 제약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제반 문제를 해소하고 나아가 보육시설 아동과 형편이 어려운 청소년들에게도 국가복지의 의무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학교급식법이 제대로 개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번 학교급식법개정 공청회는 전환의 시기에 놓인 우리나라 학교급식의 발전적 틀을 모색하는 매우 중요한 기회입니다. 모처럼 학부모 학생 교사와 시민사회의 의견이 전향적으로 수렴되고 국가 정책에 입안될 수 있는 공청회가 될 것을 기대합니다.

아이들의 건강한 삶은 우리농산물을 사용한 무상급식에서 출발해야

원 영 만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위원장

학교급식에서 매년 식중독 사고가 반복되고 있다. 금년 4, 5월 두 달 동안만 해도 무려 15개교에서 1,397명의 환자가 발생한 것은 그동안 정부가 마련한다는 급식개선 정책이 근본적으로 잘못된 정책임이 드러난 것이다.

아이들은 '나라의 미래'라고 한다. 그렇다면 국가가 아이들의 건강을 책임질 수 있도록 급식체계를 만들어 나가야 한다. 그러나 현실은 그와 반대로 아이들을 상대로 돈벌이를 수월하게 만드는 위탁급식체계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그동안 위탁급식으로 인한 각종 급식비리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다. 자라나는 아이들을 상대로 수입식품, 유효기간이 지난 식품 등 저질 식재료를 사용하여 음식을 만드는 일은 결코 용납할 수 없는 살인행위이다.

'학교급식법개정과 조례제정을 위한 국민운동본부'(이하, 급식운동본부)는 전국의 광역단위는 물론 기초지방자치단체까지 학교급식조례제정을 추진하면서 학교급식법개정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그리고 정부에 대하여 급식개선정책의 원칙과 방향을 첫째, 학교직영, 둘째, 우리농산물 사용 의무화, 셋째, 무상급식이라는 3가지 원칙을 제시하였다.

전남에서부터 광주, 전북 등 전국 각 지역에서 '우리농산물 사용'을 조례로 제정하고 있다. 너무나 당연한 일이다. 그러나 교육부가 나서서 조례제정을 방해하고 있다. 아이들의 건강을 최우선적으로 생각하고 교육정책을 펼쳐야 할 교육부는 '우리농산물 사용'이 WTO규정에 위반된다는 이유로 조례를 제정한 도의회를 상대로 제소를 했다. 과연 상식적으로 있을 수 있는 일인가. 교육부가 WTO의 대리인이 아니고서야 어찌 이런 일을 벌일 수 있겠는가.

이미 유럽이나 미국 등은 이미 자국의 농산물을 학교급식에 사용하고 있다. 교육부는 제소를 철회하고 국민운동본부가 제시하는 3대원칙(학교직영, 우리농산물 사용의

무화, 무상급식)을 학교급식법 개정의 원칙으로 삼아야 한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돈벌이 대상으로 생각하는 자본의 탐욕은 WTO를 앞세워 세상을 파괴하고 있다. 이미 농촌이 파탄나고 우리들의 먹을거리가 위협당한지 오래다. 따라서 우리농산물 사용을 통해 황폐화된 농업을 살리고 자라나는 우리 아이들에게 믿을 수 있는 안전한 먹을거리를 제공하는 일은 무엇보다 중요한 문제이다.

또한 아이들을 대상으로 돈벌이하는 위탁급식이 아닌 학교직영을 통해 '급식도 교육이다'는 점을 분명히 해야 한다. 특히, 노동자 민중에 대한 자본의 노동착취가 극심해져가는 현실에서 아이들의 건강권, 인권을 지켜나가기 위해 반드시 무상급식을 쟁취해야 한다. 이것은 최소한의 국가의 책임이다.

17대 국회가 공공성에 기초한 학교급식법을 제정하도록 우리들의 힘을 모으자. 단결 투쟁!

올바른 급식법 개정은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살리는 일이다

김 정 속

부산경남급식운동본부 상임대표

학부모와 우리 아이들의 오랜 숙원인 학교급식법 개정에 대한 논의는 우리 급식운동본부의 큰 사업으로 많은 논의와 의견을 수렴해 왔다.

이 운동은 정부 당국과 국민 모두가 학교급식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학교급식의 질과 운영 관리 등의 내용을 널리 알림으로써 아동과 청소년들의 건강권과 행복권, 교육기본권을 보호하는 커다란 일이다.

우리의 이러한 노력이 있음에도 교육부에서 내놓은 급식법 개정안에는 학교급식 직영의 원칙은 빠진 채 위탁급식을 다양화하고 업체지원까지 하면서 학교장의 책무강화라는 미명으로 보기 좋게 포장하여 기만하고 있으며, 유치원을 포함시키는 것과 급식소위원회 설치 의무화 문제등에서 교육의 본질과 원칙을 무시하는 방향으로 개정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오늘의 공청회를 통해 교육부가 학교급식을 교육으로 바라보며 전 국민이 요구하는 내용으로 학교급식법이 개정되길 바란다.

학교급식은 교육입니다

성 방 환

학교급식조례제정운동총본부 대표

전국 각 지역에서 각계각층의 뜨거운 열망을 모아 진행되고 있는 학교급식법개정과 학교급식조례제정을 위한 운동은 학생들의 건전한 심신발달과 국민의 식생활 개선에 기여하며, 나아가 우리농업을 회생시키는 원동력이 될 것입니다.

현재 전국의 모든 학교에서 학교급식이 실시되고 있지만, 학교급식을 둘러싼 많은 잡음들이 그치지 않고 있으며, 더욱 심각한 문제는 저급·수입 농산물이 급식재료로 사용되는 결과, 학교급식이 오히려 학생들의 건강을 위협하고 우리 농업기반의 붕괴를 가속화시키고 있다는 점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또한 학교급식의 식재료로 지역의 농수축산물을 우선적으로 사용케 함으로써 지역의 농가를 보호할 수 있을 것이며, 이는 WTO체제하에서 우리 쌀을 지켜 내고 우리 농업을 지켜 나가는 식량 안보를 이루는 하나의 대안이 될 것이다.

그동안 우리는 그 동안 학교급식의 본질적 문제는 무엇보다 학교급식을 교육으로 인식하지 못하는 교육당국과 관료의 의식 때문에 발생한 제도적 오류라는 문제제기와 함께, 정부당국이 학교급식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조속히 학교급식법을 개정하여 운영체계를 개선할 것을 지속적으로 촉구하였습니다. 그러나 정작 입법주체인 정부와 자치단체는 예산 등을 이유로 여전히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는 현실을 개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제 우리는 생산자를 비롯하여 학부모, 교사 및 정부당국 뿐만 아니라 우리의 교육과 농촌을 걱정하는 모든 사람들과 머리를 맞대고 바람직한 학교급식법과 학교급식조례를 만들고, 보다 진일보된 운영체계를 구축함으로써 교육으로서 학교급식이 완성될 수 있도록 성실히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끝으로 사회구성원 모두가 학교급식의 개혁에 관한 당위성과 절박성을 깊이 인식하고, 공청회나 각종 토론회를 거쳐 현실적인 대안을 만들어갈 것을 기대합니다.

아이들은 우리들의 희망입니다

고 병 수

친환경우리농산물학교급식제주연대 공동대표

오늘 뜻깊은 자리에 참석하여 주신 모든 분들께 제주의 싱그러운 바닷바람을 선사합니다. 그리고 행사를 준비하느라 애쓰신 분들께도 제주 친환경급식추진 가족모두의 이름으로 감사의 말을 전하는 바입니다.

제주는 지난 1년 '아이들 우선'이라는 사회적 가치를 분명히 하여 '가장 안전한 급식, 가장 우수한 급식'인 친환경우리농산물 급식운동을 전개해왔습니다. 그리고 이 운동은 전국의 급식개선운동의 헌신적인 분들과 힘과 지혜를 모아 여러 가지 적지 않은 성과를 얻었습니다.

제주에선 '친환경급식조례'가 재의결 과정을 거치며 공포를 눈앞에 두고 있으며 전국단위의 급식개선운동은 '가장 우수한 급식'을 명확한 목표로 세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전국방방곡곡에서 들불처럼 치솟아 오른 학교급식 개선운동을 한단계 끌어올리는 새로운 급식법제정토론회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오늘 이 뜻 깊은 자리를 함께 하면서 우리들의 소망과 의지가 시들지 않은 한 우리가 염원하는 꿈의 친환경급식은 반드시 이루어 지지라 확신합니다. 그리고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고 믿습니다.]

'아이들은 우리들의 희망이기 때문입니다'

직영급식/무상급식/우리농산물사용

이 복 흙

급식운동본부 호남권역대표
사단법인 한국농업경영인전라남도연합회장

2003년 10월 20일 전라남도지사는 03년 10월14일 188회 2차 도의회 본회의에서 재의결된 '학교급식 식재료 사용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제정되었음을 공포하였다.

이로써 03년 3월7일 주민발의를 위한 청구인대표 선임을 시작하여 전남도민들과 함께 꾸준히 추진한 조례제정이 광역단위 이상 전국최초로 공포되는 성과를 7개월여 만에 얻게 되었다. 그리고 현재 전라남도내 기초단체 중 나주시, 순천시, 목포시, 함평군이 학교급식조례를 제정해 공포한 바 있다.

전국 최초로 '학교급식식재료사용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 공포한 전남은 올해 하반기 추경예산을 통해 79억5000여만원의 예산을 확보 하고 학교급식 지원 로드맵을 '친환경 농업 5개년 계획'과 연계해 "학교급식에 사용될 식재료를 친환경 농산물로 지원할 계획이다.

향후 전남운동본부는 직영/무상급식/우리농산물사용을 골자로 하는 학교급식법 개정운동에 국민운동본부와 함께 할 것입니다.

더불어 지역순환농업과의 연계 측면에서 전남지역 학교급식 발전방안을 내놓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학교급식 개선은 공교육과 우리 농업을 살리는 일입니다.

이 빈 파

학교급식법 개정과 조례제정을 위한 국민운동본부 집행위원장
학교급식전국네트워크 사무처장

들어가며- 학교급식에 대한 인식제고

학교가 무너졌다고 한다. 공교육붕괴라는 엄청난 말이 우리 모두의 오금을 조이게 한다. 과연 이 땅에 미래는 있는 것일까. 장난삼아 남을 '왕따'시키고 옆의 친구를 넘어뜨려야 자기가 우월한 세상, 경쟁에서 패배하면 쉽게 목숨을 버리고 어려움이 닥치면 헤쳐가기 보다는 피하고서 안주하는 약골들, 그래서 일상과 타협하고 오락과 한탕주의에 존재를 바쳐버리는... 예전보다 몸집이 훨씬 커진 아이들이 오히려 잘 뛰지도 못하고 체력이 둔해지고 너무 비만하거나 해괴한 아토피를 앓거나 참을성이 없고 고집이 세며 자기중심적이고 난폭한 성격의 아이들에게 대자연의 섭리와 인간 존중, 더불어 사는 사회와 환경의 중요한 기능과 역할을 무엇으로 가르칠 것이며 과연 가르침은 있는가? 부모보다 더 오랜 시간을 아이와 함께하는 교사들은 더 큰 고민을 할 것이다. 더구나 자칫 부모의 교육이 소홀하기라도 한다면...? 아이들의 성장을 함께 감당해야 하는 부모와 교사의 역할이 어느 한 쪽에, 그것도 교사에게만 집중되어가는 작금의 현실에서 우리는 무엇부터 고쳐야 할 것인가?

모름지기 교육이란 한 개인이 성장하여 인간다운 삶을 영유하기 위한 준비과정으로서 자연과 환경과 사회의 유기적인 관계를 일깨워주고 자신의 진로를 결정하도록 도와주는 일일 것이다. 그러나 모두에게 권리와 의무를 동시에 부여하고 있는 대한민국의 교육이 이미 오래 전부터 궤도를 벗어나 학력경쟁과 서열, 신자유주의에 의해 변질되었다. 그 결과 아이들은 학습기계처럼 교육의 대상일 뿐이며 교사는 평가와 성과위주의 지식전달자로, 가정은 잘 짜여진 시간표대로 아이가 학교와 학원을 잘 다닐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후원자로서의 역할밖에는 할 게 없다. 인간존중, 생명

중심의 살아있는 교육이 아이들 틈에 비집고 들어설 자리가 없다는 것이다. 원흥이 방죽의 두꺼비나 천성산 도롱뇽을 살리는 일보다 더 중요한 것은 타워팰리스 같은 고급주택과 버튼만 누르면 산소가 가득한 웰빙 공간을 만드는 일일 것이다. 권력만 있으면 돈이 생기고 돈만 있으면 세상 전부를 지배할 수 있으며 나만 잘 먹고 잘 살면 된다는 의식은 이제 문제 삼지 않는 것이 현실이다.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지금의 교육이 보다 더 인간중심으로, 지속가능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더불어 함께 사는 인간을 만들어가기 위한 내용으로 채워지도록 교육 본연의 자리로 되돌리기 위한 개혁이 필요한 것이다. 생명존중의 사회, 지속가능한 사회를 염려하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교육과제는 바로 생태교육, 생명 중심의 생태교실이 아닌가 한다. 인간과 사회, 사회와 환경, 생산과 음식, 음식과 건강. 사람과 사람 속에서 사람다움을 배워가는 일을 가장 쉽게 접근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학교급식이다. 인간이 살아가기 위해 먹어야하는 음식을 두고, 그것을 만든 사람과 환경을 생각하며 땀과 노동과 나 이외의 다른 이들과 어울리며 생명의 고리와 순환의 가치를 이해하고 감사하고 나눌 줄 알게 하는 것이 바로 급식교육이다.

학교급식은 성장기 학생들에게 12년 동안 하루 한 끼 이상의 식사를 제공하면서 교육을 통해 바른 식생활 습관과 고유한 전통문화를 계승토록 하면서 건강한 국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보호하며 음식물과 생명과 인간과 사회 및 자연환경의 유기적 관계를 배우도록 하는 하나의 교육과정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교급식은 이미 학교현장에서 교육으로 인식 받지 못하여 저렴한 가격으로 적당히 끼니를 때우는 일로 전락하고 말았다. 특히 학교교육의 최고 책임자인 학교장을 비롯하여 정책입안자인 교육관료, 법조인, 정치가들 모두가 소위 신자유주의 자본의식에 물들어 경영과 효율성을 앞세우며 편리한 방편으로 '먹는 것을 통한 교육이어야 하는 급식'을 장사꾼에게 떠넘기기 까지 한 것이 바로 위탁급식제도이다. 자라나는 미래의 국민에게 무엇을 어떻게 먹임으로써 건강한 대한민국을 만들어갈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하기에 앞서, 업무와 행정 편의적 사고에 의해 예산마저 떠넘긴 것이 벌미가 되어 아직도 위탁급식제도를 없애지 못하고 있다. 교육을 하기 위해 조금이라도 학생 편에서 생각하며 학생중심의 교육정책을 만들었다면 도무지 있을 수 없는 일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전시적으로 학교급식을 확대 실시하려다보니 채택한 제도였다. 결국에는 해마다 수천 명의 학생들이 식중독사고를 겪으면서 기업 성장의 재물이 되어 각종 저급한 식품과 수입식품 일색의 급식을 제공받고 건강과 정서를 해침에도 업체의 로비와 급식비리의 수단이 되고 있는 실정이다. 직영급식에서도 문제는 있다. 급식을 운영하기 위한 적정인력을 두지 못하고 시설도 이미 오래전에 만들어져서 낙후된 채로 해썹(HACCP) 운영을 아무리 잘해도 식중독 위험은 남아있다. 또한 급식경비를 수익자부담으로 규정하여 학부모에게 부담시킴으로써 저가정책을 유지할 수밖에 없었고 급식의 질은 고려하지 못했던 것이다. 더구나 헌법에도 명시되어 있는 의무교육에서마저 무상급식은 기대할 수 없으며 공교육이 가지는 교육의 기회균

등 취지가 무시되고 있는 것이다.

학교급식 정책이 온전한 교육으로서 실시되지 못한 것은 현행 학교급식법이 지니는 모순과 그로 인한 관행적 제도에 의한 것이어서 이를 바로잡기 위한 국가적 책무로서 법개정과 제도개선은 필수불가결하다. 또한 학교급식은 먹을거리에 대한 교육이므로 먹는 일과 농업(食과 農)이 분리될 수 없다는 인식의 바탕 위에서 급식개선 목표 중의 하나는 학교급식이 농업발전에도 도움을 줄 수 있도록 범정부적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는 것이다. 더욱이 수입개방으로 피폐해가는 우리 농업농촌의 현실을 조금이나마 타개하기 위한 하나의 과제로서, 학교급식에 우리농산물 사용을 의무화하고 이를 위해 지원하는 것은 전국 조례제정운동과정에서 국민적인 합의를 이룬 사항이다. 향후 급변하는 국제정세 속에서 피할 수 없는 국가적 위기상황에서도 국민들의 먹을거리만이라도 보전할 수 있는 식량산업으로서의 우리 농업을 지켜내기 위한 준비가 필요하다. 여기에는 근래 들어 웰빙 식단으로서 세계적으로 각광을 받고 있는 한국 전통 식문화를 유지·계승함으로써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 올바른 식습관을 형성케 함은 물론, 우리의 고유한 풍토에서 자급 가능한 식품으로 식생활을 유지케 하여 식량산업의 기틀을 다질 수 있는 급식교육이 매우 중요하다. 그러므로 국가는 교육과, 농업, 나아가 국민건강을 위한 장기적 투자라는 개념에서 체계적으로 계획하고 지원해야 하는 것이다. 학교급식 교육은 본질적으로 먹는 것에서부터 출발하여 생명 순환의 가치를 인간과 자연의 나눔을 통해 총체적으로 배워가는 범교과적인 하나의 중요한 교육과정이다. 아이들의 건강과 생명을 지켜주는 올바른 급식교육은 우리 어른들이 해내야 할, 최소한의 책임과제인 것이다. 공교육정상화의 시작은 바로 아이들이 제대로 먹는 일인 학교급식부터 올바른 방향으로 출발해야 한다.

학교급식법 개정의 방향

■ 법개정 제안 이유

1. 본질의 회복

그동안의 학교급식법개정의 논리는 학부모의 입장에서 자녀들의 건강과 생명에 직결된 학교급식에서 질 높은 최상의 식재료를 사용하고 학교가 책임지는 교육으로서 급식을 운영하자는 국민적 합의와 요구라 하겠다. 특히 학교급식이 교육이기 때문에 우리의 이웃들과 더불어 살 수 있도록 우리 것을 먹이며 전통식문화와 식습관을 교육하고 우리 민족의 삶의 질과 정서를 결정하는 가장 기초인 먹을거리 교육을 학교에서 하자는 것에서부터 출발하였다. 국가교육이므로 가장 안전하며 우수한 우리농산물을 사용하면 아이들의 입맛과 전통식문화를 계승하게 된다는 이유에서이다. 또

한, 먹을거리 교육을 통해 식량의 생산·소비의 유기적인 관계 속에서 지역사회 공동체의 일원으로서의 사회교육은 물론이고 자연의 고마움과 환경의 중요함을 직접 체험하는 교육이 이뤄지도록 하자는데 있다. 그래서 이로부터 파생되는 식량안보와 환경보전, 지역경제순환까지 자연스럽게 교육하는 학교급식의 기본 교육이념이 필요한 것이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의무적인 공교육체제이므로 국가는 책임지는 교육을 하고 국민은 복지로서의 교육혜택을 받는 '직영과 무상급식 원칙'을 세워야한다. 직영은 말 그대로 학교가 직접운영하며 교육의 목적을 실천하기위한 구체적인 교육과정으로서 운영하는 것이다. 학교공동체에서 진행되는 다양한 교과목과 접목된 교육과 함께 급식시간에 이뤄지는 밥상머리교육을 할 수 있는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되는 일이다. 무상급식은 분명히 의무교육에서는 무상화가 실현되어 부모의 경제적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양질의 균형 잡힌 영양을 평등하게 제공 받도록 하는 교육의 공공성과 복지의 면에서 중요하다.

2. 경과

(1) 국회에서

지난 1981년 제정된 이래로 다섯 번(93,96,99,01,03년)의 부분적 개정을 거친 학교급식법은 내용상으로도 적용제도상으로도 교육의 기본목적과 이념에 어긋남은 물론이고 몇 가지 문제조항 때문에 학교행정상 위법을 저지를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었다. 그래서 지난 16대국회에서는 비록 동상이몽 일지언정, 국민본부의 전신인 학교급식법개정과 조례제정을 위한 시민사회단체의 안을 그대로 수용한 이미경의원의 안을 포함하여 무려 10개나 되는 법률개정안이 제출되었으나 민생과 동떨어진 국회가 정쟁을 일삼느라 국민의 여론을 수렴하는 제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고 회기를 넘기고 말았다. 16대 국회에서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학교급식법개정움직임이 있었지만 2003년 6월 30일, 황우여의원이 발의한 급식법 개정안만이 본회의를 통과하고 일부는 폐기, 일부는 토의도 되지 않고 계류된 채로 어지러운 16대 국회가 회기를 마친 것이다. 결과적으로 급식의 질 개선과 함께 우리농산물 사용을 명시하여 급식의 교육적 가치를 전환하고 직영을 원칙으로 교육본질을 회복하려 했던 일들이 결국엔 영양사를 교사로 승급시켜 급식의 질 개선과 관리권한을 확대하는 정도에 그치고 말았다. 그리하여 2006년 3월부터 급식전담직원의 영양교사 제도가 시행 예정에 있다.

2001년 6월부터 2003년 말 까지 국회의 동향¹⁾

- 2001년 6월22일, 권오을의원 대표로 37명의 국회의원이 발의
 - 학교급식재료의 국내산 사용 원칙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일부개정안

1) < 16대 국회의 학교급식법 개정(안)의 주요내용과 처리결과 >

- 2001년 12월5일, 이규택의원을 대표로 36명의 국회의원이 농단협·한농연이 청원한 전면개정안을 소개
- 2002년 10월11일, 권오을의원이 농단협·한농연의 입법청원안을 재발의 재료의 계약생산·공급, 학교급식지원센터 설치
- 2003년 6월12일, 이미경의원이 시민연대 안을 수용하여 전면개정안 발의
 - 우리농산물 사용, 직영급식, 국가·지자체의 역할과 임무 강화, 점진적인 무상

발의 대표	제출일	서명 인원	주요 내용	처리결과
① 권오을	'01.6.22	37	○ 급식재료는 국내에서 생산된 농수축산물 및 이를 원료로 한 가공식품 사용 원칙	'02.7.25. 폐기
② 이규택	'01.12.5	36	○ 학교급식 목표 명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식사에 대한 이해와 바람직한 식습관 함양 • 인간관계 형성 및 협동정신 함양 • 식생활의 합리화, 영양개선, 건강증진 • 식량의 생산·배분·소비 및 전통식 문화 이해 증진 ○ 학교설치자의 임무 신설 ○ 학교급식후원회 삭제 ○ 학교급식 운영원칙 및 관리기준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내산 우수 농수축산물 최대 사용 ○ 경비부담주체 변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설설비비:설립자·후원회·학부모 ⇒설립자부담, 국가·지자체 지원 • 기타경비: 학부모 부담, 국가·지자체 지원 ○ 학교급식 목표에 부합하고 국내산 식재료 사용하는 학교에 급식비 지원 ○ 위탁급식 전환시 학부모 의견청취 명시 ○ 학교급식비 지원자에 대한 기준 명시	② '02.9.11. 폐기
③ 권오을 (②안과 동일)	'02.10.11	28	○ 학교급식 목표에 부합하고 국내산 식재료 사용하는 학교에 급식비 지원 ○ 위탁급식 전환시 학부모 의견청취 명시 ○ 학교급식비 지원자에 대한 기준 명시	③ '03.4.18. 법안심사소위에 상정, 계류
④ 정장선	'02.10.11	22	○ 학교급식 목표 추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저소득층 학생에 대한 배려 등 균등한 교육기회 제공 ○ 학교급식 대상에 유치원 추가 ○ 학교급식 운영원칙 일부 변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내 농업자원 최대 활용(용어순화) • 식재료의 품질기준 등 관계부처와 협의 ○ 급식 전담직원에 대한 교육의무 명시 ○ 식품비 지원방법 명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식재료 직접공급 또는 구매시 보조 ○ 식품비 지원받는 학교에 대한 농산물품질관리원의 식재료 품질검사 명시	○ 검토없이 회기 경과
⑤ 황우여	'02.10.19	41	○ 학교급식전담직원 대신 영양교사 배치 ○ 영양교사 업무 규정, 영양 및 식생활 개선에 관한 교육내용 부령으로 규정	○ '03.6.30.통과 ('06.3.1.시행)

(※참고) 시민연대안은 ②안을 토대로 시민운동 초창기 ④안으로 발전했다가, 시민연대 구성 후 ⑨안으로 발전

(자료정리: 농협조사연구소 선임조사역 김홍배)

급식, 학부모 참여와 학교자치 강화

- 같은 날, 정장선의원이 전면개정안 발의
 - 농단협·한농연의 입법청원안을 토대로 시민단체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만든 수정안
- 2002년 10월19일, 황우여의원이 일부개정안 발의
 - 학교급식전담직원을 영양교사로 변경하고 영양교사의 업무를 규정
- 2003년 4월24일, 현승일의원이 전면개정안 발의
 - 국산 농수축산물을 국가·지자체가 조달하여 무상 또는 저가 공급
- 2003년 5월27일, 최영희의원이 전면개정안 발의
 - 위탁급식의 단계적 직영화, 급식전담직원의 영양교사로의 전환
- 2003년 6월4일, 최재승의원이 전면개정안 발의
 - 식품위생 강화, 식재료의 계약생산·공급, 학교급식지원센터 설치

발의 대표	제출일	서명 인원	주요 내용	처리결과
⑥ 현승일	'03.4.24	28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교장 책임 강화 ○ 학생 체질 고려한 급식식품기준 설정 ○ 잉여농수축산물을 국가·지자체가 구매하여 무상 또는 감액 공급 	○ '03.12.8. 교육위에 상정, 계류
⑦ 최영희	'03.5.27	1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직영급식 의무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계약기간 만료시 직영급식 전환 ○ 영양교사 배치 의무화 	○ '03.12.8. 교육위에 상정, 계류
⑧ 최재승	'03.6.4	37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교급식의 목표 보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영양교육을 통한 식생활의 합리화 ○ 학교급식 비영리원칙 명시, 의무교육기관 직영급식, 위탁전환시 교육감(장) 승인 ○ 학교급식 운영원칙 및 관리기준 추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HACCP) 도입 • 급식재료 계약생산 통해 조달 ○ 학교급식지원센터 운영 등 추가 	○ 검토없이 회기 경과
⑨ 이미경	'03.6.12	3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교급식법의 목적 추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산농산물의 소비촉진과 안정된 수급 ○ 학교설치자 임무 더욱 강화 ○ 학교급식 운영원칙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내산 농수축산물 최대 활용 • 운영내용 공개 및 학운위 심의 필수 ○ 국가·지자체의 경비부담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설·설비 설치유지비 : 설치자부담, 국가·지자체 지원 • 식품비 : 국가부담, 추가경비 학부모 • 기타경비 : 학교설치자 부담 ○ 위탁급식 실시요건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생·학부모 의견 수렴, 학운위 심의 필수 • 의무교육 실시학교 직영 원칙 ○ 학교급식비 지원대상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차상위계층, 모자복지법 보호대상자 ○ 위탁급식 계약만료시 직영전환 	○ 검토없이 회기 경과
⑩ 이주영	'03.11.3	16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자체가 학교급식에 필요한 재료비 등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 	○ '03.12.8 교육위상정 시행령 개정

- 2003년 6월12일, 이미경의원이 시민연대 안을 수용하여 전면개정안 발의
 - 우리농산물 사용, 직영급식, 국가·지자체의 역할과 임무 강화, 점진적인 무상급식, 학부모 참여와 학교자치 강화
- 2003년 11월3일, 이주영의원이 일부개정안 발의
 - 지자체가 학교급식 재료비 등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 마련

그리고 지난 대선2)과 총선에서는 각 정당마다 급식법개정관련 내용을 공약으로 채택하고 후보자들은 경쟁적으로 공약이행 약속과 개원즉시 민생관련 입법 활동부터 추진할 것이라 했다.

	열린우리당	한나라당	민주노동당
17대 총선 공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교급식법 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친환경적 우리농산물 사용 확대 - 무상급식 확대 ○ 매년 500억원 투입, 우리농산물 식자재 구입 지원 ○ 학교 급식체계의 개선, 영양교사의 배치, 급식관리체계의 도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교급식대책위원회 내실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교급식업무에 식약청의 제도적 참여방안 모색 - 위탁업체의 비용부담을 지양 시설지원 확대 통해 직영 급식으로 전환 - 업체선정의 공정성·투명성 확보, 학교급식 영업허가제로 전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교급식법 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탁급식 폐지 직영전환 - 단계적 무상급식 - 안전한 국산농산물 사용 - 학교급식운영공개 학부모 참여보장 - 학교급식전담기구신설 - 유치원·보육원까지 급식 대상 확대

2) <노무현 대통령의 공약 사항>

■ 학교급식 관련 전반 내용

△학교급식을 지속적 확대

△급식체계개선, 급식·영양교육의 강화, 영양교사의 배치, 급식관리기구의 설치 등을 통해 학교급식의 내실화도모

△학교급식법개정을 통하여 친환경적 우리농산물의 일정비율 이상의 의무사용을 법제화

△무상급식의 확대와 초등학교무상급식실시

△급식제공방식의 실효성확대와 위해 요소 중점 관리(HACCP)제 도입

■ 학교자치관련

△분권화와 민주화 및 학교자치를 대폭 확대하여 단위학교의 자율운영체제를 확립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을 정비하여 교육주체의참여,학교자치의민주화,자율운영체제확립

△학교운영위원회기능을 지역과 학교실정에 따라 자문, 심의 또는 의결기구로 교육주체가 선택적으로 확대·강화 할 수 있도록 제도화

△교사회, 학생회, 학부모회 법제화와 그 대표들이 학교운영위원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함

■ 복지 및 기타

△정책의 일관성 유지 위해 장관의 재임기간을 대통령과 함께한다.

△실질적인 완전무상의무교육실현

△유아교육법제정 공교육화, 만5세 무상교육

△농어촌과 사회취약계층의 교육격차감소

(교육투자우선지역설정우선투자 법제화/농어촌교육진흥특별법제정)

국민본부소속 각 지역연대는 지난 17대 총선에서 각 당 후보들에게서 '우리농산물 사용, 직영, 무상급식'의 원칙으로 학교급식법 개정에 힘을 쓰겠다는 동의각서와 당선이후 공약이행에 대한 서약서를 받은 바 있다.

(2) 지역 및 전국에서

한편으로 전국의 광역 및 기초 지자체단위에서 시민단체들은 법개정의 힘을 모아내기 위해 주민발의 청구 또는 청원을 통해 '학교급식지원조례' 또는 '학교급식식재료사용지원조례'를 발의, 제정³⁾하였다. 특히 지역의 조례에서는 지역산 농산물사용을 원칙으로 직영, 무상급식의 개념을 분명히 두고 있다. 지역농산물사용의 의미는 급식

3) 2004년 7월 10일 현재 전국 조례제정현황 비교

발의 주체	지역	현황	비고
주민발의 청구	전남	제정공포 2003.9.5	실무협의중. 124억지원, 도 30 : 기초 70 비율로 지원, 2007년까지 친환경농산물사용 500억지원계획발표. 순천,목포,함양, 별도조례 제정/ 광양청구-무산됨/ 해남준비 중
	울산	시, 기초2구 제정	실무진행안함
	인천	2004년 4월23일 통과	10개학교 9개품목친환경급식 시범협의(3억5천만원지원). 시가 제출한수정안과 협의-전남조례를 기준으로제정/ 실무규칙협의중
	제주	친환경급식, 급식지원사업단협의,	우리농산물과 국내산명기 WTO위배, 급식사업단삭제등 부정적 의견서 제출(도조례규칙심의회), 별도수정조례안제출(경실련등)-도의회 심의보류-5.25일 제정
	서울	서명보정중	3월30일 청구
	경기	실무협의중/ 도와 교육위조례분리청구	구로,금천,노원,용산 별도청구 안양,의정부,남양주,구리,여주,성남,안성,이천,의왕,군포,광명,김포,평택,광주,수원 용인, 안산청구
	충북	서명진행중	주민청원-교육위발의 -주민청구서명중 *기초단위주민발의청구:충주-의회심의보류
	충남		천안,청양청구, 논산 홍성 아산 준비중, 계룡시제정
	부산	서명시작	
		기타지역-광역:대구, 기초:경북,경남	기초단위 구미,상주,김해,마산,창원준비
주민발의 청원	광주	교육위발의	의회만장일치통과후 재의 요청-교육위수정-국내친환경농산물사용-재의요청-재통과-이후?
	전북	교육위, 의원발의	도내생산친환경농산물, 급식공급업자문제 대법원제소됨
	경남	교육위발의	의회본회의 심의안보류-5월25일 재가결됨. 6월12일 교육감이 제소함
	충북	교육위청원-무산-교육위별도진행	교육위제정-주민청구준비요청으로 의회심의보류중/ 주민발의 청구함
의원발의	경북		초기 주민발의-의원이면저발의-제정 통과-공포안함
	강원	의원발의	춘천, 속초청구, 원주 ,양양고성 청구준비, 강릉 청구운동 시작, 도조례안 개정운동함께 함
시장발의	나주	초기발의 수정	전남협의 내용에 준하여 실무진행 중
	대전	3월12일공포	주민청원-의원발의-제정시 시장발의 / 실무규칙제정
교육위원회발의	경기	도 조례와 별도진행중	급식지원 및 관리조례로 조율됨
기타	울진	(군수발의 입법예고후 의회제출	3.17예고/4.6까지 의견수렴. 울진새송이 정부미3배-05년울진새끼친환경농업엑스포겨냥, 새송이 2000톤방출, 2억3천만원예산, 관내30여개학교에 지원
	충남		도단위청구운동시작당시 의원발의시도 - 보류하기로 결정

◎ 주민발의 조례제정 운동 현황

재료의 안전성을 확보하자는 취지에서 안전한 생산과 공급의 관리까지 포괄하는 내용이다. 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법에 명시된 바와 같이 자치단체장의 임무로써 지역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일과 주민의 복지, 청소년의 건강, 지역 환경 개선을 위한 자치단체사무를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하게 한 것이다. 조례제정 운동으로 우리는 정부로부터 학교급식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식품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중요하다.

전국은 국민운동본부 결성이래로 학교급식 개선운동을 교육의 질적 향상에서부터 자연스럽게 농업과 환경과 민생 등의 제도개선운동까지 연계된 다양한 의의를 갖는 종합적인 풀뿌리민주주의 사회운동의 면모를 보여주면서 지속적인 관심과 연대활동을 전개하였다. 학교급식에 우리농산물사용을 원칙으로 가장 안전한 식품을 요구하기에, 궁극적으로 제주에서처럼 친환경우리농산물사용을 조례에 담고자 하며 생산과 공급과 위생 및 안전관리를 체계화하면서 지역순환농업을 함께 고민하고 있다. 이는 곧 지역중심의 안전한 우리농산물사용 학교급식의 질 관리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다. 그 결과 지역에서는 친환경 농업과 식품생산의 순환적 체계를 정비하면서 국가 기반산업인 농업발전을 위한 불씨를 당기게 된 것이다. 곧 지역중심의 안전한 우리농산물사용 학교급식의 질 관리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다. 앞으로의 과제는 구체적으로 현행 학교급식용식재료 유통 및 공급체계의 현황 등을 분석하고 학교급식에 안전한 국내농산물의 이용을 촉진하기 위한 효과적인 접근방식을 제시하며 외국의 사례처럼⁴⁾ 학교급식에 지역산 농산물을 이용하기 쉬운 공급체계의 구축방안으로 제시되는 법을 만들어야 한다.

(3) 정부 부처의 조치들

끊임없는 식중독 사고와 식품사고, 위탁급식업체와 교장간의 급식비리행위를 비롯한 각종의 교육문제들이 드러나는 가운데 청와대를 비롯한 정부부처의 노력을 주지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3월 광우병 파동이후 6월의 쓰레기 만두사건에 이르기까지 전국의 식품사고는 끊이지 않고 있다. 게다가 올 들어 더욱 기승을 부리는

구 분	청구서명진행	주민 청구 조례 발의	주민발의 조례제정
광역 지자체	대구, 충남, 부산, 강원	서울, 경기, 강원, 울산	전남, 인천, 대전, 전북, 경북, 경남, 제주
기초 지자체	경기수원, 고양, 파주, 여주, 김포, 과천/경북상주, 영덕, 포항/경남거제, 마산/충남서산, 아산, 공주, 예산/충북청주, 영동	서울용산, 금천, 구로, 노원/울산동구, 북구/경기안산, 남양주, 안양, 안성, 의정부, 의왕, 평택, 군포/강원춘천/충북충주, 옥천/충남천안, 청양/경북구미/경남진주, 창원, 밀양/전남광양	전남나주·목포·순천·함평/제주시/경북안동시/경기구리

4) WTO에서 자국산 농산물 사용내용을 예외적으로 실시하는 국가들

<참고> 정부조달협정 부속서 중 학교급식관련 예외 내용

< 예외 유형별 내용과 해당 국가 >

구분	예외 범위	국 가
I	포괄적 예외	미국 (1)
II	농업·급식지원 프로그램 장려 위한 농산물 예외	유럽공동체(오스트리아, 벨기에, 덴마크, 독일, 스페인, 핀란드, 프랑스, 그리스, 아일랜드, 이태리, 룩셈부르크, 네덜란드, 포르투갈, 스웨덴, 영국) 및 캐나다, 노르웨이, 스위스, 리히텐슈타인 (19)
III	협동조합을 통한 조달 예외	일본 (1)
IV	특정 법률에 의한 조달 예외	한국 (1)
V	-	싱가폴, 홍콩, 이스라엘 (3)

< 유형별 정부조달협정 부속서 원문 >

□ I 유형(미국)

- 농무부에서 수행하는 농업지원프로그램이나 또는 급식프로그램을 장려하기 위한 농산물 조달은 적용되지 않음.

Department of Agriculture (not including procurement of agricultural products made in furtherance of agricultural support programmes or human feeding programmes)

- 미국 양허범위는 비계약적 합의나 어떠한 형태의 정부보조, 그리고 정부가 이 협정의 양허표에 의하여 명시적으로 적용받지 않는 사람이나 정부기관에 공급하는 물자나 서비스가 포함되지 않음. 비계약적 합의나 정부보조에는 업무협조협정, 보조금, 대부, 정부출자, 정부보증, 재정적 우대조치가 포함됨.

Except as specified otherwise in this Appendix, procurement in terms of U.S. coverage does not include non-contractual agreements or any form of government assistance, including cooperative agreements, grants, loans, equity infusions, guarantees, fiscal incentives, and governmental provision of goods and services to persons or governmental authorities not specifically covered under U.S. annexes to this agreement.

□ II 유형(유럽공동체 등)

- 이 협정은 농업지원프로그램과 급식지원프로그램을 장려하기 위한 농산물 조달은 적용되지 않음.

The Agreement shall not apply to procurement of agricultural products made in furtherance of agricultural support programmes and human feeding programmes.

□ III 유형(일본)

- 이 협정은 협정가입 당시 현존하는 법과 규정에 따라 협동조합 또는 동 연합회와의 계약에 의해 조달하는 경우는 적용되지 않음.

This Agreement shall not apply to contracts to be awarded to co-operatives or associations in accordance with laws and regulations existing at the time of the entry into force of this Agreement for Japan.

□ IV 유형(한국)

- 이 협정은 예산회계법 및 동 시행령에 따른 중소기업 할당분을 포함하는 수의계약 조달과 양곡관리법,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축산법에 따른 농·수·축산물 조달에는 적용되지 않음.

This Agreement does not apply to the single tendering procurement including set-asides for

식중독사고는 심각한 사회불안 요소까지 되고 있는 실정이다. 다양한 사안에 대해서 적절한 정부대응이 필요하지만 대체로 사후약방문격이다. 특히 우리농산물사용과 직영의 원칙은 합의의 사안이 아닌 정책적 판단과 결의'로써 적극적인 계획과 예산이 수립되어야하지만 정부방침은 국민보다 앞서서 WTO의 입장에서 그에 맞는 정책을 펴고 있다.

가. 청와대

□ 대통령선거에서 공약으로 제시한 학교급식 개선을 위해 지속적인 관심과 대책 마련 의지 표명

○ 청와대홈페이지 열린마당에 토론방을 개설하여 학교급식 개선을 위한 의견 수렴 실시

- 2003년 4월16일, 토론방 개설과 함께 첫 번째 주제로 선정

○ 학부모·시민단체 대표 등 150명을 초청하여 '학교급식 개선대책 학부모 간담회' 개최('03.12.16)

○ 참여혁신수석실 등에서 시민단체, 전문가를 초청하여 학교급식 개선 대책 논의

☞ 현실적인 정책과 연결하지 못함

나. 농어업·농어촌특별대책위원회

□ 우리농산물 소비촉진의 일환으로 '학교급식제도 개선'을 주제로 선정, 방안 토의('02.6.21)

□ 학교급식 관련 부처간 협의를 통해 대책 모색

○ 학교급식 개선운동이 전국적으로 전개되고, 조례제정에 대하여 정부부처간,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 갈등이 표면화됨에 따라 관련부처 실무자와 시민단체 인사를 초청하여 의견 조정

- 교육인적자원부, 농림부, 해양수산부, 행정자치부, 외교통상부, 국무조정실 등 행정부와 시민단체, 농민단체 및 전문가 협의회 개최 ('03.9.2, 9.30)

☞ 학교급식법시행령 개정을 통해 지방자치단체가 교육자치단체에 식품비를 지원할 수 있는 계기 마련

☞ 보다 적극적인 WTO 관련 검토 정부의견을 내놓아야 함

small- and medium-sized businesses according to the Act Relating to Contracts to which the State is a Party and its Presidential Decree, and the procurement of agricultural, fishery and livestock products according to the Foodgrain Management Law, the Law Concerning Marketing and Price Stabilization of Agricultural and Fishery Products, and the Livestock Law.

자료제공: 김홍배 (농협조사연구소)

다. 국무조정실

□ 관련 부처간 업무조정을 위해 학교급식대책을 국무조정실에서 총괄

- 학교급식 관계부처 담당국장 회의('03.9.3, 9.18)
- 급식관련 조례의 법적근거 마련 위한 관계부처 협의('03.9.5)
- 국무총리 학교현장 방문 및 관계자 면담('03.9.5)
- 급식관계 전문가 및 시민단체 간담회('03.9.8)
- 국무조정실 대책회의에서 자치단체의 식품비지원 근거마련 합의('03.11.5)
 - 학교급식법시행령 개정·공포('03.12.30 : 대통령령 제18188호)
- 학교급식개선 종합대책 발표('04.1.3)

□ 총리실에 '학교급식개선대책위원회'를 설치하여 학교급식 실태 점검, 평가, 개선 방안 마련·추진 및 관련기관 업무 협의·조정 운영

- 2004년 상반기 중 T/F팀 운영, 하반기부터 위원회 설치

☞ 직영원칙에 있어서는 미온한 태도는 수정되어야하며 WTO관련 부처간 협의 조정이 시급

라. 교육인적자원부

□ 학교급식에서의 식중독의 빈발과 급식개선을 요구하는 시민운동을 계기로 양 위주의 급식확대정책에서 질 개선을 위한 정책으로 전환

○ 학교급식 개선대책 시안을 마련하고 국민공청회를 거쳐 종합대책을 마련하던 중 국무조정실로 총괄업무 이관

- 국무조정실의 '학교급식 개선과제'를 바탕으로 종합대책 발표('04.1.30)

□ 「학교급식개선 종합대책('03~'07)」은 학교급식 개선방향을 설정하고, 30개 세부과제로 구분하여 시행방안, 추진일정, 소요예산 등 구체적인 대책을 포괄 (부록 참조)

○ 추진전략으로 급식운영의 내실화·안전성 확보, 우수농산물 사용 확대, 영양관리·식생활지도 강화, 정부지원 확대, 지도·감독 시스템 개선 등을 설정

○ 위생관리 강화, 급식관련 비리근절, 학부모·시민단체의 역할 확대, 급식업체 관리 강화, 우수식자재 사용 확대, 정부 지원 확대, 학교급식 추진체계 보장, 급식방식에 대한 선택권 보장 등 8대 과제 선정

□ 동 대책은 급식운영 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을 예방할 수 있도록 학교급식법 전면개정을 전제로 한 것으로, 개정법률안의 골자를 제시

○ 정부지원 확대, 위생관련 규정 신설, 구매계약관련 조항 신설, 학교·위탁급식업체·식재료공급업체의 준수사항 규정, 학부모 참여관련 규정 신설, 준수사항 미이행 또는 식중독 발생시 벌칙조항 신설, 학교급식 지원센터 설립·운영근거 마련 등

☞ 직영원칙, 우리농산물사용의 원칙에 있어서 교육의 기본을 배제하고 있음

마. 농림부

□ 학교급식 주관부서가 아니어서 주도적인 역할 수행에는 한계가 있으나, 2002년부터 적극적으로 대응

○ 국회 전문위원을 대상으로 학교급식의 중요성 및 법개정의 당위성 설명

○ 교육인적자원부에 농협의 학교급식법 개정건의가 타당하다는 의견을 개진하고 협조해 주도록 요청

□ 학교급식 시범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2003년부터 2년에 걸쳐 예산반영을 시도하였으나, 업무소관 문제로 기획예산처에서 전액 삭감

○ 2002년 4월, 233개 시·군·구 당 1개 학교를 선정하여 생산자단체와 급식재료 공급계약을 체결토록 하는 내용의 '우수국산농산물 학교급식 지원사업' 계획을 수립하여 77억원을 신청하였으나 반영되지 못함

○ 2003년 4월, 500개 학교를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118억 원을 신청하였으나 전액 삭감

- 9월30일, 농특위에서 부처간 합의로 농협이 시범사업을 수행하도록 당정협의를 통해 60억원의 예산을 요청하였으나 재차 무산

☞ 농업발전을 위한 투융자 기금 119조원발표이후 학교급식지원 세부계획안 등의 마련이 필요함.

이제는 정부와 국민모두가 힘을 모아 원칙과 상식이 통하는 바람직한 사회를 만들어 가야한다. 그러기에 충분한 제도적인 장치가 필요한 시점에 와있다. 그런데 그동안 정부의 각 부처간 협의 사항들을 보면 특히 우리농산물사용관련 원칙에 대한 합의도출과정에서 "우수농산물"로 귀결된 것은 여지없이 실망을 안겨주었다. 국민과 교육과 실질적인 국익을 생각하기 보다는 WTO의 입장에서 판단하고 해석하며 시각이 고착되었다. 특히 합의가 필요한 사항에서 책임문제는 서로 눈치 보기와 핑퐁식 떠넘기기로 전가하고 공적은 찾겠다는 부처이기주의를 보였다. 지역의 조례제정과정에서 교육부는 그동안 외통부의 WTO법적해석만을 가지고 "우리농산물사용은 안 된다"로 일관하고, 행자부는 '지방자치의 일반자치와 교육자치분리의 내용'만을 지적하며, 외통부는 심도 있게 검토도 하지 않고 무조건 '협정위배'라는 결론뿐이었고, 농림부는 교육부소관문제로 모르쇠다. 이 같은 정부의 방침은 결국 광역자치단체의 경우 교육부가 직접 나서서 지역의 조례를 대법원에 제소하고 기초단위의 자치단체는 광역단위에서 조례가 제정될 때까지 만들지 못하도록 암묵적 합의를 했다. 그러면서 교육부는 실질적인 국익을 생각해야한다고 한다. 결국 국민건강과 국가의 미래에 대한 장기적인 안목보다는 WTO의 입장에서 판단하고 해석하여 마치 경주마 눈가리개를 한 것처럼 전후좌우를 살피지 못한 결론이다. 이는 결정적으로 교육과 아울러 국가의 생명산업인 농업에 대한 포기선언이다.

3. 교육부 발의 안에 대한 문제의식

학교급식개선 종합대책이 발표에 이어 학교급식법개정법률안이 만들어졌다. 어떤 의

미에서는 이 또한 하나의 개혁이다. 그러나 법개정 일련의 과정 속에서 교육부는 국민운동본부를 비롯한 다수의 국민에게 실망을 주었다. 그리고 그동안 전국적으로 진행되어 온 급식개선의 의식과 크게 다른 몇 가지로 이견이 있으므로 그에 따른 문제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교육부발의 안은 이미 목적부터 크게 차이가 난다. 급식법 개정의 당위성과 원칙이 배제된 상태에서 학교급식에 대한 관리감독과 처벌규정 등을 명시한다고 달라질 것은 없다. 특히 학교급식의 본질적인 교육원칙을 학교직영에 두지 않고 학교장 책임 하에 위탁급식을 세분화하여 업무효율성과 관리감독을 강조한 업무위탁으로 명분을 세우고 있다. 이것이 그동안 교육부가 발표해 온 내용처럼 위탁급식학교의 직영전환을 유도하여 직영률을 높이려는 취지인가 반문하지 않을 수 없다. 징계와 처벌이 강화되어 언뜻 보면 개혁인 듯 보기 좋게 포장된 교육부의 법안은 마치 두꺼운 거즈로 상처를 감추어 오히려 속으로 깊이 깊어 뼈마저 상하도록 방치하는 것과 다름없다. 교육부가 제시한 법안대로 법개정이 추진된다면 이미 직영운영 되고 있는 학교조차 법문화된 규정을 빌미로 위탁급식학교로 전환할 여지를 주는 것이다. 현재 학교의 현실은 지난해 직영전환을 신청했음에도 막상 직영전환을 추진하는 시점에서 학교장이 도발적으로 태도를 바꾸어 학내분규까지 불사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이러한 현실에서 교육부 발의안은 학교장 전횡의 빌미를 제공하는 아주 좋은 근거가 될 수 있다. 또한 급식재료로서 “양질의 우리농산물” 이여야 하는 당위성은 더 이상 부연할 필요가 없음에도 여러 가지 이유를 대면서 ‘품질이 우수하고 안전한’이라는 국적도 개념도 명확하지 않은 식재료를 규정하고 있다. 식품비를 포함하여 시설설비비와 운영비등 급식경비도 여전히 학부모부담으로 남겨두었다. 이는 업무위탁을 염두에 두고 예산에 관련한 모든 국가적 책임을 일체 전가하는 것과 같다. 뿐만 아니라 먹는 교육은 가장 어린 시절부터 올바르게 체계적으로 학습되어야 할 중요한 습관의 교육임에도 급식대상에서 영 유아 교육부문을 제외하고 있다.

■ 법개정의 방향

1. 학교직영원칙의 학교급식

학교급식은 공교육이라는 본래목적과 취지를 충실히 이행할 수 있음은 말할 나위없다. 교육에 대한 목적과 목표를 분명히 세우고 국가가 관리하며 책임 있는 운영을 하면서 교육의 공적기능인 복지와 평등개념을 확보하는 것이다. 그 결과 본래의 학교급식에 대한 교육목적과 취지를 충실히 이행할 수 있다. 그동안 다양한 학교 사례와 연구발표들을 보면 학교급식을 하나의 교육과정에서 통합 교육으로 진행하면서 인성교육, 환경교육, 건강과 영양교육, 지역 공동체, 농업의 중요성 등의 밥상머리 교육이 이루어져 왔다. 이 같은 내용의 교육이 범교과적으로 진행될 수 있었던 것은 학교직영체제에서 학교주체들 간의 협력과 협의를 통해 가능했다.

위탁급식에서 그동안 밝혀진 문제들을 살펴보면, 높은 급식비를 부담함에도 이윤을 우선

하고 시설비와 인건비, 운영비를 제한 부분에서 식품비를 정함으로 현실적으로 저급한 식재료를 사용한다는 것이다. 직영을 하게 되면 우선 시설비와 운영비, 인건비를 국가가 지원하게 되므로 급식비에 대한 학부모부담이 경감되며 식재료비 적정사용비율 확보가 가능함으로써 양질의 급식을 제공하고 학생의 기본 권리회복을 기대할 수 있다. 그리고 설령 급식비를 내지 못한 경우라 하더라도 직영급식에서는 가정까지 찾아가 급식비 납부를 요구하지는 않는다.

<표1. 직영-위탁학교의 급식경비내역 비교>

구분	직영급식	위탁급식
시설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부담	업체 부담 - 학부모가 급식비로 계약기간 동안 감가상각 지불 (업체별 차이 있으나 월평균 9%지불)
인건비	국고부담 영양사 1인 종사원 - 학생수 300명당 1인 (학부모보조부담은 학생 200명당 1인)	업체 부담 - 학부모가 급식비로 지불 인건비 25% 이상 지불
식품비	급식비 70% 이상 확보	적정 사용률은 65% 이상 실제 급식비 45-55% 사용
기타 운영 관리비	학교 예산으로 사용 일부 학부모가 보조로 부담 (1%)	학부모가 일체 부담 대기업의 경우 '영업 외 비' 명목 6% 무조건 지불
급식비	평균 1700원 수준 (우유값 235원 포함)	서울의 중고등학교 평균 2500원 수준

또한 위탁급식의 병폐로 기록되는 것은 도미노성 식중독 사고발생이다. 이는 위탁급식업체가 여럿 학교와 계약하여 동일한 식단을 사용하거나 동일한 식재료를 사용하기 때문에 사건의 발생은 가히 폭발적으로 대형화 되는 것이다. 기업이 교육을 목표로 식재료를 사용하지 못함은 당연하며 실제 식중독 사고발생률도 직영대비 14배임이 드러났다. (2003년 12월 교육부) 위탁급식업체는 또, 학교와 계약을 함에 있어 한 학교만을 위탁운영해서는 손익분기가 맞지 않는 연유로 여럿 학교와 무리하게 계약을 유지하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로비사건 등이 발생하며 교육부패의 원인을 제공하고 있다.

학교가 위탁급식을 하려는 것은 공교육을 위한 국가교육 철학이 부재한 시각적 접근에 의해 교육을 경영과 경제의 논리로 해석하는 것이 가장 큰 이유로 평가된다. 교육의 본질을 배제 하고, "한 끼 먹는 일"로 급식을 규정하면서 기업의 본질은 이윤추구임을 지극히 외면하며 교육현장에 끌어들이는 것이다. 더욱이 직영전환을 거부하는 학교의 경우 대부분의 교장은 책임문제를 운운하며 교사의 교육자적 소명의식을 무시하고 업무부담을 강조한다. 이는 모든 교사에게 "학교는 직장, 교육은 업무"로 인식하라는 것과 같으며 급식의 운영전반에 대한 인식부족과 직영급식학교의 운영현황분석을 제대로 하지 못한 결과

이다. 특히 학생중심의 교육과정운영의 기본을 망각하고 교육의 복지와 평등과 형평의 원칙이 상실된 것이다.

<표2. 직영급식과 위탁급식의 장·단점 비교>

구분	직영급식	외부위탁
제도	<p>장점 ○학교장과 학교운영위원회의 책임운영 ○다양한 교과목과 접목되는 교육을 진행할 수 있음 ○학교운영위원회, 급식소위원회, 학부모의 활동으로 관리감독수월 ○참여와 자치를 통한 학교민주화 구축의 기반이 되고 있음 ○급식 회계, 업체 선정 등에 있어 투명한 운영체제 ○영양상담, 학부모 교육 등으로 가정과 연계된 교육진행가능</p> <p>단점 ○영양사의 전문전담업무에 대한 통제 어려움</p>	<p>장점 ○학교관계자의 업무를 기업에 이관 ○안정적인 기업성장 보장</p> <p>단점 ○교육적인 급식운영 할 수 없음 ○회계 및 관리내용의 투명한 공개 안함 ○학운위를 비롯한 학교주체의 참여 또는 관리가 안 됨 ○급식비리, 로비 연류 심함 -교육부패의 원인제공 ○잦은 식중독 사고, 사고의 대형화, 동일업체 계약학교의 도미노현상</p>
재정	<p>장점 ○시설비, 인건비와 운영비일부를 교육청에서 지원하므로 학부모의 급식비 부담 경감 ○결과적으로 급식비의 식품비 사용률이 높아 양질의 급식을 제공할 수 있음 ○농업, 여성, 보건복지의 차원에서 범정부적 협의에 의한 교육재정확대지원이 가능</p> <p>단점 ○국가의 교육재정 부담</p>	<p>장점 ○교육청의 재정부담을 학부모가 대신함</p> <p>단점 ○기업의 이윤, 시설비, 인건비, 운영 및 관리비를 학부모가 급식비로 부담 ○기업 살리기를 학부모가 대신하게 됨 ○교육의 공공성과 복지기능은 전무함</p>
인력	<p>장점 ○학교 소속 직원으로 사명감, 책임감, 공공성, 교육자적 자질이 높음 ○모든 업무는 교육에 근거하여 체계적으로 진행하게 됨 ○급식전담원의 소양교육 및 자질향상을 위한 교육과 연수를 수시로 진행 ○업무의 효율적 관리와 민주적 협의에 의한 투명한 운영 ○학교구성원으로서의 자긍심</p> <p>단점 ○학교직원의 구조조정 등으로 인력관리 업무 부담 및 정규직 정원확보 안됨</p>	<p>장점 ○인력관리 업무부담은 업체에게만 있음</p> <p>단점 ○업체소속 직원으로 사명감이 낮고 잦은 이직으로 급식관리미흡 ○급식 전담원으로서의 소양교육 등 진행 안 됨 ○기업의 고용회포가 심함 ○열악한 근무조건 및 작업환경 등으로 정상업무 어려움</p>
식단 및 식재료	<p>장점 ○균형된 영양식을 체계적으로 제공가능 ○우리농산물사용 급식재료로 활용 ○급식비의 식품비 사용비율이 높아 질높은 급식제공 ○식단이나 식재료 사용근거는 교육의 목적과 목표에 기준함-농업 기반 발전에도 기여 ○전통 식단 계승 및 발전</p> <p>단점 ○유통혁신, 현물공급 체계화가 안된 현실에서는 가격이 높아짐</p>	<p>장점 ○학생 기호도에 맞춘 식단 제공 가능 ○업체와 계약한 학교는 동일 식단 사용가능- 식재료의 대량구입</p> <p>단점 ○학생 기호도에 치우친 식단제공우려(인스턴트, 냉동식품, 수입식품과다 사용우려) ○되도록 식품비사용비율을 줄일수 밖에없음(기업이윤을 목적하기때문) ○학생들의 입맛과 식습관을 잘못교육 ○편중된 식품사용-영양불균형,비만 등 청소년의 병질을 확대시킴</p>
위생 안전	<p>장점 ○문제점 발굴 및 신속한 개선조치가가능 ○학운위,급식소위,학부모의 관리감독이 용이함 ○체계적인 HACCP운영이 용이함</p> <p>단점 ○학부모,급식소위등의 전문적인 교육이 없이</p>	<p>장점 ○위생사고 발생시 계약해지 등 업체 제재조치가가능</p> <p>단점 ○이윤추구로 급식재료의 질 저하 ○그에 따른 식품사고발생 높음 ○급식환</p>

	는 관리가 어려움	경,인력에 투자안함으로 위생사고 빈발 ○ 도미노성 대형 식중독 사고 빈발 (직영급 식의 14배)
목 적 과 목 표	○학생심신의 건전한 발달과 고른 영양섭취 ○전통식문화 계승과 국민식생활개선 ○안정적 농업생산기반 확충도모로 향후 식량안보 구축 ○미래의 국민이 건강하고 부강하게 살기위한 국가 교육을 확립	○기업의 안정적 성장과 내수 확충 ○외식문화산업발전에 기여 ○교육기관의 경영효율성 보완

<표3. 직영-위탁급식 학교의 업무 비교>

구분	직영급식	위탁급식
영 양 사	식단작성,급식인력관리,작업관리,위생관리,급식사무 (시장조사 및 견적, 급식비산정, 각종보고및결재,급식 운영계획,교육계획 등)	업체소속직원의 역할, 업체이윤을 우선 고려, 교육자의역할기대 할 수 없음 전문직원으로서의 업무규정은 직영과 동일
행 정 실	회계관리,급식비 수납,및 공급자에 대한 결재업무,스 쿨뱅킹등 재무관리(지출원인행위는 영양사가 해줌), 학교회계편성(영양사가 기초자료작성),미납자파악 촉,지출증빙서에 의한 지출업무와 장부 관리 및 결산	업무내용은 직영과 동일 급식카드나 식권판매 시 담당자가 별도 필요 (업체소속)
교 사	급식지도(먹는 교육, 배식 시 질서 등) 생활지도	교사의 교육자적역할은 직영과 차이 없으나 현재는 질서지도 등 교사의 본래 역할을 위 탁업체가 전담하고있음 특별히 보건계,체육 계부장교사가 전문적 업무총괄
학 부 모	담임교사의 협조로 급식소위원회,검수, 모니터링 단 구성. 활동과 관련된 운영은 영양사와 함께함	직영과 같음
교 장	학교 총 책임자로서 총괄적 책임 영양사, 행정실의 업무를 총괄 함 실제업무의 책임담당은 영양사임.	초등-담임 중등-보건교사(위생담당),체육교사(행정,건 강관리 등),교감(학부모 및 교사,업체관리 총 괄)교장 책임업무 공동 부담

2. 우리농산물 사용을 원칙으로 하는 학교급식법 개정필요

법개정의 의미는 또, 지역에서 학교현장에서 실제 운영되는 학교급식에 관련된 제반의 실천 내용을 규범적으로 정비하는 것이다. 전국적인 현상은 먹을거리와 교육을 함께 보는 관점으로 풀뿌리 민주주의적 자치활동으로서 지역을 특화하고 삶의 질과 교육복지를 지역자치로서 해결하려는 시민의식이 팽창되었다. 안전하고 질 높은 급식을 위한 급식재료 사용 규정은 우리'농산물에서'안전한'지역산'친환경'의 개념으로 발전하였다. 그리고 생산-공급-소비의 과정에서 철학이 내재한 교육으로 도시-농촌간 유기적인 관계를 맺으면 자연스럽게 지역사회는 순환형 공동체가 될 수 있다는 판단과 함께 관리와 유통에까지 모두의 관심과 참여를 끌어내고 있다. 결과적으로 전국은 지금, 교육과 복지와 사회적 환경과 인간의 본질적 삶에 대한 패러다임이 지역공동체 의식으로 전환되면서 사회적으로 구조조정을 하고 있다. 어찌 보면 먹는

것과 건강과 교육과 농업의 공통분모를 함께 인식하여 제도와 정책을 손질해가는 ‘국가형 공동체’의 가능성도 제시하고 있는 것이다. 교육으로서의 안전한 급식을 요구하기에, 이로부터 파생되는 식량안보와 환경보전, 지역경제순환까지 자연스럽게 교육하고 학교급식의 교육이념을 정상화하여 국가와 지자체가 지역의 교육과 경제를 책임지도록 의무를 부여하는 주민권리를 표현하고 행사하고자 하는 것이다. 그래서 지금의 급식운동양태를 현대판 동학혁명으로 보는 사람도 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바로 우리자녀들의 미래다. 우리 자녀들에게 최소한 식량은 자급하는 부강한 나라를 약속하며 건강한 환경과 사회를 만들어 주고자 한다. 우리농산물 사용 학교급식의 반향은 가정과 연계되어, 교육을 통해 우리농산물 소비를 자연스럽게 연장하면서 “우리 것”을 지키는, 그 누구도 침해 할 수 없는 건강과 생명의 천부인권적 권리를 지키는 것이다.

■ 학교급식재료에 안전하고 우수한 국내산 농산물 사용에 관한 의미

- 학교급식에 우리농산물 사용하는 일은 그 어떤 의미로도 부정 할 수 없다
 - 먹는 교육은 습관의 교육이며 중요한 입맛 교육임
 - 전통의 식문화와 식생활개선의 합목적적 운영
 - 학교급식에서 자주 발생하는 식중독의 주된 원인 중의 하나가 저급·수입농산물 사용에 있음
 - 자녀들의 건강증진은 물론, 농산물 수입증가로 인한 농업위기를 극복하자는 전 국민의 ‘국가적 상생’인식 확산
 - 교육과정에서의 중요한 교육소재로서 식품과 건강, 식품의 생산과 소비, 자연과 인간, 환경과 농업, 지역과 국가, 사회 공동체의 나눔과 연음을 배우는 “교과서”로 인식되고 됨
 - 안전하고 질 높은 학교급식을 위한 관리측면에서 급식재료로서 ‘안정성 확인이 용이’ 하려면 반드시 국내산이어야 함
 - 국적과 개념이 명확하지 않은 ‘품질이 우수하고 안전한 농산물’은 우리농산물일 수 없음
- WTO등 협상의 문제로 인한 농산물 규정 명시를 “우수”로 해야 한다?
 - WTO협정에서 학교급식과 연관을 갖는 부속협정은 관세 및 무역에 관한 협정 (GATT), 농업협정, 보조금 및 상계조치 협정, 정부조달 협정 등 4개 협정내용임
 - 그러나 우리 농산물 학교 급식 예산 지원은 GATT와 정부조달협정에 의할 때 가능하며, 양곡관리법등 관련법을 보완하여 법률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 학교급식법에 우리농산물 사용을 명시해둠으로써 협정 등에 유리한 조건을 만들 필요가 있음

3. 교육복지와 평등의 공공성을 확립하는 학교급식법 개정필요

저소득층 자녀에 대한 급식비 지원은 복지국가로서의 당연한 업무이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모든 법의 준거가 되는 헌법상에도 의무교육기관에서는 무상을 원칙으로 한다는 내용이 있음에도 교육의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 학교급식비를 포함하여 의무교육기관에서 학부모가 별도로 부담해야 하는 항목의 교육비는 한 학교회계의 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중학교의 경우는 의무교육이 전면 실시되고 있음에도 여전히 학교운영 지원금을 강제 징구하고 있다. 이에 대해 정부는 교육재정의 부족만을 호소하며 근본의 문제를 조정하지 않는 것이다. 학부모들은 이러한 공교육비뿐만 아니라 엄청난 사교육비를 지불해야 하는 이중고를 겪고 있다. 이는 학벌 학력위주로 권력과 경제적 지위가 세습되는 사회전반의 구조적인 문제로부터 파생되는 악순환이다. 사회가 발전하고 협력하는 공동체적 의식을 만들어가는 것 또한 교육이다. 국가가 공교육을 살리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하기에 앞서 진정한 백년대계의 교육철학을 갖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런 의미에서 교육의 철학적 패러다임을 고쳐야 한다. 아이들이 먹는 것은 무조건 최상이어야 하며 부모의 경제적 지위와 관계 없이 평등해야 한다. 일부에서는 “부자 집 아이를 국가가 거저 먹여 키워야하느냐?”는 논리로 무상급식을 부정하면서 소위 색깔론적 시각으로 접근한다. 무상급식의 원칙은 색깔론이나 외식비 지불 같은 경제론과는 무관하다. 다만 헌법에 준한 교육기본 권리인 것이다.

나가는 말

지난 한 해를 돌아보면 촛불집회는 개혁과 진보진영의 통일된 의식이었으며 전국의 시민운동 공동화두는 ‘학교급식개선과 조례제정운동’이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특히 주민발의에 의한 학교급식지원조례제정 운동은 다양한 집단이 하나의 의식으로 또는 하나 된 모습으로 국민정서를 표출하고 나아가 풀뿌리 민주주의의 성숙된 사회구성원으로서 풍요로운 삶의 질적 변화를 정책적으로 요구한 대표적인 사례였다. 학교급식운동의 시작은 교육진영으로부터 기존의 학교급식을 규정하던 학교급식법이 “학교급식은 교육”임을 규정하면서도 교육법상은 물론 헌법에도 위배되며 단체급식을 규정하는 식품위생법에 조차도 위배되는 모순을 해소하고자 시작되었다. 그런 가운데 우리쌀 지키기 100인 100일 걷기 운동으로 나라전체가 동화할 즈음 자연스럽게 「우리 농업희생 운동」과 맞물리면서 「학교급식개선과 급식법개정운동」이 지역과 연대하여 전국에 조직적으로 확산된 것이다. 결과적으로 범국민운동이 된 급식개선의식은 식과 농을 분리할 수 없다는 것과 국가교육의 포괄적 관점에서의 교육과 농업, 사회와 환경, 인간과 자연을 함께 고려함으로써 삶의 질적 변화를 추구한다는 것을 전제로 한 참여자치민주주의 제도개선 활동이라 하겠다. 이 같은 시대적 배경과 지역의 주체적 여건 변화 등으로 이제는 거스를 수 없는 대세가 된 학교급식법 개정을 눈앞에 두고 있다. 새로 출발한 17대 국회가 가장 먼저 해결해야 할 민생입법의 내용이다.

그동안 전 국민의 염원으로 추진되어진 급식법 개정과 조례제정은 급식의 질 개선 목표를 넘어 아이들 건강 지키기와 국민권리 찾기, 풀뿌리 자치 활성화, 우리 농업 살리기, 생명존중의 의식면에서 역사적인 의의를 갖는 엄청난 운동이 되었다. 궁극적으로는 모두가 행복한 국가를 만들어 보자는 절실한 국민행동이였다. 학교와 학부모, 학교와 지역사회, 지역사회와 자치단체, 자치단체와 국가가 서로 협력하는 공동체 의식에서 “급식은 교육이어야 한다”, “공교육은 국가가 책임진다”, “적어도 의무교육은 무상교육이다”, “교육은 학교와 지역사회가 함께 한다”, “학교교육은 학교자치가 우선이며 교육주체와 지역사회의 대표로 구성된 학교운영위원회를 중심으로 운영한다”라는 대전제를 바탕으로 모두가 함께 연계하고 힘을 모아 아이들의 미래와 교육을 올바르게 지켜보자는 것이다. 아이들이 먹는 것은 무조건 최상이어야 하며 여기에 토를 달 수 없다. 아이들의 천부인권적 기본권(행복권, 건강추구권 등등)은 물론 학습권, 자치권을 충족하며 학교급식개선실현을 통해 자녀들의 인간기본교육을 학교주체와 지역사회의 주체들 모두가 주도적으로 책임지고자하는 사회적 합의를 만들고 있는 것이다. 현재 대한민국사회에 만연되어있는 경쟁적 학습중심의 학벌사회의 타파. 비민주적 학교행정과 부패척결, 세계화 일로의 경제 및 수입개방의 국가적 위기를 해소할 수 있는 가장 쉽고 바람직한 교육 참여 실천 내용으로 전개되는 “학교급식개선 국민운동과 학교급식법 개정”에 모두가 함께해야 한다. 교육은 백년대계이다. 국가는 분명하고 바른 교육철학을 가지고 자라나는 우리 아이들을 무엇으로 어떻게 교육할 것인가에 대한 책임 있는 계획을 세워야한다. “급식을 공교육으로 계획하여 상생하는 국가공동체를 만들어내는 아주 중요한 일”에 국민모두가 동참하는 의식으로 “우리농산물 사용하는 직영무상급식 실현”을 위한 올바른 방향의 학교급식법이 개정되도록 정부와 국회는 이제 발 벗고 나서야 한다. 지금 “우리 아이들에게 우리 것을 먹이고 제대로 된 교육을 하자”는데 누가 반대할 것인가!

※ 참고자료 붙임

■ 법개정 시안

주요골자

- 가. 학교급식을 통해 학생의 심신의 건전한 발달과 전통의 식생활습관 및 국민식생활개선은 물론 국내농산물 소비촉진과 안정적인 식량수급을 도모함.(안 제1조).
- 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공교육을 책임지고 양질의 학교급식이 안정적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행·재정적 지원과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고, 학교의 장은 학교급식을 교육과정으로 운영하는 등 학교급식의 효율적 운영·관리 및 개선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함.(안 제3조, 제4조).
- 다. 초·중·고등학교와 특수학교, 유치원 및 보육시설 외의 각종학교 등에 대한 급식실시 여부는 시·도교육감이 정하도록 권한을 이양함.(안 제5조).
- 라. 학교급식 시설기준을 제시하고 공동급식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며, 영양교사 외 전문 업무전담직원 등의 배치 근거를 규정함.(안 제6조, 제7조).
- 마. 학교급식 시설비는 학교설립경영자가 부담함이 원칙이나 지방자치단체도 지원할 수 있고, 식재료비는 의무교육대상학교에서는 무상이며 그 외의 경우는 학부모 부담을 원칙으로 하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할 수 있음. 기타 운영비는 학교설립경영자가 부담함을 원칙으로 경비부담 기준을 정함.(안 제8조).
- 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안전하고 우수한 식재료의 사용 등 양질의 학교급식을 제공하기 위하여 재정여건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부모가 부담할 경비를 지원하되, 국가가 50% 이상을 부담하여 현물 또는 이에 준하는 현금으로 지원하며, 순차적으로 지원을 확대할 수 있도록 함.(안 제9조).
- 사. 학교급식재료의 국내산 규격과 품질에 대한 규정을 하고 세부사항은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안 제10조).
- 아. 학교급식의 안전관리기준, 영양관리기준, 위생관리기준은 교육인적자원부령으로 정하도록 함.(안 제11조 내지 제12조).
- 자. 식재료공급업자 선정 및 계약 시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제한경쟁입찰, 수의계약 등을 할 수 있도록 하며 최저가 낙찰 등의 위해를 줄이도록 함.(안 제13조)
- 차. 학교교육과정 또는 현장연계 체험학습, 농장운영 등으로 생산된 농산물을 직접 사용케 함으로써 이상적인 학교급식의 교육목적을 실현함.(안 14조).
- 카. 교육감은 학교급식에 관한 지원계획 및 중요사항을 심의하는 기구로 학교급식 위원회를, 지방자치단체장은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는 기구로 학교급식지원심의회를, 학교장은 학교급식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

- 의결하는 기구로 학교급식소위원회를 두도록 함.(안 제18조, 제19조, 제20조).
- 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교급식에 관한 평가 및 기술지원, 식재료의 계획적인 조달과 공급 등의 업무를 전담할 '학교급식지원센터'를 각각 운영하되, 식재료 조달·공급업무의 효과적인 수행을 위해 업무의 일부를 농림부장관이나 해양수산부장관에 위임할 수 있도록 함.(안 제21조).
- 파. 교육감은 학교급식관련 지도 감독 권한을 가지며 벌칙을 가할 수 있도록 함.(안 제22조 내지 제26조).
- 하. 종전의 위탁급식에 대한 경과조치와 타 법률의 개정사항을 필요로 함.
(부칙 제2조 내지 제3조).

학교급식법개정법률안

학교급식법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학교급식법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법은 학교급식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성장기 학생의 심신의 건전한 발달을 도모하고 전통의 식습관 및 국민식생활 개선과 함께 국내생산 농산물의 소비촉진과 안정적인 식량수급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학교급식”이라 함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학교의 장 또는 특별시·광역시·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이 제5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의 학생에 대하여 실시하는 급식을 말한다.
2. “급식에 관한 경비”라 함은 학교급식을 위한 식품비, 급식운영비 및 급식시설·설비비를 말한다.
3. “식재료”라 함은 학교급식으로 제공되는 음식물의 조리·가공에 사용되는 농·수·축산물과 그 가공품을 말한다.
4. “식재료공급업자”라 함은 학교의 장과 계약에 의하거나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규정에 따라 당해 단체장이 지정하여 학교급식에 필요한 식재료를 공급하는 자를 말한다.

- 제3조(국가·지방자치단체의 임무)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교급식이 공교육의 일환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기위하여 양질의 식재료를 안전하고 안정적으로 제공하고 이에 따른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생들의 올바른 식생활 관리능력 배양과 전통 식문화의 계승·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 ③ 제 1항과 제2항에 필요한 세부계획 및 내용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4조(학교의 장의 임무) ①학교의 장은 학교급식을 교육과정의 일환으로 운영하여야 한다.
- ②학교의 장은 학교급식을 효율적이고 투명하게 운영·관리하며 개선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학교급식 대상) 학교급식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학교 또는 학급에 재학하는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 한다.
1. 초·중등교육법 제2조 제2호 내지 제5호의 1에 해당하는 학교
 2. 초·중등교육법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청소년을 위한 특별학급 및 산업체부설 중·고등학교
 3. 유아교육법 제2조 제2호에 해당하는 학교 및 영유아보육법 제6조 각호의 보육시설
 4.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교

제2장 급식시설기준 및 경비부담 등

- 제6조(급식시설·설비) ①학교급식을 실시할 학교는 학교급식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과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다만, 2이상의 학교가 인접하여 있거나 교육감이 부득이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초·중등교육법 제31조에 의한 학교운영위원회(이하 “학교운영위원회”라 한다)의 심의·의결을 거쳐 학교급식을 위한 시설을 공동으로 할 수 있다.
- ②교육감은 관할구역 안에 학교급식을 위한 공동급식시설과 설비를 설치할 수 있다.
- ③제1항과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설비의 종류와 기준 및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조(영양교사 등의 배치) ①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학교급식을 위한 시설과 설비를 갖춘 학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초·중등교육법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영양교사를 둔다.

②교육감 및 학교장은 학교급식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하여 학교급식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전문지식을 갖춘 전담직원을 둘 수 있다.

③제 2항 전문업무는 조리 및 회계, 운영관리, 위생관리 등 급식의 질과 안전을 전담할 수 있어야 한다.

④제 1항의 영양교사와 제 3항의 규정 중 조리 관련 종사원의 적정인원수와 업무규정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조(경비부담기준) ①학교급식 실시에 필요한 시설·설비에 요하는 경비는 당해 학교의 설립·경영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할 수 있다.

②학교급식 운영에 필요한 경비 중 식품비는 학부모가 부담한다. 다만, 의무교육 대상학교에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학부모가 일부를 부담할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에 규정된 경비 이외의 급식에 관한 경비는 당해 학교 설립·경영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④제 2항의 규정에 의한 경비부담 및 재원의 조달에 대한 시책 등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조(급식비 지원)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조와 제3조에 따라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안전하고 우수한 식재료의 사용 등 양질의 학교급식을 제공하기 위하여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학부모가 부담할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급식비를 지원하는 경우에 국가가 50% 이상을 부담하여야 하며, 현물 또는 이에 준하는 현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급식비를 지원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에 해당되는 자를 우선적으로 배려하되, 교육감은 다음 1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방과후와 휴일 및 방학기간 등의 급식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제5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학교 등에 재학하는 학생 또는 그 보호자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5조에 의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이거나 동법 시행령 제36조에 의한 차상위계층인 자, 모·부자복지법 제4조제3호에 해당하는 보호대상자 및 교육감이 수급권자에 준한다고 인정하는 자

2. 농림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 및 농산어촌 지역 개발 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농산어촌학교에 재학하는 학생

④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재정여건을 고려하여 초·중등교육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의무교육 대상학교에 재학하는 학생 및 제5조 3호의 아동에 대하여 제1항의 급식비 지원을 순차적으로 확대하여야 한다.

제3장 급식운영 및 관리기준

제10조(식재료) ①학교급식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품질이 우수하고 안전한 식재료를 사용하여야 한다.

1. 친환경농업육성법에 의한 친환경농산물로서 국토환경보전에 기여할 수 있는 생산물

2. 농산물품질관리법 의한 품질인증품 및 일정 등급 이상의 표준규격품

3. 수산물품질관리법에 의한 품질인증품

4. 축산법에 의한 일정 등급 이상의 축산물로서 위해요소중점처리기준이 적용된 축산물

5. 농산물가공산업육성법에 의한 품질인증품

6. 지방자치단체장이 품질을 인정한 농·수·축산물

7. 제1호 내지 제4호 및 제6호의 농·수·축산물을 원료로 하여 제조·가공된 가공식품으로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표준규격품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식재료는 공급과 역순으로 추적이 가능하도록 유통경로가 투명하여야 하며, 가공식품의 경우 원료의 일정비율 이상은 안전하게 생산된 국내산 이어야 한다.

③그 밖의 식재료의 품질과 안전관리기준 등 필요한 사항은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조(영양관리) ①학교급식의 내용은 학생의 발육과 건강에 필요한 영양을 충족할 수 있으며, 올바른 식생활습관 형성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식품으로 구성되어야 한다.

②학교급식의 영양관리기준은 교육인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제12조(위생·안전관리) ①학교급식을 실시하는 자는 학교급식의 식단작성, 식재료 조달·검수, 보관, 세척·조리준비, 조리, 운반, 배식, 기구세척 및 소독 등 모든 과정에서 위해한 물질이 식품에 혼입되거나 식품이 오염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위생과 안전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②학교급식의 위생·안전관리기준 등 필요한 사항은 교육인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제13조(계약의 특례) 학교의 장이 식재료공급업자와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제7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하거나 참가자를 지명하여 경쟁에 부치거나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다.

제14조(생산품의 직접사용 등) 학교에서 작물재배·동물사육을 하거나 학교가 생산자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하여 체험학습농장 운영 등 각종 생산활동으로 얻은 생산품이나 그 생산품의 매각대금은 다른 법률의 규정에 불구하고 학교급식을 위하여 직접 사용할 수 있다.

제15조(학교급식 운영평가) ①교육감은 학교급식 운영의 내실화와 질 향상을 위하여 학교급식 운영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학교급식 운영평가 방법, 평가기준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장 식생활 지도 등

제16조(식생활 지도) 학교는 올바른 식생활습관 형성과 식량생산 및 소비에 관한 이해 증진, 전통식문화를 계승·발전시킬 수 있도록 학생과 학부모에게 식생활관련 지도 및 정보를 제공한다.

제17조(영양상담) 학교는 식생활에서 기인하는 질병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저체중 및 성장부진, 빈혈, 과체중 및 비만학생 등을 대상으로 영양상담과 필요한 지도를 한다.

제5장 급식운영 지원 및 지도·감독

제18조(학교급식위원회) ①교육감은 학교급식에 관한 지원계획수립 및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각각 그 소속하에 학교급식위원회를 둔다.

②제1항의 학교급식위원회의 조직·기능 그 밖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9조(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각각 그 소속하에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제1항의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의 조직·기능 그 밖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도조례로 정한다.

제20조(학교급식소위원회) ① 학교의 장은 학교급식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각각 학교운영위원회 산하 상설기구로서 학교급식소위원회를 둔다.

②학교급식소위원회의 구성 및 활동은 학교운영위원회운영관리조례로 정한다.

③학교의 장은 제1항의 학교급식소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을 존중하여야 하며, 학교급식 운영과 관련한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

제21조(학교급식지원센터 운영) ①교육인적자원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장은 학교급식이 교육과 연계하여 운영되고, 식재료가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조달·공급될 수 있도록 다음 각호의 기능을 수행하는 학교급식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한다.

1. 학교급식관련 정보네트워크의 구축 및 관리
2. 학교급식 영양·위생·경영관리 등 기술에 관한 연구·개발 및 보급
3. 학교급식 운영실태 평가 및 자문
4. 학생 식생활 지도자료 및 프로그램 개발
5. 급식관계자 교육·훈련
6. 학교급식 식재료의 계획적인 생산 및 조달과 공급 및 위생 등 품질관리
7. 그 밖의 학교급식 개선에 필요한 업무지원

②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설치·운영하는 센터의 경우 교육·연구 및 평가 관련 법인 또는 단체로 하여금 제1항 제1호 내지 제5호 및 제7호의 기

능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 ③교육인적자원부장관은 제1항 제6호의 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농림부장관이나 해양수산부장관에 업무의 일부를 위임할 수 있다.
- ④농림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은 교육인적자원부장관으로부터 위임받은 업무의 일부를 시·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으며, 식재료의 생산·유통관련 법인 또는 단체로 하여금 제1항 제6호의 기능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농림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은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⑤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대행기관의 지정 등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22조(지도·감독) ①교육감은 학교급식으로 제공되는 식품의 질과 위생 및 안전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학교급식시설 및 관련 시설에 출입하여 장표의 열람 및 위생·안전점검, 검체채취 등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
-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도·점검내용과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장 보칙 및 벌칙

제23조(권한의 위임) 이 법에 의한 교육감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 제24조(영업허가 등의 취소요청) ①교육감은 식품위생법·축산물가공처리법·수산업법 또는 농산물품질관리법 등에 의하여 허가 및 신고 또는 인증을 받은 자가 제12조에 의한 위생·안전관리기준을 위반하였거나,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점검결과 관계법령위반사항 적발시는 관할 행정기관의 장에게 그 허가 및 신고 또는 인증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하거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을 정지시키거나 그 밖의 위생상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요청을 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

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하고, 그 조치결과를 당해 교육감에게 알려야 한다.

제25조(공급계약 해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경우 다른 법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학교의 장은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식재료공급업자와의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식중독 등 위생·안전상 중대한 사고의 원인이 공급업자에 기인함이 밝혀졌을 경우
2. 식재료 원산지 허위기재, 계약조건보다 낮은 등급의 식재료 사용 등 부정한 방법으로 부당이득을 취하였을 경우
3.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생·안전점검 결과 2회 이상 동일사항에 대하여 연속적으로 법령을 위반하였을 경우

제26조(관련자 징계)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학교장 또는 교육감이 관련자를 징계하여야 한다.

1.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식중독 등 위생·안전상의 사고를 발생하게 한 자
2. 그 밖에 학교급식과 관련하여 비리가 적발된 자

제27조(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출입, 장부 열람, 위생·안전점검, 검체 채취를 등을 거부하거나 방해 또는 기피한 자
2. 식재료 원산지 허위기재, 계약조건보다 낮은 등급의 식재료 사용 등 부정한 방법으로 부당이득을 취한 자
3. 고의로 제2호의 사실을 은폐하였거나 은폐에 가담한 자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규정) ①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학교급식법에 의하여 행해진 모든 행위는 이 법에 의하여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②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학교급식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학교급식시설에 배치된 학교급식전담직원은 이 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양교사가 배치될 때까지 근무할 수 있다.

③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학교급식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급식을 실시하고 있는 학교에 대하여는 그 계약기간 만료시까지 업무위탁을 실시하는 것으로 한다.

④ 제 3항에 해당하는 업무의 위탁자는 이 법 제22조에 따라 제24조 내지 제27조의 제 규정을 준용한다.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초·중등교육법 제32조제1항 및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국·공립학교에 두는 학교운영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하되, 제2호 및 학부모가 부담하는 수익자부담교육경비에 관한 교육내용은 의결한다.

8. 학교급식 운영계획 승인 및 예·결산, 급식비 조정, 학교급식시설·설비의 공동설치, 식재료공급업자의 선정 등 학교급식에 관한 중요사항

②사립학교의 장은 제1항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제1호 및 제6호의 사항에 대하여는 학교법인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 한하며 다른 사항에 대하여는 제 1항의 내용과 같다.

■ 법안비교표

현행법- 국민본부 개정법률 안 -교육부발의 안

현행법	국민본부 안	비고(교육부안 비교)
제1조(목적) 이 법은 학교 급식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교급식 등을 통한 학생의 심신의 건전한 발달을 도모하고 나아가 국민식생활 개선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이 법은 학교 급식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성장기 학생의 심신의 건전한 발달을 도모하고 <u>전통의 식습관</u> 및 국민식생활 개선과 함께 <u>국내생산 농산물의 소비촉진과 안정적인 식량수급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u>	제1조(목적) 이 법은 학교 급식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u>학교급식의 질을 향상시키고</u> , 학생의 심신의 건전한 발달과 국민 식생활 개선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급식법은 교육법상 특별한 법률규정이며 그에 따른 교육의 가치와 목적을 분명하게 명시할 필요가 있으며 법개정은 단순히 급식의 질적 향상이 목표는 아님.

◎ 2004. 3월 현재 전국의 10,343개 학교 704만 학생의 학령기 12년 동안 적어도 한 끼 이상의 식사로 제공되는 중요한 교육으로서 급식은 하나의 교육과정으로 인식되어야 하며 먹는 것으로부터 얻어지는 중요한 생명, 생태 순환의 역학적 관계를 무시할 수 없음.

◎ 따라서 학교급식을 통해 우리는 다음의 내용들을 충분히 감안해야 함.

- 성장기 학생들에게 필요한 영양 공급
- 심신의 건전한 발달과 편식교정
- 올바른 식생활습관 자세
- 협동과 질서, 공동체 의식 함양
- 국민의 식생활 개선에 기여
 - 올바른 식생활 습관교육
 - 영양과 건강관리 능력 배양
 - 전통 식생활과 문화 계승
 - 식량 생산의 과정에 대한 이해증진
 - 지역과 국가와 세계의 사회 공동체의식배양
 - 자연 순화와 국가 상생의 공동체 의식 교육

◎ 그러므로 급식은 농업과 분리될 수 없으며 식량문제와 그에 따른 생산 및 수급의 안정성까지 고려하는 것임.

◎ 미국과 유럽 19개국 등 학교급식 프로그램과 농업을 연계한 정책

현행법	국민본부 안	비교(교육부안 비교)
<p>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p> <p>1. "학교급식"이라 함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학교안에 급식시설과 설비를 갖추고 당해 학교 또는 인접학교의 학생에 대하여 실시하는 급식과 특별시·광역시·도(이하 "시·도"라 한다)교육감 또는 교육장이 공동급식시설을 설치하여 관할구역의 각급학교 학생에 대하여 실시하는 급식을 말한다.</p> <p>2. "위탁급식"이라 함은 학교급식공급업자가 학교의 장으로부터 학교급식을 위탁받아 운영하거나, 조리·가공한 식품을 운반하여 실시하는 급식을 말한다.</p> <p>3. "학교급식공급업자"라 함은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탁급식을 행하는 자를 말한다.</p> <p>4. "급식에 관한 경비"라 함은 학교급식을 위한 식품비, 급식운영비 및 급식시설·설비비를 말한다.</p>	<p>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p> <p>1. "학교급식"이라 함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학교의 장 또는 특별시·광역시·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이 제5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의 학생에 대하여 실시하는 급식을 말한다.</p> <p>2. "급식에 관한 경비"라 함은 학교급식을 위한 식품비, 급식운영비 및 급식시설·설비비를 말한다.</p> <p>3. "식재료"라 함은 학교급식으로 제공되는 음식물의 조리·가공에 사용되는 농·수·축산물과 그 가공품을 말한다.</p> <p>4. "식재료공급업자"라 함은 학교의 장과 계약에 의하여거나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규정에 따라 당해 단체장이 지정하여 학교급식에 필요한 식재료를 공급하는 자를 말한다.</p>	<p>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p> <p>1. "학교급식"이라 함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학교의 장 또는 특별시·광역시·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이 제5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의 학생에 대하여 실시하는 급식을 말한다.</p> <p>2. "학교급식공급업자"라 함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학교의 장과 계약에 의하여 학교급식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아 행하는 자를 말한다.</p> <p>3. "식재료공급업자"라 함은 학교급식에 필요한 식재료를 학교의 장과 계약에 의하여 공급하는 자를 말한다.</p> <p>4. "급식에 관한 경비"라 함은 학교급식을 위한 식품비, 급식운영비 및 급식시설·설비비를 말한다.</p> <p>5. "식재료"라 함은 학교급식으로 제공되는 음식물의 조리·가공에 사용되는 농수축산물과 그 가공품을 말한다.</p>

◎ 정의 적으로 위탁급식은 국민본부 안에서 일체 배제함.

현행법	국민본부 안	비교(교육부안 비교)
제3조(국가·지방자치단체의 임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영양교육을 통한 식습관의 개선과 학교급식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3조(국가·지방자치단체의 임무)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교급식이 <u>공교육의 일환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u> 양질의 식재료를 안전하고 안정적으로 제공하고 이에 따른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생들의 올바른 식생활 관리능력 배양과 전통 식문화의 계승·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③ 제 1항과 제2항에 필요한 세부계획 및 내용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조(국가·지방자치단체의 임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u>양질의 학교급식이 안전하게 제공될 수 있도록 행정적·재정적으로 지원하여야 하며</u> , 학생들의 올바른 식생활 관리능력 배양과 전통 식문화의 계승·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 급식은 현행 공교육체제에서 180일 이상 한 시간의 수업으로 규정되었으므로 하나의 학교교육과정이기 때문에 당연히 교육에 대한 국가적 책임(행정 및 재정의 지원)을 명시해야 함.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분담을 법으로써 명시하여 지역간 격차나 교육의 불평등을 초래하지 않도록 해야 하며, 안 제 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다양한 계획등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자칫 소홀하거나 배타적 접근이 되지 않도록 부처간에 신중한 협의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야 함.

현행법	국민본부 안	비교(교육부안 비교)
<신설>	제4조(학교의 장의 임무) ①학교의 장은 학교급식을 <u>교육과정의 일환으로</u> 운영하여야 한다. ②학교의 장은 학교급식을 <u>효율적이고 투명하게</u> 운영·관리하며 개선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학교의 장의 임무) ①학교의 장은 학교급식을 <u>교육의 일환으로</u> 운영하여야 한다. ②학교의 장은 학교급식의 <u>효율적 운영·관리</u> 및 개선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현행 제6조제1항)

◎ 학교장의 책무강화만으로는 교장전횡의 빌미를 줄 수 있으며 학교운영위원회를 통한 운영관리를 계도할 필요가 있음.

◎ 운영의 원칙은 목표와 목적을 어떻게 설정했는가에 따라 중요함.

현행법	국민본부 안	비교(교육부안 비교)
<p>제4조(학교급식대상) 학교급식은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학교 또는 학급에 재학하는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초·중등교육법 제2조 제2호 내지 제4호의 1에 해당하는 학교 2. 초·중등교육법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청소년을 위한 특별학급 및 산업체부설 중·고등학교 3. 초·중등교육법 제55조의 규정에 의한 특수학교 4. 기타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교 	<p>제5조(학교급식 대상) 학교급식은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학교 또는 학급에 재학하는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초·중등교육법 제2조 제2호 내지 제5호의 1에 해당하는 학교 2. 초·중등교육법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청소년을 위한 특별학급 및 산업체부설 중·고등학교 3. 유아교육법 제2조 제2호에 해당하는 학교 및 영유아보육법 제6조 각호의 보육시설 4.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교 	<p>제5조(학교급식 대상) 학교급식은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학교 또는 학급에 재학하는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초·중등교육법 제2조 제2호 내지 제5호의 1에 해당하는 학교 2. 초·중등교육법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청소년을 위한 특별학급 및 산업체부설 중·고등학교 3.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교 (현행 제4조)

- ◎ 교육부는 초중등교육법개정과 유아교육법제정에 따른 체계만을 정비했을 뿐, 급식은 가장 중요한 습관의 교육임에도 유아교육기관을 제외하였음.
- ◎ 만 5세 무상의무교육정책과 아울러 2008년까지 도시근로자 전체가구의 70%에 해당하는 가정의 양육비지원정책에 배치되는 법안임.
- ◎ 따라서 국민본부 안 제 3호의 내용을 수용해야 함.

현행법	국민본부 안	비교(교육부안 비교)
<p>제5조(급식시설·설비) ① 학교급식을 실시할 학교는 학교급식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과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다만, 2이상의 학교가 인접하여 있을 경우에는 학교급식을 위한 시설을 공동으로 할 수 있다.</p> <p>② 교육감 또는 교육장은 관할구역 안에 학교급식을 위한 공동급식시설과 설비를 설치할 수 있다.</p> <p>③ 제1항과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설비의 종류와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제5조의2(학교급식후원회) ① 학교급식의 효율적인 실시와 필요한 경비의 조달 등을 위하여 학교급식대상학교에 학교급식을 지원하고자 하는 학부모와 법인·단체 또는 개인으로 구성하는 학교급식후원회(이하 "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이 경우 제5조제1항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학교급식을 위한 시설을 공동으로 갖추는 때에는 당해 시설을 공동으로 사용하는 2이상의 학교에 하나의 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제6조(급식시설·설비) ① 학교급식을 실시할 학교는 학교급식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과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다만, 2이상의 학교가 인접하여 있거나 <u>교육감이 부득이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초·중등교육법 제31조에 의한 학교운영위원회(이하 "학교운영위원회"라 한다)의 심의·의결을 거쳐 학교급식을 위한 시설을 공동으로 할 수 있다.</u></p> <p>② 교육감은 관할구역 안에 학교급식을 위한 공동급식시설과 설비를 설치할 수 있다.</p> <p>③ 제1항과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설비의 종류와 기준 <u>및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u></p> <p><급식후원회규정삭제></p>	<p>제6조(급식시설·설비) ① 학교급식을 실시할 학교는 학교급식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과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다만, 2이상의 학교가 인접하여 있을 경우에는 학교급식을 위한 시설을 공동으로 할 수 있으며, <u>학교급식공급업자에 의하여 조리·가공한 식품을 운반하여 급식을 하는 경우에는 학교급식시설을 갖추지 아니할 수 있다.</u></p> <p>② 교육감은 관할구역 안에 학교급식을 위한 공동급식시설과 설비를 설치할 수 있다.</p> <p>③ 제1항과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설비의 종류와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현행 제5조)</p> <p>제5조의2(학교급식후원회) 삭제)</p>

◎ 급식후원회규정은 이미 98년 학교운영위원회관련 초중등교육법이 개정되고 2000년 학교회계법 및 학교발전기금법에 의해 분명한 위법사항임.

◎ 불가피한 급식시설의 공동설치 등에 대한 명시

◎ 교육부 안 제 1항은 도시락 위탁 유형을 제시하고 시설설비를 갖추지 않을 수 있도록 예외규정을 명시함으로써 일반적으로 학교가 행정 편의적 발상에 의한 위탁 전환을 할 수도 있도록 한 것과 같음.

현행법	국민본부 안	비고(교육부안 비교)
제6조(학교급식의 운영원칙 및 관리기준) ①학교급식은 교육의 일환으로 운영되어야 한다. ②학교급식의 내용은 학생의 발육과 건강에 필요한 영양을 충족할 수 있는 식품으로 구성되어야 하며, 급식관리에 있어서는 위생과 안전에 철저히 기하여야 한다. ③학교급식의 영양 및 관리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항은 안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임무)에서 ‘공교육으로’와 제4조(학교장의임무)1항에서 ‘교육과정의 일환’으로 조문 변경 ☞ 제2항은 안 제11조(영양관리) 및 안제 12조(위생안전관리)로 변경 ☞ 안제11조 내지 제12조 2항에서 교육인적자원부령으로 으로 각각 변경	☞ 안 제4조 1항으로 변경 ☞ 동일 ☞ 동일

현행법	국민본부 안	비고(교육부안 비교)
제7조(전담직원의 배치) ① 학교급식을 위한 시설과 설비를 갖춘 학교급식시설과 학교급식공급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자격을 가진 학교급식전담직원을 두어야 한다. ②교육감 및 교육장은 학교급식에 관한 업무를 전담하게 하기 위하여 영양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는 직원을 둘 수 있다.	제7조(영양교사 등의 배치) ①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학교급식을 위한 시설과 설비를 갖춘 학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초·중등교육법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영양교사를 둔다. ②교육감 및 학교장은 학교급식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하여 학교급식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전문지식을 갖춘 전담직원을 둘 수 있다. ③제 2항 전문업무는 조리 및 회계, 운영관리, 위생관리등 급식의 질과 안전을 전담할 수 있어야 한다. ④제 1항의 영양교사와 제 3항의 규정 중 조리관련 종사원의 적정인원수와 업무규정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조(영양교사 등의 배치) ①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학교급식을 위한 시설과 설비를 갖춘 학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초·중등교육법 제 2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영양교사를 둔다. <u>학교급식공급업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한 자격을 가진 학교급식전담직원을 두어야 한다.</u> ② 교육감은 학교급식에 관한 업무를 전담하게 하기 위하여 영양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는 직원을 둘 수 있다. (현행 제7조)

◎ 2003년 학교급식법의 부분개정으로 학교영양사는 교사이며 교육부안 제 1항은

위탁급식학교도 영양교사를 두도록 한 것이며 제 2항은 교육청에도 영양전문 직원 즉 영양사를 두도록 했음. 현재의 교육청종사자들은 대체로 영양학전문보다는 식품 위생전공자가 많음에 대한 보완책으로 여겨짐.

◎ 교육부 안은 결국 영양사가 교사로서의 역할과 관리업무를 하도록 한 것으로, 제 1항의 위탁급식 관련내용은 기존의 급식 전담원으로서 영양사업무는 위탁급식업체 소속 급식전담원이 하도록 하며 학교소속의 영양교사는 그를 관리하도록 한 것임.

◎ 이를 근거로 교육부 안 제17조(식생활지도)와 제 18조(영양상담)를 명시하여 영양교사의 업무를 규정함으로써 기존에 급식 전담원의 직무규정을 명시한 현행 급식법시행령 제 5조(전담직원의 자격·업무 및 배치) 제 4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1. 식단작성 및 위생관리 2. 식품재료의 선정 및 검수 3. 식품의 조리지도 및 검식 4. 영양 및 식생활개선에 관한 학생지도와 학부모의 상담 5. 조리실 종사자의 지도·감독 (이 경우 위탁급식에 의한 학교급식전담직원은 제4호의 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한다.) 내용 중 “제 4호의 업무를 강조”한 것임.

◎ 결과적으로 교사의 업무로서 영양 및 식생활지도를 위한 수업을 하게 되며 학생들에게는 신설과목에 대한 수업과 평가의 부담을 안기는 것이므로 업무규정에 대한 명시를 별도로 정하지 아니하면 그로부터 파생되는 교육전반의 대 혼란이 예상된다.

◎ 따라서 국민본부 안 제 2항과 같이 영양교사를 두되 급식업무를 효율적으로 관리 할 수 있도록 전담보조직원을 학교와 교육청에 각각 둘 수 있게 하는 것이 바람직함.

◎ 국민본부 안 제 2항의 전문 인력이 담당하는 업무구분은 안 제 3항에서 다름.

◎ 국민본부 안 제 4항은 식재료 문제와 함께 급식의 질을 결정하게 되는 조리인력의 문제에 있어서 국가가 책임 있는 정책을 세울 필요가 있음. 특히, 조리종사원의 학생수대비 “적정인원”(2003년 9월 25일 학교급식개선을 위한 정책토론에서 확인된 근거로써 학생수 140명당 1명이 가장 적절한 종사원수 임)의 “상용 대한 근거와 예산 등의 지원이 법문화”되어야 함.(지역간 격차문제 등 해소)

현행법	국민본부 안	비교(교육부안 비교)
<p>제8조(경비부담) ①학교급식 실시에 필요한 시설·설비에 요하는 경비와 학교급식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비는 당해 학교의 설립·경영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u>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후원회 또는 학부모가 그 경비의 일부를 부담할 수 있다.</u></p> <p>②제1항에 규정된 경비 이외의 급식에 관한 경비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학부모부담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할 수 있다.</p>	<p>제8조(경비부담기준) ①학교급식 실시에 필요한 시설·설비에 요하는 경비는 당해 학교의 설립·경영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할 수 있다.</p> <p>②학교급식 운영에 필요한 경비 중 식품비는 학부모가 부담한다. 다만, 의무교육 대상학교에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학부모가 일부를 부담할 수 있다.</p> <p>③제1항 및 제2항에 규정된 경비 이외의 급식에 관한 경비는 <u>당해 학교 설립·경영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u></p> <p>④제 2항의 규정에 의한 경비부담 및 재원의 조달에 대한 시책 등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제8조(경비부담 기준) ①학교급식 실시에 필요한 시설·설비에 요하는 경비는 당해 학교의 설립·경영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할 수 있다.</p> <p>②학교급식 운영에 필요한 경비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비는 당해 학교 설립·경영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u>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학부모가 부담할 수 있다.</u></p> <p>③제1항 및 제2항에 규정된 경비 이외의 급식에 관한 경비는 <u>학부모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u> (현행 제8조)</p>

- ◎ 교육부 안은 시설 및 설비는 학교와 지방자치단체가, 운영경비 일부와 식품비는 학부모가 부담함을 규정, 부담의 비율 등에 언급안함
- ◎ 국민본부 안은 경비부담의 주체와 부담비율, 재원의 조달계획 등 세부사항을 대통령령으로 규정하도록 하고 의무교육기관에서의 무상급식을 명시함
- ◎ 경비의 주체를 어디에 두는가에 따른 변수가 있음을 고려함.

현행법	국민본부 안	비교(교육부안 비교)
<p>제9조(생산품의 직접 사용 등) ①학교에서 작물재배·동물사육 기타 각종 생산활동으로 얻은 생산품이나 그 생산품의 매각대금은 다른 법률의 규정에 불구하고 학교급식을 위하여 직접 사용할 수 있다.</p>	<p>제14조(생산품의 직접사용 등) 학교에서 작물재배·동물사육을 하거나 <u>학교가 생산자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하여 체험학습농장 운영 등 각종 생산활동으로 얻은 생산품이나 그 생산품의 매각대금은 다른 법률의 규정에 불구하고 학교급식을 위하여 직접 사용할 수 있다.</u></p>	<p>제15조(생산품의 직접사용 등) 학교에서 작물재배·동물사육 <u>그 밖의</u> 각종 생산활동으로 얻은 생산품이나 그 생산품의 매각대금은 다른 법률의 규정에 불구하고 학교급식을 위하여 직접 사용할 수 있다. (현행 제9조)</p>

- ◎ 노작교육, 도농교류의 교육적 가치 등의 명시적 체계를 둘 필요가 있음.

- ◎ 제주 아라중학교의 사례와 같이 급식에 대한 본질적 교육을 실시 하기위한 급식 프로그램을 마련하며 이와 유사한 체험 및 현장학습 등의 교육과정 편입이 필요함.
- ◎ 먹는 교육에 대한 생산관련 다양한 교육을 통해 안 제 1조의 목적을 달성하고 급식교육을 발전시키고자 하는 정책적 대안이 필요함.
- ◎ 이와 연계된 내용으로 WTO 등으로부터의 통제나 제지를 피하며 국내 기반산업을 육성·발전시키는 물론 식량안보의 차원에서 중요한 것임.

현행법	국민본부 안	비고(교육부안 비교)
<p>제10조(위탁급식) ①학교안에 학교급식을 위한 시설과 설비를 갖추지 못한 학교의 경우 학교급식공급업자와 계약을 통하여 학교급식을 위한 시설의 설치·운영을 위탁하거나, 조리·가공한 식품을 운반하여 위탁급식을 실시할 수 있다.</p> <p>②위탁급식은 위탁급식을 실시하고자 하는 학교의 장이 초·중등교육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운영위원회 또는 학부모(학교운영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 한한다)의 의견을 들어 위탁급식을 희망하는 학생에 한하여 실시한다. 다만, 초등학교는 학교급식을 실시하고 위탁급식을 실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관할 교육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p> <p>③위탁급식의 경우 급식비는 학부모가 부담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급식비의 일부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할 수 있다.</p> <p>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학교급식공급업자의 기준, 위탁계약방법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삭제></p>	<p>제14조(업무위탁) ①학교의 장은 학교급식에 관한 업무의 일부를 학교급식공급업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p> <p>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학교급식에 관한 업무의 위탁범위와 방법, 학교급식공급업자의 자격기준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③학교급식공급업자는 학교급식의 질 및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교육인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지켜야 한다.</p> <p>(현행 제10조)</p>

- ◎ 교육부 안은 위탁급식을 세분화하여 업무위탁으로 명칭만 변경된 것임.
- ◎ 이는 교육부 안 제 7조와 제17조 및 제 18조에 연동하여 고려된 내용으로 여겨

집

◎ 국민본부 안은 위탁자체의 개념을 삭제함

현행법	국민본부 안	비교(교육부안 비교)
<p>제11조(급식지원)</p> <p>①시·도교육감은 제4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학교 또는 학급에 재학하는 학생중에서 그 학부모의 경제적 능력 부족등으로 인하여 수업일의 점심시간에 주식 및 부식을 제공받을 수 없는 자(이하 이 조에서“급식지원대상 학생”이라 한다)에 대하여 그 실태를 파악하여 당해 지방자치단체장과의 협의를 거쳐 수업일 및 방학기간등의 급식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p> <p>②시·도교육감은 제1항의 급식계획중 방학기간등의 급식지원대상학생에 대한 급식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당해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지방자치단체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p> <p>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급식지원에 필요한 경비는 제8조 및 제10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되, 국가가 100분의 50이상을 부담하여야 한다.</p> <p>④급식지원대상학생에 대한 급식계획·급식방법·경비분담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제9조(급식비 지원)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조와 제3조에 따라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안전하고 우수한 식재료의 사용 등 양질의 학교급식을 제공하기 위하여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학부모가 부담할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p> <p>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급식비를 지원하는 경우에 국가가 50% 이상을 부담하여야 하며, 현물 또는 이에 준하는 현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p> <p>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급식비를 지원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에 해당되는 자를 우선적으로 배려하되, 교육감은 다음 1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방과후와 휴일 및 방학기간 등의 급식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p> <p>1. 제5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학교 등에 재학하는 학생 또는 그 보호자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5조에 의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이거나 동법시행령 제36조에 의한 차상위계층인 자, 모·부자복지법 제4조제3호에 해당하는 보호대상자 및 교육감이 수급권자에 준한다고 인정하는 자</p> <p>2. 농림어업인의삶의질향상및농산어촌지역개발촉진에관한특별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농산어촌학교에 재학하는 학생</p> <p>④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재정여건을 고려하여 초·중등교육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의무교육 대상학교에 재학하는 학생 및 제5조 3호의 아동에 대하여 제1항의 급식비 지원을 순차적으로 확대하여야 한다.</p>	<p>제9조(급식비 지원) ①제8조의 경비부담기준에도 불구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학부모가 부담할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p> <p>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급식비를 지원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자를 우선적으로 배려한다.</p> <p>1. 제5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학교 등에 재학하는 학생 또는 그 보호자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5조에 의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이거나 동법시행령 제36조에 의한 차상위계층인 자</p> <p>2. 농림어업인의삶의질향상및농산어촌지역개발촉진에관한특별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농산어촌학교에 재학하는 학생</p> <p>③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재정여건을 고려하여 초·중등교육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의무교육 대상학교에 재학하는 학생에 대하여 제1항의 급식비 지원을 순차적으로 확대한다. (현행 제11조)</p>

◎ 교육부 안은 저소득층대상 무상급식지원의 순차적 확대와 현재 지원대상의 범위

를 확대 조정함

◎ 안 제3항은 의무교육기관 무상급식의 순차적 확대를 명시함

◎ 그런데, 현행법상 국가의 지원비율 명시를 삭제한 것은 교육의 지방직화를 염두에 둔듯함.

◎ 특히 유아교육기관에 대한 저소득층 지원관련 명시 안 된 것은 국가시책에 전면 배치됨. (안 제 5조와 연동 됨)

현행법	국민본부 안	비고(교육부안 비교)
신설	<p>제10조(식재료) ①학교급식에는 <u>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품질이 우수하고 안전한 식재료를 사용하여야 한다.</u></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u>친환경농업육성법에 의한 친환경농산물로서 국토환경보전에 기여할 수 있는 생산물</u> 2. <u>농산물품질관리법 의한 품질인증품 및 일정 등급 이상의 표준규격품</u> 3. <u>수산물품질관리법에 의한 품질인증품</u> 4. <u>축산법에 의한 일정 등급 이상의 축산물로서 위해요소중점처리기준이 적용된 축산물</u> 5. <u>농산물가공산업육성법에 의한 품질인증품</u> 6. <u>지방자치단체장이 품질을 인정한 농·수·축산물</u> 7. <u>제1호 내지 제4호 및 제6호의 농·수·축산물을 원료로 하여 제조·가공된 가공식품으로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표준규격품</u> <p>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식재료는 <u>공급과 역순으로 추적이 가능하도록 유통경로가 투명하여야 하며, 가공식품의 경우 원료의 일정비율 이상은 안전하게 생산된 국내산 이어야 한다.</u></p> <p>③<u>그 밖의 식재료의 품질과 안전관리 기준 등 필요한 사항은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한다.</u></p>	<p>제10조(식재료) ①학교급식에는 <u>품질이 우수하고 안전한 식재료를 사용하여야 한다.</u></p> <p>②식재료의 품질과 안전관리기준 등 필요한 사항은 <u>교육인적자원부령으로 정한다.</u></p>

◎ 교육부 안과 같이 '품질이 우수하고 안전한 식재료'라는 포괄적 개념을 규정하게 되면 수입식품, GMO 등을 배제할 수 있는 근거가 없음

현행법	국민본부 안	비교(교육부안 비교)
(현 행 제6조제2항)	제11조(영양관리) ①학교급식의 내용은 학생의 발육과 건강에 필요한 영양을 충족할 수 있으며, 올바른 식생활 습관 형성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식품으로 구성되어야 한다. ②학교급식의 영양관리기준은 교육인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제11조(영양관리) ①학교급식의 내용은 학생의 발육과 건강에 필요한 영양을 충족할 수 있으며, 올바른 식생활습관 형성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식품으로 구성되어야 한다. ②학교급식의 영양관리기준은 교육인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현행법	국민본부 안	비교(교육부안 비교)
(현 행 제6조제2항)	제12조(위생·안전관리) ①학교급식을 실시하는 자는 학교급식의 식단작성, 식재료 조달·검수, 보관, 세척·조리준비, 조리, 운반, 배식, 기구세척 및 소독 등 모든 과정에서 위해한 물질이 식품에 혼입되거나 식품이 오염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위생과 안전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②학교급식의 위생·안전관리기준 등 필요한 사항은 교육인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제12조(위생·안전관리) ①학교급식을 실시하는 자 및 학교급식공급업자는 학교급식의 식단작성, 식재료 조달·검수, 보관, 세척·조리준비, 조리, 운반, 배식, 기구세척 및 소독 등 모든 과정에서 위해한 물질이 식품에 혼입되거나 식품이 오염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위생과 안전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②학교급식의 위생·안전관리기준 등 필요한 사항은 교육인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현행법	국민본부 안	비교(교육부안 비교)
신설	제13조(계약의 특례) 학교의 장이 식재료 공급업자와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제7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하거나 참가자를 지명하여 경쟁에 부치거나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다.	제13조(계약의 특례) 학교의 장이 식재료 공급업자 또는 학교급식공급업자와의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국가를당사자로 하는계약에관한법률 제7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초·중등교육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운영위원회(이하 “학교운영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서 참가자 의 자격을 제한하거나 참가자를 지명하여 경쟁에 부치거나 수의 계약에 의할 수 있다. (신 설)

현행법	국민본부 안	비교(교육부안 비교)
현행 제10조		제14조(업무위탁) ①학교의 장은 학교급식에 관한 업무의 일부를 학교급식공급업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학교급식에 관한 업무의 위탁범위와 방법, 학교급식공급업자의 자격기준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학교급식공급업자는 학교급식의 질 및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교육인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지켜야 한다. (현행 제10조)

현행법	국민본부 안	비교(교육부안 비교)
신설	제15조(학교급식 운영평가) ①교육감은 학교급식 운영의 내실화와 질 향상을 위하여 학교급식 운영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학교급식 운영 평가 방법, 평가기준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6조(학교급식 운영평가) ①교육감은 학교급식 운영의 내실화와 질 향상을 위하여 학교급식 운영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학교급식 운영 평가 방법, 평가기준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 설)

현행법	국민본부 안	비교(교육부안 비교)
신설	제16조(식생활 지도) 학교는 올바른 식생활습관 형성과 식량생산 및 소비에 관한 이해 증진, 전통식문화를 계승·발전시킬 수 있도록 학생과 학부모에게 식생활관련 지도 및 정보를 제공한다.	제17조(식생활 지도) 학교는 올바른 식생활습관 형성과 식량생산 및 소비에 관한 이해 증진, 전통식문화를 계승·발전시킬 수 있도록 학생과 학부모에게 식생활관련 지도 및 정보를 제공한다. (신 설)

현행법	국민본부 안	비교(교육부안 비교)
신설	제17조(영양상담) 학교는 식생활에서 기인하는 질병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저체중 및 성장부진, 빈혈, 과체중 및 비만학생 등을 대상으로 영양상담과 필요한 지도를 한다.	제18조(영양상담) 학교는 식생활에서 기인하는 질병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저체중 및 성장부진, 빈혈, 과체중 및 비만학생 등을 대상으로 영양상담과 필요한 지도를 한다. (신 설)

현행법	국민본부 안	비교(교육부안 비교)
신설	제18조(학교급식위원회) ①교육감은 학교급식에 관한 지원계획수립 및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각각 그 소속하에 학교급식위원회를 둔다. ②제1항의 학교급식위원회의 조직·기능 그 밖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9조(학교급식위원회) ①교육감은 학교급식에 관한 지원계획수립 및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각각 그 소속하에 학교급식위원회를 둔다. ②제1항의 학교급식위원회의 조직·기능 그 밖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현행 시행령 제10조)

현행법	국민본부 안	비교(교육부안 비교)
신설	제19조(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각각 그 소속하에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제1항의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의 조직·기능 그 밖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도조례로 정한다.	

◎ 전국의 16개 시·도 단위에서 제정되고 있는 학교급식지원조례와 관련된 지원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의 법적 근거를 마련함

◎ 안 제 18조와 제19조의 법적기능은 지역단위 급식관리센터의 기능적 역할을 수행하게 되며 안 제 21조 제 1항과 연동됨

현행법	국민본부 안	비교(교육부안 비교)
신설	<p>제20조(학교급식소위원회) ① 학교의 장은 학교급식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각각 학교운영위원회 산하 상설기구로서 학교급식소위원회를 둔다.</p> <p>② 학교급식소위원회의 구성 및 활동은 학교운영위원회운영관리조례로 정한다.</p> <p>③ 학교의 장은 제1항의 학교급식소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을 존중하여야 하며, 학교급식 운영과 관련한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p>	

- ◎ 학교급식소위원회는 단위학교 급식관리센터의 기능적 역할을 하는 것임
- ◎ 이미 각 지역마다 학교운영위원회운영 및 관리조례 내에 명시한 학교급식소위원회구성 의무사항을 명시하고 있으나, 명칭만 법제화되고 실제 구성은 임의적으로 할 수 있는 소지가 다분하므로 근거 내용을 법으로 명시할 필요가 있음
- ◎ 학교급식소위원회의구성은 다음과 같은 원칙으로 한다
 - ① 급식비를 부담 하는 학부모 대표, 급식을 먹는 학생대표, 급식을 지도하는 교사 대표, 급식을 제공하는 영양사 및 조리종사원 대표로 구성 한다.
 - ② 학부모운영위원과 교원위원 약간 명이 학교운영위원회를 대표하여 참여한다.
 - ③ 소위의 학부모와 교사 위원으로 각각의 학년 대표, 학생은 학생회장과 부회장이 참여한다.
 - ④ 위원회의 장은 학운위의 학부모위원, 간사는 교원위원 중에서 선임한다.
 - ⑤ 급식소위 활동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해 역할을 분담할 수 있다.
(예 : 납품업체선정 팀, 식품검수 팀, 급식 및 운영평가 팀 등)
- ◎ 학교급식소위원회의 영양사와 조리원 대표는 각 1인씩 참여하며. 조리원 대표는 노동조합이 있을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이, 조합이 없을 경우에는 과반수의 찬성에 의해 선출된 자로 하는 것이 타당함

현행법	국민본부 안	비교(교육부안 비교)
신설	<p>제21조(학교급식지원센터 운영) ①교육인적자원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장은 학교급식이 교육과 연계하여 운영되고, 식재료가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조달·공급될 수 있도록 다음 각호의 기능을 수행하는 학교급식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학교급식관련 정보네트워크의 구축 및 관리 2. 학교급식 영양·위생·경영관리 등 기술에 관한 연구·개발 및 보급 3. 학교급식 운영실태 평가 및 자문 4. 학생 식생활 지도자료 및 프로그램 개발 5. 급식관계자 교육·훈련 6. 학교급식 식재료의 계획적인 생산 및 조달과 공급 및 위생 등 품질 관리 7. 그 밖의 학교급식 개선에 필요한 업무지원 <p>②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설치·운영하는 센터의 경우 교육·연구 및 평가관련 법인 또는 단체로 하여금 제1항 제1호 내지 제5호 및 제7호의 기능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p> <p>③교육인적자원부장관은 제1항 제6호의 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농림부장관이나 해양수산부장관에 업무의 일부를 위임할 수 있다.</p> <p>④농림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은 교육인적자원부장관으로부터 위임받은 업무의 일부를 시·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으며, 식재료의 생산·유통관련 법인 또는 단체로 하여금 제1항 제6호의 기능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농림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은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p> <p>⑤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대행기관의 지정 등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제20조(학교급식지원센터 운영) ①교육인적자원부장관은 학교급식이 교육과 연계하여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하는 학교급식지원센터를 운영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학교급식관련 정보네트워크의 구축 및 관리 2. 학교급식 영양·위생·경영관리 등 기술에 관한 연구·개발 및 보급 3. 학교급식 운영실태 평가 및 자문 4. 학생 식생활 지도자료 및 프로그램 개발 5. 급식관계자 교육·훈련 6. 그 밖의 학교급식 개선에 필요한 업무지원 <p>②교육인적자원부장관은 교육·연구 및 평가관련 법인 또는 단체로 하여금 제1항의 기능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p> <p>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업무대행시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은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p> <p>④제2항의 규정에 의한 대행기관의 지정 등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신 설)</p>

- ◎ 교육부 안은 국가 주도형 관리(외부연구기관 대행가능)을 명시
- ◎ 학자로 구성된 연구기관은 현장과 괴리된 탁상행정 등을 우려 하게 되며 이에 따른 단위학교의 교육외적 업무부담을 야기할것임
- ◎ 특히 식재료의 생산·공급 및 유통 관련한 국가개입 관리 내용은 제외되어있음
- ◎ 합리적인 외부연구 대행을 하기위해서는 범정부적 차원에서의 관리를 유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함

현행법	국민본부 안	비고(교육부안 비교)
신설	<p>제22조(지도·감독) ①교육감은 학교급식으로 제공되는 식품의 질과 위생 및 안전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학교급식시설 및 관련 시설에 출입하여 장표의 열람 및 위생·안전점검, 검체채취 등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p> <p>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p> <p>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도·점검내용과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제21조(지도·감독) ①교육감은 학교급식으로 제공되는 식품의 질과 위생 및 안전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학교급식시설 및 관련 시설에 출입하여 장표의 열람 및 위생·안전점검, 검체채취 등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p> <p>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p> <p>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도·점검내용과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현행 시행령 제3조의2)</p>

현행법	국민본부 안	비고(교육부안 비교)
신설	<p>제23조(권한의 위임) 이 법에 의한 교육감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p>	<p>제22조(권한의 위임) 이 법에 의한 교육감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신 설)</p>

현행법	국민본부 안	비고(교육부안 비교)
신설	<p>제24조(영업허가 등의 취소요청) ①교육감은 식품위생법·축산물가공처리법·수산업법 또는 농산물품질관리법 등에 의하여 허가 및 신고 또는 인증을 받은 자가 제12조에 의한 위생·안전관리기준을 위반하였거나,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점검결과 관계법령위반사항 적발시는 관할 행정기관의 장에게 그 허가 및 신고 또는 인증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하거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을 정지시키거나 그 밖의 위생상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p> <p>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요청을 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하고, 그 조치결과를 당해 교육감에게 알려야 한다.</p>	<p>제23조(영업허가 등의 취소요청) ①교육감은 식품위생법·축산물가공처리법·수산업법 또는 농산물품질관리법 등에 의하여 허가 및 신고 또는 인증을 받은 자가 제12조에 의한 위생·안전관리기준을 위반하였거나,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점검결과 관계법령위반사항 적발시는 관할 행정기관의 장에게 그 허가 및 신고 또는 인증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하거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을 정지시키거나 그 밖의 위생상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p> <p>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요청을 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하고, 그 조치결과를 당해 교육감에게 알려야 한다.</p> <p>(신 설)</p>

현행법	국민본부 안	비교(교육부안 비교)
신설	<p>제25조(공급계약 해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경우 다른 법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학교의 장은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식재료공급업자와의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식중독 등 위생·안전상 중대한 사고의 원인이 공급업자에 기인함이 밝혀졌을 경우 2. 식재료 원산지 허위기재, 계약조건보다 낮은 등급의 식재료 사용 등 부정한 방법으로 부당이득을 취하였을 경우 3.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생·안전점검 결과 2회 이상 동일사항에 대하여 연속적으로 법령을 위반하였을 경우 	<p>제24조(공급계약 해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경우 다른 법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학교의 장은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u>학교급식공급업자 또는 식재료공급업자와의</u>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식중독 등 위생·안전상 중대한 사고의 원인이 공급업자에 기인함이 밝혀졌을 경우 2. 식재료 원산지 허위기재, 계약조건보다 낮은 등급의 식재료 사용 등 부정한 방법으로 부당이득을 취하였을 경우 3.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생·안전점검 결과 2회 이상 동일사항에 대하여 연속적으로 법령을 위반하였을 경우 4. 제1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준수사항을 위반하여 학교의 장이 2회이상 서면으로 시정요구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시정하지 않은 경우 <p>(신 설)</p>

현행법	국민본부 안	비교(교육부안 비교)
신설	<p>제26조(관련자 징계)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학교장 또는 교육감이 관련자를 징계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식중독 등 위생·안전상의 사고를 발생하게 한 자 2. 그 밖에 학교급식과 관련하여 비리가 적발된 자 	<p>제25조(관련자 징계)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학교장 또는 교육감이 관련자를 징계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식중독 등 위생·안전상의 사고를 발생하게 한 자 2. 그 밖에 학교급식과 관련하여 비리가 적발된 자 <p>(신 설)</p>

현행법	국민본부 안	비교(교육부안 비교)
신설	<p>제27조(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출입, 장부 열람, 위생·안전점검, 검체 채취를 등을 거부하거나 방해 또는 기피한 자 2. 식재료 원산지 허위기재, 계약조건보다 낮은 등급의 식재료 사용 등 부정한 방법으로 부당이득을 취한 자 3. 고의로 제2호의 사실을 은폐하였거나 은폐에 가담한 자 	<p>제26조(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출입, 장부 열람, 위생·안전점검, 검체 채취를 등을 거부하거나 방해 또는 기피한 자 2. 식재료 원산지 허위기재, 계약조건보다 낮은 등급의 식재료 사용 등 부정한 방법으로 부당이득을 취한 자 3. 고의로 제2호의 사실을 은폐하였거나 은폐에 가담한 자 <p>(신 설)</p>

◎ 현행법상 최고령의 징계명시

부 칙

현행법	국민본부 안	비고(교육부안 비교)
신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설)

현행법	국민본부 안	비고(교육부안 비교)
신설	<p>제2조(경과규정) ①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학교급식법에 의하여 행해진 모든 행위는 이 법에 의하여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p> <p>②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학교급식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학교급식시설에 배치된 학교급식전담직원은 이 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양교사가 배치될 때까지 근무할 수 있다.</p> <p>③이 법 시행당시 <u>종전의 학교급식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급식을 실시하고 있는 학교에 대하여는 그 계약기간 만료시까지 업무위탁을 실시하는 것으로 한다.</u></p> <p>④ 제 3항에 해당하는 업무의 위탁자는 이 법 제22조에 따라 제24조 내지 제27조의 제 규정을 준용한다.</p>	<p>제2조(경과규정) ①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학교급식법에 의하여 행해진 모든 행위는 이 법에 의하여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p> <p>②이 법 시행당시 <u>종전의 학교급식법 제4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학교급식을 실시하고 있는 초등학교 병설유치원은 이 법 제5조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하는 것으로 본다.</u></p> <p>③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학교급식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학교급식시설에 배치된 학교급식전담직원은 이 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양교사가 배치될 때까지 근무할 수 있다.</p> <p>④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학교급식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급식을 실시하고 있는 학교에 대하여는 그 계약기간 만료시까지 <u>이 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업무위탁을 실시하는 것으로 본다.</u> (신 설)</p>

◎ 국민본부 안 제 4항의 신설은 안 전체에서 위탁급식학교에 대한 언급이 없기 때문에 벌칙과 보칙에 대한 규정에 대한 위탁급식업체의 적용범위를 명시 하게 됨

현행법	국민본부 안	비고(교육부안 비교)
신설	<p>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초·중등교육법 제32조제1항 및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p> <p>①국·공립학교에 두는 학교운영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하되, 제2호 및 학부모가 부담하는 수익자부담교육경비에 관한 교육내용은 의결한다.</p> <p>8. 학교급식 운영계획 승인 및 예·결산, 급식비 조정, 학교급식시설·설비의 공동설치, 식재료공급업자의 선정 등 학교급식에 관한 중요사항</p> <p>②사립학교의 장은 제1항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제1호 및 제6호의 사항에 대하여는 학교법인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 한하며 다른 사항에 대하여는 제1항의 내용과 같다.</p>	<p>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초·중등교육법 제32조제1항제8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p> <p>8. 학교급식 운영계획 승인 및 예·결산, 급식비 조정, <u>업무위탁 실시, 식재료공급업자 및 학교급식공급업자의 선정</u> 등 학교급식에 관한 중요사항</p>

- ◎ 현행법상 급식운영 관련내용에 대한 실제 정비가 필요한 것임
- ◎ 그동안의 급식운영관련문제가 심화되어 왔던 것은 바로 학교운영위원회의 기능을 규정하던 내용이며, 특히 공립과 사립을 구분 적용함으로써 사립의 경우 급식관련 교육비리 내용이 많음
- ◎ 그리고 현재 사립학교는 교육과정은 물론 국가지원의 내용은 공립학교와 다른 것을 볼 때, 합리적으로 법률을 개정하는 것이 바람직함

우리 농산물 학교 급식을 위한 예산 지원의 WTO 협정상의 조건⁵⁾

송 기 호

변호사, 푸드시스템 연구회

'.....the Secretary shall require that a school food authority purchase, to the maximum extent practicable, domestic commodities or products': The National School Lunch Act 12(n) (미국 농무부 장관은 학교 급식담당자로 하여금 실제 가능한 최대한도로 미국산 농산물이나 식료를 구매하도록 요구하여야 한다: 미국 학교 급식법 12(n)조)

1. 교육감들의 소송

올해 1월, 전라북도 교육감은 전라북도 의회를 피고로 하여 대법원에 '전라북도학교급식조례재의결무효확인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⁶⁾. 이 사건은 올 5월 28일 변론절차가 모두 끝나, 현재 대법원의 선고 절차만을 남겨 두고 있다. 그리고 지난 6월, 경상남도 교육감은 경상남도 의회를 피고로 하여 대법원에 경상남도학교급식조례재의결무효확인청구의 소

5) 이 글의 초고를 읽고 유익한 강평을 해준 농협중앙회 조사연구소의 김홍배 님에게 감사한다. 특히 미국 뿐만 아니라, EU도 정부조달협정 양허표에서 학교 급식을 적용에서 제외하였다는 부분과 우리 농업법에 학교 급식 근거규정을 마련할 필요성 등은 그의 강평에 따른 것이다.

6) 학교급식조례에 관한 최초의 대법원 판례는 다음의 것이다. 인천광역시 남동구청장은 1996년 인천광역시 남동구청의회가 학교 급식의 조기 실시를 권장하기 위하여 구청장으로 하여금 학교급식시설비와 설비비의 일부를 지원하도록 한 조례를 제정하자, 학교 급식에 관한 사무는 구청의 사무가 아니라는 이유로 대법원에 조례가 무효임을 확인해 줄 것을 구하였다. 그러나 대법원은, 학교급식의 '실시'에 관한 사항은 특별시 광역시 도의 사무에 해당하나, 학교급식 '시설의 지원'에 관한 사무는 시군구자치구의 자치사무에 해당한다고 보고, 학교급식시설의 지원 대상학교를 확대하고 있는 조례안이 법령에 위반되지 아니한다고 판시하여, 남동구청장에게 패소판결을 내렸다. 곧 남동구청의회의 조례가 적법하다고 판시하였다. (대법원 1996. 11. 29. 선고 96추84 판결 (학교급식시설지원에 관한 조례안 재의결 무효확인 소))

를 제기하였다. 왜 이 두개의 조례만이 전국의 여러 학교급식조례가운데 소송의 대상이 되었는가? 우리 농산물을 학교 급식에 사용하도록 예산을 지원하는 것은 WTO를 위반한 것인가?

이 글은 우리 농산물 학교 급식지원이 어떻게 WTO 협정에서 가능한 것인지 그 근거와 조건을 WTO 협정에서 찾으려 한다. 필자는 2003년, 학교급식을 공공정책으로 파악하는 방법으로, 그리고 농업인이 우리의 아이들에게 먹일 만한 좋은 농산물을 생산하는 방법에 의하여, 우리 농산물 학교 급식에 예산을 지원하는 일이 WTO협정과 어긋나지 않는다는 해석론을 전개하였다. 이 글에서도 종래의 입장을 견지하면서, GATT 1947, 정부조달협정(Agreement on Government Procurement), 보조금 협정(Agreement on Subsidies and Countervailing Measures), 농업협정(Agreement on Agriculture)의 해석을 통하여, 학교 급식법 개정 방향에 대한 시사점을 얻고자 한다. 동시에 이는 한국의 입법부가 법률로 규정한 다음과 같은 WTO 법에 대한 해석원칙을 확인하는 일이기도 하다.

“협정의 어느 조항도 세계자유무역체제의 일원으로서의 우리나라의 정당한 경제적 권익을 침해하는 것을 용인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없다.”(WTO협정의 이행에 관한 특별법 제 2조)

학교 급식은 공공정책으로서, 교육정책, 식료·농업정책의 하나이다. 곧 국가가 예산을 지원해야 할 부분인 것이다. 그러므로 국가의 예산지원과 연계하지 않고, 학교 급식당국이나 위탁급식공급업자가 과연 급식재료로 우리농산물을 사용하도록 의무화할 수 있는가.

2. 우리 농산물 학교 급식에 대한 예산 지원의 국내법적 근거

먼저 우리 농산물 학교 급식에 대한 예산 지원의 국내법규상의 근거를 찾고자 한다. 현행 학교 급식법은 가난한 가정의 학생들에 대한 급식지원비는 전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도록 하였다(법 제11조). 특히2003. 12. 학교급식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및 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이 학교급식에 품질이 우수한 농산물이 사용될 수 있도록 '식품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다.(시행령 제7조 제5항) 다만 시행령은 품질이 우수한 농산물의 개념이나 기준에 대하여는 아무런 조항을 두지 않았다. 그리고 학교급식법 시행규칙은 학교급식공급업자의 준수사항을 규정하면서, 식품재료는 다양한 종류의 자연식품을 사용할 것을 그 하나로 정했다.(제4조의 3 제2호) 그리고 조례 가운데는 전라북도의회 학교급식조례(제 2989-11호)와 경상남도의회 학교급식조례만이 명시적으로 다음과 같이 지역농산물 혹은 우리 농산물 학교 급식에 대한 예산 지원을 규정하고 있을 뿐이다.

전라북도의회 학교급식조례

제3조 제2항: 우수농산물이라 함은 민족의 전통과 정서에 맞고, 학생들의 건강한 심신의 발달에 기여할 수 있는 전라북도에서 생산되는 우수 농수축산물과 이를 재료로 사용하는 가공식품을 말한다.

제4조 제2항: 교육감은 학교급식에 필요한 경비 중 우수농산물을 구입하기 위한 식재료 구입비의 일부를 예산범위에서 지원해야 한다.

제6조 제1항: 교육감은 지원대상자로 하여금 안전하고 질 높은 학교급식을 위해 우선적으로 우수농산물을 사용하도록 한다.

제6조 제2항: 도지사는 전라북도 농산물의 소비촉진과 안정된 수급조절, 도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학교급식에 우수농산물이 사용될 수 있도록 식재료의 일부를 현물로 지원하거나 식재료 구입비의 일부를 정해진 절차에 따라 예산범위안에서 지원해야 한다

경상남도의회 학교급식조례

제3조 제2항: 우리 농축수산물이라 함은 민족의 전통과 정서에 맞고, 학생들의 건강한 심신의 발달에 기여할 수 있는, 친환경 농산물과 농산물 품질관리법 수산물품질관리법 축산법에 의한 품질 인증품 및 일정등급 이상의 표준규격품으로써 유전자 변형이 되지 않은 우리의 식재료와 이를 재료로 사용하는 가공식품을 말한다.

제5조 제1항: 교육감은 지원대상자로 하여금 안전하고 질 높은 학교급식을 위해 우리 농축수산물을 우선적으로 사용하도록 지도한다. 제2항 교육감은 1항을 준수하는 지원대상자에게 예산을 배분하거나 식재료의 일부를 현물로 지원할 수 있다.

필자는 학교 급식법 시행령 제7조 제5항의 '품질이 우수한 농산물'과 학교급식법시행규칙 제 4조의 3 제 2호의 '식품재료는 다양한 종류의 자연식품을 사용할 것'이라는 용어를 통일적으로 해석함으로써, 학교급식이 가지는 식료·농업문제에서의 의의를 살려 나갈 필요가 있다고 본다. 예컨대, 학교급식법 시행령상의 '품질이 우수한 농산물'을 친환경농업육성법에서 정의한 '친환경농산물'로 제한 해석할 수 있다. 왜냐하면 첫째, 품질이 우수하다는 용어는 지나치게 추상적이고 광범위한 용어이므로 해석을 통하여 그 범위를 명백하게 함이 학생의 심신의 건전한 발달을 그 제정목적으로 하는 학교급식법의 취지와도 맞다.(법 제1조) 둘째, 품질이 우수한지의 판별 기준을 친환경농업 육성법에서 찾을 수 있다. 친환경농업육성법에 의할 때, 농약의 안전사용기준 준수, 작물별 시비기준량 준수, 적절한 가축사료 첨가제 사용등 화학자재 사용을 적정수준으로 유지하고 축산분뇨의 적절한 처리 및 재활용 등을 통하여 환경을 보전하고 안전한 농산물을 생산하는 농업('친환경농업')에서, 생산한 농산물이 친환경농산물이다.(친환경농업육성법 제2조 제1,2호) 그러므로 친환경농업육성법에서 정한 농약, 비료, 사료첨가항생제의 사용 기준을 지키지 않고 생산된 농산물을 일컬어 '품질이 우수한 농산물'이라 할 수 없다.

다만, 친환경농업육성법이 친환경농산물이 반드시 우리 농산물이어야 한다고 규정한 것은 아니므로 우리 농산물 학교 급식에 대한 예산 지원의 국내법적 근거는 아직 충분하지 않다 할 것이다.

3. 우리 농산물 학교 급식에 대한 예산 지원의 WTO협정상 의 근거

우리 농산물 학교 급식을 위한 예산지원과 관련된 WTO 협정은 다음과 같다. 첫째 GATT 1947 제3조 제4항, 제5항에서 수입품의 각종 판매조건에 관한 불리한 규제를 금지하고, 국내 공급원으로부터 공급되어야 함을 요구하는 규정을 금지한 내국민대우원칙이 문제가 된다. 둘째 우리 농산물 학교 급식을 위한 예산 지원은 정부조달에 해당하여 정부조달 협정 제3조 제1항의 내국민대우원칙이 문제가 된다. 이 때 적용범위와 관련하여 정부가 우리 농산물을 구입하여 현물지급하는 경우와 우리 농산물 구입 식료비를 학교 급식 당국에 현금 지원할 경우를 구별하여, 전자만을 정부기관의 조달이라 할 수 있느냐가 문제 된다. 이에 대하여 필자는 정부조달협정 제1조 제1항 및 주석 2에서 조달기관에 그 대리 기관(agency)도 포함하는 것으로 규정한 점, 정부의 지원과 감독을 받는 경우, 민간조직이라도 정부기관으로 해석한 WTO 판례가 있는 점⁷⁾, 둘 다 모두 동일한 목적과 효과를 같은 점에 비추어 둘 다 정부의 조달행위로 본다. 그러므로 필자는 현물제공이든 현금지원이든 이를 따로 구별하지 않는다. 셋째, 이는 국내 농업에 대한 국내 지지(domestic support)의 성격을 갖게 되므로, 보조금협정과 농업협정과 관계가 있다.

내국민대우원칙

먼저 내국민대우원칙을 보기로 하자. 이는 어떠한 법, 규제, 과세도 국내 시장에서 수입품이 국산품과 경쟁하는 조건을 불리하게 하여서는 안 된다는 원칙이다. 한국 쇠고기 사건에서 WTO는 수입 쇠고기에 대하여 전문판매점에서만 유통되도록 하고, 백화점과 같은 대규모 판매점에서 외국 쇠고기 판매점을 구분 설치하도록 하여, 국산 쇠고기와 수입 쇠고기가 서로 유통을 달리 하도록 한 법령이 외국산 쇠고기의 소비 감소를 가져오고, 이는 '경쟁기회의 감소'에 해당하여 내국민대우원칙에 반한다고 하였다. (Korea-Measures Affecting Imports of Fresh, Chilled and Frozen Beef, Report of the Appellate Body, 147-148절)

GATT 1947

가트 1947의 3.8(a)조는 '상업적 재판매 목적이 아닌, 혹은 상업적 판매용 제품 생산 목적이 아닌, 정부기관의 행정적 목적에 따른 구매와 관련한 법률, 규칙 또는 기타 요건'에는

7) *Canada-Measures Affecting the Importation of Milk and the Exportation of Dairy Products*, Report of the Appellate Body, 97절

내국민대우원칙을 적용하지 않는 예외를 두었다. (원문은 다음과 같다. The provisions of this Article shall not apply to laws, regulations or requirements governing the procurement by governmental agencies of products purchased for governmental purposes and not with a view to commercial resale or with a view to use in the production of goods for commercial sale.)

결식아동 방지 및 균형있는 영양 제공은 중요한 행정적 목적에 해당한다. 우리 <학교 급식법>은 학교 급식을 교육의 일환으로 파악하고 있다. 학교급식법 6조 1항 학교 급식을 위한 농산물 구매는 상업적 재판매 목적이 아니며 상업적 판매용 생산 목적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정부의 학교 급식 농산물 조달에는 가트 1947의 내국민 대우 원칙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다. 만일 현금지원을 현물지불과 구별하는 견해에 의하면, 현금지원에 대하여는 가트 1947의 내국민대우원칙이 적용되나, 이 견해를 따르지 않은 이유는 앞에서 밝혔다.

정부조달협정

우리 농산물을 정부가 구매하여 현물로 학교 급식에 제공하는 것은 정부조달협정상 가능하다. 정부조달협정은 각 나라가 제출한 양허표에 포함시키지 않은 주체의 행위에 대하여는 정부조달협정을 적용하지 않는다.(정부조달협정 1.1조 주석 1) 우리나라는 양허표 부속서 1에 약 40개의 중앙정부기관을 특정하였다. 여기에는 시군구 단위는 포함되지 않았다. 그러므로 예를 들어 나주시와 같은 시 군 구 단위의 지방정부가 우리 농산물을 학교 급식에 지원하는 데에는 정부조달협정상의 내국민대우원칙을 적용할 수 없다. 그렇다면 양허표에 포함된 농림부, 직할시와 도가 급식 농산물을 조달하는 경우는 어떠한가? 이 경우도 다음의 이유로 정부 조달협정상 가능하다고 해석된다.

첫째, 우리나라 양허표 부속서 1 주석 3에 의하여 양곡관리법,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및 축산법에 따른 농·수·축산물 조달 등에는 정부조달협정을 적용하지 않도록 하였다. 예컨대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57조 제1항 제6호 등을 인용하여, 농수산물의 유통구조개선 및 가격안정을 위하여 농산물가격안정기금으로 학교 급식용 우리 농산물을 구매하는 방법을 통하여 우리 농산물 학교 급식에 예산을 지원함은 정부조달 협정상 가능하다.⁸⁾

둘째, 정부조달협정에 의하면 인간과 동식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에 대하여는 내국민대우원칙을 적용하지 않는다.(정부조달협정 23.2조) 그러므로 정부가 성장기 아동들의 균형 있는 영양제공과 결식아동 구제를 위하여 구체적인 영양학적 기준을 가지고, 지역에서 생산한 신선한 급식 농산물을 조달하는 경우 이는 생명 및 건강

8) 이 방법론은 김정진 2003, '학교 급식법의 WTO 합치 여부에 대한 의견'(미간행)을 따랐다

조항에 해당하여 허용된다고 본다. 이를 위해, 수입 농산물로 인한 식중독 사건 등의 자료를 체계화할 필요가 있다.

셋째, 조달협정이 다른 WTO 협정과 구별되는 특징 가운데 하나는 상호주의이다.('mutual reciprocity', 조달협정 서문) WTO 정부조달협정은 농업협정 등과는 달리 WTO 회원국이라 하여 당연히 이를 준수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이 아니다. 별도로 이를 승인한 나라들 사이에서만 적용되는 복수당사자간 협정이다. 현재 미국을 포함하여 24국이 이를 승인하였다.⁹⁾ 조달협정은 철저히 상호주의에 따라 상대방이 조달시장을 열어 주는 범위만큼 자신의 시장도 여는 방식을 따르고 있다. 미국은 자신의 양허표 부속서 1에서 농업지원프로그램 또는 급식프로그램을 장려하기 위한 농무부의 농산물 조달은 협정 적용대상에 포함하지 않겠다고 양허하였다. 양허표 원문 가운데 본문 부분은 다음과 같다. (Department of Agriculture (not including procurement of agricultural products made in furtherance of agricultural support programmes or human feeding programmes)¹⁰⁾ 유럽연합도 같다. 그러므로 미국과 유럽연합이 우리 농산물 학교급식에 대한 예산지원에 대해 정부조달협정위반이라 다룰 수는 없다.

보조금 협정 및 농업협정

우리농산물 학교 급식을 위하여 현물이나 현금으로 지원하는 것은 보조금협정이나 농업협정을 위반하지 않는다. 농업협정에서 허용하는 보조금은 보조금협정에도 불구하고 허용된다.(보조금협정 제5조, 제6조, 농업협정 제13조)

그러므로 농업협정에서 정한 여러 국내 농업지지에 대한 허용영역을 활용함이 필요하다. 이 점에서 농업협정 제1(a)조, 부속서 2에서 정한 여러 허용보조금(흔히 이를 green box라 부른다)이 중요하다.

첫째, 허용보조금으로서 빈곤한 국민계층에 대한 국가의 식료 지원을 허용하였다.(농업협정 제1(a)조, 부속서 2.4) 국가가 현행 시장 가격으로 농산물을 구입하여 수혜자에게 식량을 공급하거나, 혹은 수혜자로 하여금 식료를 시장 가격 혹은 보조가격으로 사먹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허용하였다. 그러므로 농업협정 부속서 2의 4조에서 정한 대로 영양학적으로 정의한 기준을 가지고 우리 농산물을 현물 지원하거나 현금 지급하는 것은 보조금협정이나 농업협정에 의할 때 가능하다.

둘째, 환경을 보전하는 농업에 대한 지원이 가능하다. (농업협정 제1(a)조, 부속서 2.12)그

9) Matsushita et al., 2003, *The World Trade Organization: Law, Practice, and Policy*, 177쪽

10) 미국의 양허표 부속서 1에 대한 연구는 김홍배 2001, 『학교 급식 제도 개선에 관한 연구』에서 유래한 것이다

러므로 환경보전형 농업을 위하여 추가적으로 들어가는 비용을 보상하기 위하여 그 생산물을 국가가 급식 원료로 직접 구입하거나, 구입비를 지원하는 일은 가능하다.

셋째, 조건이 불리한 지역의 농업에 대한 지원이 가능하다. (농업협정 제1(a)조, 부속서 2.13) 조건불리 지역에 대한 지불금의 형태로써, 조건불리지역에서 생산한 농산물을 우선적으로 학교 급식에 사용하도록 함은 가능하다.

4. 결론 : 의지의 문제요 관점의 문제

우리 농산물 학교 급식에 대한 예산 지원은 국내법적 근거는 충분하지 않으나, WTO 협정상 가능한 일이다. 이 글의 앞부분에서 밝혔듯이, 필자는 학교 급식을 공공정책으로 파악함이 중요하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다. 이는 학교 급식의 공공적 성격을 보지 않은 채, 학교 급식당국 혹은 위탁급식공급업자로 하여금 우리 농산물만을 구입하도록 의무화할 것인가의 문제로 보는 관점과는 다르다. 마찬가지로 학교 급식문제는 단순한 WTO의 문제가 아니다. 학교 급식을 공공재로 파악하여 여기에 예산을 들일 것인가가 문제이다. 제한된 예산을 어디에 쓸 것인가를 놓고 벌어지는 논쟁과 갈등의 문제이다. 우리 주류 사회가 우리 농업을 어떻게 보느냐의 문제이다. 이는 결국 학교 급식을 우리의 식료·농업문제와 같이 보려는 의지의 문제이다.

필자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 방향에서의 입법론을 갖고 있다.

첫째, 일반적 단계로서, 우리 농산물 사용 여부 이전에, 학교 급식에 사용하는 식료에 대한 높은 안전성과 품질의 우수성을 확보할 구체적 방안과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가장 좋은 농산물을 우리의 아이들에게 먹일 수 있어야 한다.

둘째, 예산이 들어가는 영역에서는, 곧 단 한푼이라도 세금으로서 급식을 지원하는 단계에서는 우리 농산물 사용을 규정해야 한다. 이는 WTO협정에서 가능한 일이다. 이 때 '우리 농산물'이라는 단선적 규정을 마련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도 않고, 적절하지도 않음을 지적하고 싶다. 우리 농산물이 담보해야 할 안전성, 품질 우수성을 같이 규정해야 한다. 또한 농업협정상의 허용보조금을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대상이 되는 학생에 대한 경제능력 기준, 영양학적 기준, 환경보전형 농업에 대한 규정, 조건불리지역에 대한 규정 등을 학교 급식 법령에 반영해야 할 것이다.

이 점에서 경상남도의회의 조례가 시사하는 바가 많다. 조례 제3조 제2항에서 우리 농축수산물을 단지 국산으로 단선적으로 규정하지 않고, 관행농업과 구별되는 더 나은 농업으로 제한하였을 뿐만 아니라, 제5조 제2항에서 교육감에게 예산지원과 우리 농산물 사용을 연계하였다.

그리고 마지막 영역으로서, 단지 학교 급식법 뿐 만 아니라, 관련 농업법의 개정으로 서로 박자를 맞추어야 한다. 여기에는 정부조달협정 양허표에서 적시한 양곡관리법,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및 축산법에 학교 급식을 위한 조달의 근거 조항을 마련하는 일이 포함된다. 그리고 친환경농업법과 농산물품질관리법을 실효성있게 개정하여, 친환경농산물의 비중을 높이고, 우리 농산물의 안전성과 품질을 높일 필요가 있다. 이 지점에서 재차 강조하건대, 우리 농산물 학교 급식에 대한 예산 지원은 궁극적으로 교육관의 문제이요, 식료·농업관의 문제이다.

참고문헌

Matsushita et al., 2003, *The World Trade Organization: Law, Practice, and Policy*, Oxford University Press, New York

김정진, 2003, '학교급식법의 WTO 합치여부에 대한 의견'(미간행)

김홍배, 2001, 『학교급식제도개선에 관한 연구』,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조사부 연구보고서,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이태호, 2002, 'SPS조치에 관한 WTO 사건 분석', 통상법률 43호, 131-166쪽, 법무부

송기호, 2003, '학교급식을 국가 정책으로' 농민신문 2003. 7.14

2004, 『WTO시대의 농업통상법』 개마고원

학교급식법 개정을 위한 공청회 토론문

복기왕

열린우리당 국회의원

학교급식법 개정과 관련한 핵심 현안은 직영급식의 문제, 무상급식의 문제, 우리 농산물 사용 문제임.

첫째, 직영급식 문제를 살펴보면,

- 위탁급식은 그 동안 학교급식의 가장 큰 병폐로 알려져 있는 '식중독 사고'의 주요원인으로 지적되어 직영급식으로의 전환 요구가 비등해왔음.
- 위탁급식을 직영급식으로 전환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장점은
 - ① 학교장의 단독 책임 하에 진행되어 온 급식을 학교운영위원회와 공동 책임하에 운영을 한다는 측면에서 매우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운영을 할 수 있다는 것임
 - ② 학교와 업체간에 급식계약을 함에 있어서 그 동안 여러 가지 비리의 원인을 제공하였으나, 직영급식으로 전환할 경우 보다 투명한 운영체제를 구축할 수 있다는 것임.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직영급식 문제와 관련한 시민단체의 요구에 대해 이견을 보이는 것은 재정적 요인을 간과할 수 없기 때문이라고 판단됨.

- 현행 학교급식운영 체제에서 전면적인 직영급식체제로의 전환은 반드시 필요하지만 국가의 교육재정 부담이란 측면을 간과할 수 없기에 직영급식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한 경우에 한하여 위탁급식을 허용 할 수 있으며 그 경우에는 기간과 요건을 분명히 하고 관할 감독청이나 교육청으로부터 승인을 받게 함으로써 직영급식체제로 단계적인 전환을 유도할 필요가 있음.

둘째, 무상급식문제를 살펴보면

현재까지 학교급식경비는 수익자부담을 원칙으로 하여 학부모에게 재정적 부담을 가중시켜왔음. 그러나 학교급식의 무상급식화는 교육의 기본인 복지와 평등·형평의 원칙에 있어 타당하나 국가재정의 뒷받침 없이는 현실적으로 많은 어려움이 따

름.

- 결국 무상급식이 가능하도록 하려면 급식시설 · 설비 · 운영에 따른 경비를 국가 또는 지자체가 적극 지원하는 체제를 구축하는 등 단계적인 재정지원 확충시스템을 마련해 나가야 됨.

셋째, 우리 농산물 사용문제를 살펴보면

현재 학교급식은 최저가 입찰원칙만 강조되면서 안정성이 검증되지 않은 저급 · 수입 농산물로 채워지고 있는 실정임. 이는 '식중독 사고'의 주요원인이 되고 있음.

안전하고 질 높은 학교급식을 위해 우리의 체질에 맞고 질도 우수한 우리 농산물을 급식재료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WTO 협정 문제를 집고 넘어가지 않을 수 없음.

- 그 동안 WTO 협정의 해석을 둘러싸고 자국산 농산물 사용 가능여부에 대해 의견이 상충되어 왔는데, 이는 '관세 및 무역에 관한 협정', '정부조달 협정', '농업협정', '보조금 및 상계조치 협정' 등 여러 부속협정들과 학교급식이 연관되어 있기 때문임.

- '우리 농산물'사용을 위해서는 위에서 언급한 관련협정에 대한 면밀한 법률적 검토와 각국의 사례연구가 필요함. 이를 통해 학교급식법에 우리 농산물 사용을 명시함으로써 향후 관련협정들을 적용하는데 있어 유리하게 작용될 수 있도록 검토해 나가야 할 것임.

- WTO 정부조달협정 제23조 제2항은 정부가 공중의 안전과 건강을 위해 추진하는 정책에 국산 농산물을 사용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어 문제될 것이 없다는 견해도 있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함.

- '우리 농산물'사용 여부는 농업을 살려나가야 하는 우리의 현실에서 매우 중요한 문제이기도 하지만 과연 "학교급식재료로 어떤 농산물을 사용해야 우리 자녀들에게 안전하게 믿고 먹게 할 수 있는가?"라는 관점이 우선돼야 함.

미래세대의 튼튼한 체력은 국가경쟁력

김 영 속

한나라당 국회의원

체력은 국력입니다.

학교는 자라나는 학생들에게 학교급식을 통해 일정한 시간, 적정의 영양소와 칼로리를 공급하고 체위향상과 건강증진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또한 학교급식을 통해 바른 식습관 형성과 협동, 질서의식등 공동체의식을 함양하여 건강한 국민으로 육성하는 중요한 교육의 일환입니다.

1998년부터 전면적으로 실시되어온 학교급식이 지금까지는 급식실시를 위한 시설확충등 양적팽창에 중점을 두어 왔으나 이제는 식생활의 고급화, 차별화되어 가는 시대의 추세에 맞추어 위생적인 급식관리체제 구축과 질적향상등 국민적 기대와 요구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고 봅니다.

오늘, 학교현장에서 학교급식에 대한 실태 진단과 제시하신 문제점 및 대처방안에 대체적으로 공감합니다. 오늘 세미나 주제 「**학교급식개선은 국가와 공교육을 살리는 일입니다**」 와 관련하여□□학교급식 교육은 본질적으로 먹는 것에서부터 출발하여 생명순환의 가치를 인간과 자연의 나눔을 통해 총체적으로 배워가는 범교과적인 하나의 중요한 교육과정□□이라는 부분도 의견을 같이 합니다.

이 같은 학교급식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학교급식의 질적저하 문제와 식중독사고의 발생으로 인한 제도개선의 요구가 분출하고 있습니다. 최근 학교급식 식중독 사고로 인하여 학생들의 건강을 해치고, 국민을 불안하게 하는 일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청」에 따르면 2003년 전체 식중독사고 135건의 36%에 해당하는 49건이 학교급식에서 발생하였습니다.

「교육부의 2003년 자료」에 의하면 위탁급식 학교 식중독 환자수가 3천377명에 이르러 직영급식 학교 식중독 환자수 753명의 약4.5배에 달해 위탁급식의 위생상의 문제점이 꾸준히 지적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본 의원도 학교급식의 질적 향상과 위생관리측면에서 직영체제로의 전환이 필요함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민운동본부안에서와 같이 전면적인 직영전환은 많은 예산부담¹¹⁾이 지원되어야 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위탁급식학교중 운영위탁학교부터 직영전환으로 하는등 점진적인 전환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또한 여건상 어려울 경우 의무교육대상학교인 초·중학교만이라도 직영을 실시하여 질적개선을 이루어야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국민운동본부안에서 우리농산물의 사용을 의무화하도록 하였는데 본 의원도 취지에 대해서는 공감을 합니다. 그러나 외교통상부는 학교급식법에 우리농산물 사용을 규정할 경우 WTO정부조달협정 제3조 내국민대우¹²⁾(national treatment) 원칙 위배로 국제통상마찰의 소지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농산물 사용을 법으로 규정하는 것은 학교급식법의 개정에 걸림돌로 작용할 소지가 있으므로 우리학생 체질에 맞는 우수한 식재료를 사용토록 규정하는 것이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다고 봅니다.

11) 2003년12월말기준 전체급식학교 10,343개교중, 위탁급식 1,930개교
 운 영 위 탁 1,643개교*직영전환시 8,000만원=1,314억원
 의 부 운 반 287개교*직영전환시 3억=861억원, 습 2,175억원(예상)

12) WTO 정부조달협정

■ 제3조(내국민대우 및 무차별)

1. 이 협정의 적용을 받는 정부조달에 관한 모든 법률, 규정, 절차 및 관행과 관련, 각 당사자는 다른 당사자의 상품, 서비스 및 동 당사자 상품 또는 서비스의 공급자에게 즉시 그리고 무조건적으로 다음보다 불리하지 않은 대우를 부여한다.

가. 국내상품, 서비스 및 공급자에게 부여되는 대우, 그리고

나. 그 밖의 당사자의 상품, 서비스 및 공급자에게 부여되는 대우

2. 이 협정의 적용을 받는 정부조달에 관한 모든 법률, 규정, 절차 및 관행과 관련, 각 당사자는 다음을 보장한다.

가. 자기나라의 조달기관이 외국인과의 제휴 또는 외국인 소유의 정도를 기준으로 한 국내에 설립된 공급자를 다른 국내에 설립된 공급자보다 불리하게 대우하지 아니한다.

나. 자기나라 조달기관이, 생산국이 제4조(원산지 규정)의 규정에 따른 이 협정 당사자인 경우, 공급되는 상품이나 서비스의 생산국을 기준으로 하여 국내에 설립된 공급자를 차별하지 아니한다.

3.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수입시 또는 수입과 관련하여 부과되는 관세 및 모든 종류의 과징금, 그러한 관세 및 과징금의 부과방법, 다른 수입규정 및 절차 그리고 이 협정의 적용을 받는 정부조달에 관한 법률, 규정, 절차 및 관행이외에 서비스무역에 영향을 미치는 조치에 대해 적용되지 아니한다.

더불어 본 토론회에서 학교급식법 개정내용으로 제시한 내용중 검토가 더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점들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첫째, 학교급식법이 추구하고자 하는 궁극적인 정책방향은 학생들을 위한 급식을 안전하고 질 높은 급식으로 개선·보완하자는 것입니다. 학교급식의 질적 향상을 위해 우수한 우리 농산물을 사용하여 급식의 질을 높여 보자는 취지에는 동의합니다. 급식의 질을 향상 시키다 보면 당연히 우리농산물 사용의 증가와 이로 인한 국내농산물의 소비촉진과 안정적인 식량수급에 기여하게 될 것으로 보는데, 이 같은 파생적 효과가 법의 목적으로 대두되는 것은 부적합하다고 봅니다. 이 부분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둘째, 안 제5조 학교급식대상과 관련하여 말씀드리면, 현재 보다 급식대상학교의 확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나 2004년 1월 8일 국회를 통과한 「영유아보육법」 제33조13)와 「유아교육법」 제17조14)에 각각 이들에 대한 급식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규정과 서로 상충되거나 해석상 논란이 되어 법률체계상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셋째, 안 제8조 경비부담기준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면 원칙적으로 학부모가 부담하는 식품비를 제외하고는 당해 학교 설립·경영자가 부담하게 됩니다. 당해 학교 설립·경영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별다른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재정여건상 사립학교나 혹은 재정자립도가 취약한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국가의 지원을 받아야 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비부담기준에서 국가 지원부분이 빠져 있다는 것은 문제라고 봅니다.

따라서 학교급식의 시설·설비 경비부담에 있어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도록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넷째, 안 제9조 급식비 지원 분야를 살펴보면, 학생중식지원사업은 교육인적자원부가 1989년부터 정책적으로 초등학교 결식아동 급식지원을 시작으로 '97년에는 중·고등학교로 확대되었으며, '99년도 IMF체제하에서 학교급식법을 개정하여 급식지원조항을 신설, 방학기간 등에도 중식지원을 법제화하여 2000년부터는 토·공휴일을 포함한 365일 지원체제로 하여 2002년도부터는 학기중 급식비지원과 방학등의 중식

13) 제33조(급식관리) 보육시설의 장은 영유아에게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균형 있고 위생적이며 안전한 급식을 하여야 한다.

14) 제17조 (건강검진 및 급식) ① (생 략)

②원장은 교육하고 있는 원아에게 적합한 급식을 제공할 수 있다.

③제1항의 규정에 따른 건강검진의 실시시기 및 그 결과처리에 관한 사항과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급식 시설·설비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인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지원으로 구분 운영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 「아동급식지원대책」에 의하면 보건복지부가 2000년부터 저소득층지원 확대방안의 일환으로 지방자치단체를 통하여 미취학아동의 중·석식과 학생의 석식을 지원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국민운동본부안 제9조3항에 의하면 「교육감은 다음1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방과후와 휴일 및 방학기간 등의 급식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고 하였으나 2004년부터는 교육인적자원부와 보건복지부로 이원화되어 실시되고 있던 결식학생들에 대한 토·일요일, 공휴일, 방학중 식사지원사업이 보건복지부로 일원화된 것과 상충된다고 봅니다. 학교입장에서도 토·일요일, 공휴일, 방학중에는 교원들이 개인이나, 단체연수기간으로 관리가 어려운 실정이므로 실행에 어려움이 따른다고 판단됩니다.

다섯째, 안 제10조 식재료와 관련하여 말씀드리면, 학교급식의 질을 제고하기 위하여 품질이 우수하고 안전한 식재료를 사용하고자 하는 정책방향에 대해서는 본 의원도 공감합니다. 그러나 학교급식이 단위 학교별로 학교급식의 식단이 마련되어 당일 사용할 식재료를 소량 다 품목으로 신속하게 구입해야 하는 급식현장의 실정을 감안할 때 개정안과 같은 식재료를 구입해서 사용하기는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여섯째, 그 밖에 학교급식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학교급식지원센터나 급식위원회 등 기관이나 제도 신설은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기관의 신설이 일선 단위학교의 학교급식 운영을 규제하기 보다는 현재의 급식운영 시스템을 효율적으로 개선·지원하는 체제로 마련되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끝으로 학교급식의 질은 학생 건강의 질이라고 봅니다. 학교급식주체 모두가 내 아이이며 미래의 인재를 건강하게 양성하는 먹거리에 관한 문제를 함께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된 것에 대해 오랜 기간 교육현장에서 급식과 교육을 해 온 본인은 무한한 고마움을 느낍니다.

오늘 토론회를 준비하시느라 노고가 많으셨던 관계자여러분과 바쁘신 일정 가운데서도 많은 관심을 보여주신 여러 선생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교육과 농업, 인간과 자연을 위한 과감하고 야심찬 도전, 학교급식법 개정

최 순 영

민주노동당 국회의원

1. 급식법 개정 공청회의 의미

1) 급식운동의 의미- 국민의 국가정책 참여라는 모범적인 전형을 만든 소중한 과정

- 생활협동조합, 전농, 전교조, 참교육학부모회를 비롯하여 다양한 시민 사회단체 들이 동참하여 학교급식문제에 계속적이고 일관된 관심을 보임
- 시민사회단체의 참여를 바탕으로 전국의 지역 곳곳에서 조례청원서명 등 시민이 직접 참여하는 획기적이고 역사적인 입법운동이 진행됨
- 학교급식 개선운동, 급식조례제정 운동을 통해 교육, 농업, 환경, 건강, 복지 등 사회전반의 문제와 관련되어 학교급식정책의 중요성이 전 국민들에게 널리 알려짐
- 학교급식에 대한 문제 공유로 시작되어 법과 제도를 통한 급식운동이 진행되는 과정을 통해 우리 농산물 사용, 학교 직영, 무상 급식 실현 등 중요한 학교급식의 3대 원칙을 합의 도출해 냄

2) 공청회의 의미- 공청회를 계기로 입법 활동에 박차를

- 수많은 문제제기에도 불구하고 국민의 염원을 저버린 정부의 급식법 개악안을 비판하고 근본적 급식제도 개선을 위한 올바른 대안을 제시함
- 국민운동본부의 급식법 개정안에 대한 민주노동당, 열린우리당 등 여러 당과 교육부, 농림부 등 정부부처, 교육단체 농민단체 등의 의견을 널리 청취함
- 그동안 진행되어온 급식운동의 성과를 중간 정리하고 최종적으로 입법안을 확정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함
- 급식법 개정안을 성공적으로 입법화하기 위한 방안을 함께 고민하는 자리임.

2. 민주노동당의 급식법 개정 활동 경과와 입장

1) 국본과 함께 해온 민주노동당

- 전국에서 지역별로 지구당과 시도 지부 차원에서 급식조례 제정을 위한 운동을 주도하고 당원들, 주민들과 함께 서명작업, 홍보 등에 적극적으로 참여함
- 급식법개정 국민운동본부에 중앙당차원과 지역에서 함께 참여하였을 뿐 만 아니라 많은 지역에서 헌신적인 노력으로 급식조례제정을 위한 주민발의 서명을 성공시키는 성과를 일구어냄
- 급식조례제정운동에 적극적으로 동참하는 과정을 통해 급식법개정안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가 가능해졌으며 이후 성공적인 급식운동을 위한 활동력이 축적되었음.

2) 국민과 함께 급식법 개정의 견인차로 나설 민주노동당

- 민주노동당 자체로 급식법개정안 마련하였으며 6월초에 국회 법제실을 통해 법안을 검토하였고 현재 발의할 법안이 마련된 상태임. 국민운동본부안과 내용면에서는 별차이가 없음.
- 국민운동본부의 급식법 개정 3대 원칙이 고스란히 담긴 법안을 7월중에 입법 발의할 계획임.
- 민주노동당의 자체 법률안 발의보다는 연대의 정신에 근거하여 국본의 법률안을 민주노동당위원이 발의하는 것을 우선시 한다는 것이 당의 입장임.
- 법률안 발의 이후 당의 중심사업으로 지역과 중앙에서 국본과 함께 급식법개정 활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할 것임.
- 법개정 운동 뿐만 아니라 지역조례제정운동도 중앙과 지역이 일관되게 주요 사업으로 설정하여 급식법 개정을 염원하는 국민들과 힘을 모아 급식운동에 당력을 집중할 것임.
- 급식조례제정(청원)과 법개정은 긴밀한 관계이므로 급식 운동의 힘이 이전보다 배가 될 것으로 보임.

3. 학교급식 관련 정부의 태도

- 정부는 학교급식정책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올바른 철학이 부족한 상태임
- 학교급식에 대한 올바른 정책마인드를 갖추고 법과 제도 개선에 나서야 할 것임

1) 교육인적자원부

- 급식을 교육의 일환으로 보면서도 소극적으로 대책을 수립하고 있음
- 급식문제의 원인을 명확하게 진단하지 못하고 무상급식, 직영급식, 우리농산물 3원칙을 왜곡하여 법개정안을 내놓아 시민단체들의 심한 반발을 유발함
- 외교통상부의 잘못된 해석을 교육적인 고려없이 기계적으로 받아들여 학교급식조례 무효 소송을 전북과 경남교육청에서 제기한 상태임

2) 외교통상부

- WTO의 눈치를 보며 국내 농업기반을 뒤흔들 농산물 수입개방에 열을 올리고 있음
- 전국민적인 염원과 국내 수많은 단체들의 피땀어린 노력을 물거품으로 만들 수 있는 국제협약 해석을 신중한 검토없이 유포하고 있음.
- 철저한 검증과 논의없이 학교급식조례에 대한 WTO 협정위반 해석으로 농림부, 교육부가 우리 농산물 사용에 부정적 태도를 갖도록 함.
- 당차원에서 학교급식조례가 WTO협정위반이라는 해석을 내린 외교통상부(관련자 포함)에 대해 엄중한 책임을 묻는 등 법적인 대응을 전개할 계획임.

3) 농림부

- 지방자치단체의 지역농업에 대한 위기의식, 농민을 위한 정책마련 등에 비해서 농림부는 고민이 부족하며 정부부처 사이에서 농민을 대변하지 못하고 뒷집지는 모습을 유지, 고수하고 있음
- 학교급식정책이 우리 농업을 살리는데 중차대한 해결방안임에도 불구하고 WTO협정과 관련해 뚜렷한 입장표명도 없고 국제적 대응도 미약하며 학교급식에 우리 농산물 공급 계획도 긴밀하고 신속하게 내놓지 못하고 있는 상황임.
- 이러한 농림부의 태도는 여러 농민단체로부터 거센 비판을 받고 있음.

4. 국본의 급식법 개정안의 특징에 대해

- 올바른 급식에 대한 고민과 열망이 오랜기간 다양하게 토론되고 반영되어 완성도가 높음
- 급식의 목적, 운영방식, 식재료, 재정지원 등 기존 급식 시스템의 문제를 해결하는 전면적인 급식제도 개편안임
- 우리농산물 사용, 학교 직영, 무상 급식의 원칙이 제대로 규정된 법안임
- WTO 협정 관련 법적 논란, 대규모 위탁급식업자와 교장들의 강한 반발, 1조원이 넘는 예산증액 등 쉽지 않은 걸림돌로 난항이 예상됨

5. 급식법 개정을 위한 국본의 사업 방법 제안

- 전 국민적인 열망이 담긴 급식법 개정안을 다양한 방법으로 선전하고 설명하여 계속적으로 학교급식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높아 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임.
- 급식법 개정운동을 새로운 기화로 삼아 폭넓게 단체와 개인이 해당 지역, 부문 등 여러 공간에서 높고 낮은 수준에서 함께할 수 있는 계기를 제공하고 그 힘으로 지역 급식조례제정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국민참여운동을 확산시켜 나가야 함.
- 정치권과 정부가 중요한 공공정책으로 삼아 법개정에 동참하도록 개인적, 조직적으로 접근하여 다각적인 홍보와 설득 작업을 진행하고 급식운동의 취지에 동의하는 정치인들의 참여를 약속 받아내야 함.
- 법개정 이후 원활한 법 집행이 될 수 있도록 관련부처, 지자체, 지방의회와 협의하는 등 치밀하게 제도를 정비하고 향후의 계획을 수립하여야 함.

6. 법개정에 대한 낙관적 전망

-나라의 미래와 깊이 관련된 일: 단순히 '학교급식'법 개정 문제가 아니라 교육, 농업, 환경, 주권문제와 긴밀하게 연관되어 우리 나라의 장래를 위한 매우 중요한 법 제정 작업임.

-충분히 타당하고 현실가능하다: 급식법 개정의 중요성으로 말미암아 법개정의 여러 장애물은 법적 논리적인 설득과정과 단계적인 해결방안 제시로 충분히 극복이 될 것임.

-높은 관심과 참여로 난관 돌파: 국민적인 관심과 염원이 다른 어떤 사안보다 높아서 급식법 개정을 위한 국민들의 대대적인 참여가 이뤄질 수 있고 다양한 요구 표출이 가능할 것으로 보임

-민심을 대변할 진보정당의 국회진출: 급식법 국민운동본부와 함께 적극적으로 대중적인 급식운동을 진행해온 민주노동당의 국회진출로 이상적인 법개정안 발의가 가능해졌음, 이를 지렛대삼아 적극적으로 법안을 추진하고 타당의 정치인들과 정부를 견인할 수 있게 되었음.

-국회내 지형의 변화와 급식문제 해결 노력: 열린우리당이 다수당이 되었으며 여당의 한계에도 불구하고 개별적이고 추상적이지만 학교급식의 3대 원칙에 동의하는 의원이 다수 있음. 한나라당의 경우에도 급식문제에 동감하고 해결책 마련에 적극 나서고 있음.

7. 정부의 급식 대책 및 법 개정(안) 논리에 대한 민주노동당의 입장

1) 급식을 교육으로 본다면 무상급식은 의지로 실현가능하다.

-현재 704만명의 학생들이 12년동안 하루 한끼 이상의 식사를 함

-학교급식은 교육과정으로서 바른 식습관을 배우고 건강한 국민으로 성장하며 음식과 생명, 인간과 자연의 유기적 관계를 깨닫는 과정임

-학교급식의 교육적 목표를 정확하게 설정하고 학교 교육의 일환으로서 급식을 학생들에게 무상으로 실시해야 함

-국가가 정책의지를 가지고 의무교육과정부터 단계적으로 무상급식을 실시할 계획을 천명해야 함.

-국가가 급식을 책임진다면 저질, 싸구려 급식은 사라지고 세계 최고의 학교급식사례를 만들 수 있을 것임 (민주노동당의 공약-꿈임)

2) 국가의 중요한 공공정책으로 학교급식을 설정하면 우리 농산물 사용 가능하다

-정부는 급식제도를 국가의 중요한 정책으로 설정해야 함.

- 학교급식은 우리의 먹을거리, 식생활 습관, 전통문화, 우리농업에 대한 교육의 일환이므로 그 교육의 재료는 외국산농산물이 아닌 우리농산물이어야 함.
- 정부의 WTO승배는 사대주의 정책의 표본으로서 자국민을 염두에 두지 않고 있으며 법리적으로도 타당성이 없음
- 미국은 학교급식법에서 자국농산물 사용을 규정하고 있음
- 우리농산물을 학교급식재료로 공급하는 것에 대해서 WTO협정상의 근거가 분명히 존재함
- 문제는 외교통상부 관료를 필두로 정부가 급식을 학부모들의 일로, 위탁급식업자의 장사수단으로 인식한다는 점임.

미국의 학교급식법 '미국농무부 장관은 학교의 급식담당자에게 가능하면 최대한 미국산 농산물과 식품을 구매하도록 요구하여야 한다'

WTO정부조달협정 제23조 2항은 정부가 공중의 안전과 건강을 위해 추진하는 정책에서 국내산 상품을 우선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음. 또한 WTO협정은 정부가 공공목적을 위해 구입하는 상품에 대해서는 시장에 판매될 용도가 아니면 내국민대우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음.

한국의 'WTO 협정의 이행에 관한 특별법' 제2조 "협정의 어느 조항도 세계자유무역체제의 일원으로서의 우리나라의 정당한 경제적권익을 침해하는 것을 용인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없다" (이상 송기호 변호사의 발제문 등 참조)

3) 위탁급식은 그 출발부터 잘못되었고 직영급식으로 반드시 전환되어야 한다.

- 위탁급식은 정부가 학교 급식을 확대할 때 예산을 이유로 민간자본을 유입하면서 생김
- 위탁급식업자는 이익을 남겨야 하므로 값싼 식재료를 사용할 수 밖에 없는 한계를 가짐
- 값싼 식재료 사용은 품질의 문제로 이어지고 식중독 사고 등 불량 급식의 원인으로 작용함
- 그동안 학교급식 전문가들은 위탁급식을 급식문제의 중요한 원인으로 진단하였음
- 국내 식중독 사고의 절반이 학교급식 식중독이고 작년의 경우 직영에 비해 위탁의 식중독 발생율이 10배에 이룸
-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급식법개정안, 급식개선안은 위탁급식을 존치하려고 하고 있음
- 계약이 만료되지 않은 위탁급식은 계약기간이 만료하면 직영으로 자동 전환하면 될 것임.
- 직영급식으로 전환하고 영양사(교사), 조리사 등 급식 종사원들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우수한 우리농산물을 사용하여 급식의 질을 담보하여야 함.

학교급식법 개정에 대한 의견

이 유 훈

교육부 특수교육보건의과장

학교급식법 개정과 관련하여 토론회를 주최하신 학교급식법 개정과 조례제정을 위한 국민운동본부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학교급식은 1992년부터 적극 추진되어 올해는 1만개교의 초·중·고등학교에서 704만명의 학생이 급식을 실시하고 있음. 이렇게 세계에서 유례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단기간에 학교급식이 크게 확대된 것은 학교급식 확대를 위한 정부의 행·재정적 지원도 컸지만, 일선 학교현장에서 학교급식 운영관리를 담당하신 여러분들과 학부모님들의 절대적 지원과 협력 덕분이다.

초·중·고 전면급식이 이루어지자 그동안 양 중심의 학교급식정책을 질 중심의 정책으로 전환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또한, 학부모단체와 농민단체들로부터 학교급식의 질 향상과 안전성 확보, 우리 농산물 사용확대를 위하여 학교급식법을 개정하자는 많은 요구들이 많이 나왔다. 이와 관련하여 지난 16대 국회에서 7건의 학교급식법중개정법률안이 의원입법으로 제출되기도 하였다. 법안심사소위에서는 다수의 법안을 통합하여 올해 정부입법으로 개정을 추진하도록 함에 따라 현재 학교급식법개정을 추진 중에 있는 것이다.

법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방법은 2가지가 있다. 하나는 국회의원에 의한 의원입법과 행정부에 의한 정부입법에 의한 것이다. 정부입법은 법률 소관부처가 발의하여 관계부처의 협의와 입법예고를 거치고,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정부입법안이 완성되는 것이다. 이렇게 만들어진 정부입법안은 국회에 이송되어 다시 소관위원회와 법사위의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서 의결되고 대통령의 재가를 득한후 공포·시행되는 것이다.

따라서, 정부입법의 경우 관계부처의 합의하에 이루어지므로 의원입법과 달리 많은 한계가 있는 것이 현실이다.

그동안 학교급식의 질 향상, 제도보완을 위하여 우리부나 국민운동본부나 모두 많은 노력을 하여왔으나, 학교급식법 개정을 둘러싸고 이견이 큰 것처럼 비추어 지는 것은 정부입법의 한계 때문인 것이다.

여기서는 그동안 국민운동본부에서 꾸준히 제기하여온 '우리 농산물 사용' '직영급식 의무화' '무상급식'에 대하여 논의하겠다.

첫째, 국내산 농산물 급식재료로 사용하는 것에 대하여

학교급식에서 우리 농산물 소비를 확대하여 농업생산 기반을 확보하고 농가소득도 증대시키며, 우리 학생들에 건강 증진과 우리 먹거리에 익숙해지게 하자는 뜻에는 전적으로 동감한다.

그러나 학교급식법으로 이를 명시하고, 의무화하기에는 어려운 점이 많다.

WTO 협정중 관세 및 무역에 관한 협정(GATT)과 정부조달에 관한 협정에서는 국내산과 외국산을 차별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다만, 정부조달에 관한 협정에서는 국가는 연 2억원, 지방자치단체는 연 3억원의 범위내에서 국·공립학교에 한하여 국내산 농산물을 지원하거나 국내산을 구입할 수 있는 경비를 지원할 수 있어 학교급식법에 국내산 농산물 사용을 규정하기는 것은 실효성이 없다.

그래서 우리부는 지난해 12월 학교급식법시행령을 개정하여 시·도지사·시·군·구청장이 학교급식에 품질이 우수한 농산물이 사용될 수 있도록 식품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이에 따라 자치단체의 식재료지원 조례제정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전라남도의 경우는 올 7월부터 지원사업을 할 예정으로 120억원을 확보해 놓은 상태이며, 인천시, 대전시, 광주시, 경상북도는 조례를 제정하고 이를 시행하기 위한 하위법령을 정비중에 있다. 특히, 전남의 경우는 우수 식재료를 직접 지원하므로써 지역사회 농업생산활동, 즉 우리 농산물 생산증대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생각된다.

이번, 정부안의 학교급식법에서도 종전에는 식재료에 대한 규정이 없었으나, 학교급식에는 품질이 우수하고 안전한 식재료를 사용하도록 하고, 식재료의 품질과 안전관리기준 등은 시행규칙으로 정하도록 하였으며, 계약방법도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한경쟁입찰, 지명경쟁입찰, 수의계약을 할 수 있도록 특례조항을 두어 우수한 우리농산물이 학교급식에 많이 공급될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하였다.

둘째, 직영급식 의무화에 대하여

학교급식은 비영리로 양질의 급식을 안전하고 저렴하게 운영되어야 하고, 최대한 직

영급식을 해야한다는 취지에는 동감하나, 직영급식을 강제하는 것은 학교의 자율성을 저해하는 요인이 될 수도 있다. 급식운영형태는 현제도의 문제점을 보완하되, 그 선택은 학교가 자율적으로 하도록 함이 바람직하다.

위탁급식을 할 경우에도 지금과 같이 급식계획, 식단작성, 식재료 구매, 조리, 배식 작업 일체를 위탁하기 보다는 일본이나 영국의 사례와 같이 부분적으로 위탁할 수 있도록 하므로써 현재의 위탁급식제도의 단점을 보완하며, 급식운영방법 결정에 있어 학부모의 의견이 보다 많이 반영될 수 있도록 개선함이 필요하다. 따라서 정부안에서는 학교급식업무의 일부를 위탁할 수 있도록 업무위탁제도를 도입하되, 업무위탁방법에 대하여는 시행령으로 규정하고, 시행령에서는 학교장이 재적학생 일정비율 이상의 학부모 찬성을 얻어 학운위 심의를 거쳐 업무위탁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므로써 학부모의 의견이 보다 확실히 반영되도록 할 계획이다.

한편, 우리부는 직영전환을 적극 유도하기 위하여 지난해부터 직영전환을 희망하는 학교에 대하여 급식시설 개선비를 지원하여 직영전환을 유도하고 있으며, 앞으로 2007년까지 1,093개교에 대해 1,224억원의 예산을 지원할 계획이다.

셋째, 무상급식 추진에 대하여

많은 나라가 의무교육 대상학교에서 학교급식을 실시하고 있으나, 의무교육 대상학생 모두에게 교육과 같이 무상으로 급식을 실시하지는 않는다. 학교급식비는 자부담이 원칙이고, 정부는 저소득층에 대하여만 급식비를 지원하여 무상급식을 하고 있다. 물론 국가의 재정형편에 따라 무상급식율은 다르나, 미국의 경우 전체학생의 48%에게 무료급식을 하고, 8%에게는 할인된 가격에 급식을 하며, 44%의 학생은 자부담으로 급식비를 하고 있다.

일본의 경우 생활보호대상자에 대하여는 생활보호법에 의거 급식비를 지원하며, 생활보호대상자는 아니나 그에 준하는 학생에 대하여는 학교급식법에 의거 국가와 공립학교 설치의무자(지자체)가 지원하고 있다. 영국의 경우도 사회보장을 받는 계층의 자녀에게는 무료급식을 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IMF를 계기로 급식지원이 크게 확대되어 2003년부터는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와 차상위계층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되었다.

그러나 저소득층학생의 교육복지증진을 위하여 우리부는 2007년까지 연차적으로 지원대상을 차상위계층으로 확대할 계획이며, 농어촌지역의 학생에 대하여는 현재는 초등학생에게만 식품비의 일부를 지원하고 있지만, 우리부 개정안에는 중·고등학교까지 지원을 확대토록 하였으며, 의무교육대상 학생에 대하여는 국가의 재정여건을

고려하여 급식비 지원을 순차적으로 확대하도록 할 계획이다.

세계 여러나라에서 학교급식을 실시하고 있지만 각 나라마다 학교급식을 시작한 배경과 시기, 대상, 방법, 정부의 지원은 나라마다 다르다. 우리나라의 경우 학생의 심신의 건전한 발달을 도모하고 나아가 국민식생활 개선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시작되었으나, 1990년대 학생의 책가방 무게를 덜어주고 학부모의 도시락 준비부담을 덜어주며, 여성의 사회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정책적으로 크게 확대되어 10여년이 지난 지금은 초·중·고 전면급식이 실시되고 있다.

세계에서 유래가 없을 정도로 단기간에 학교급식의 양적확대를 이루어내자 학교급식법개정과조례제정을 위한 국민운동본부에서는 학교급식의 목적까지도 국내생산농산물의 소비촉진과 안정적인 식량수급에 기여함으로 확장해야 한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학교급식과 관련한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갖는 여러단체에서 나름대로 자기 입장에서 주장을 하고 있다. 그러나, 국가의 재정형편 등을 고려하면 모두의 의견을 다 학교급식법에 반영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

각각의 입장에서 논의는 충분히 하되, 실현 가능한 최선의 학교급식법, 우리 아이들을 위한 학교급식법으로 개정되도록 서로 양보하고 합의하는 지혜를 발휘하기 바란다. 감사합니다.

학교급식법 개정방안 토론

최 대 휴

농림부 농산물유통국 식품산업과장

학교급식법 개정안에 대한 제언

손진욱

국무조정실 식품안전 T/F팀

- 학교급식이 갖고 있는 문제에 대해 세부적이고 소상한 부분까지 심도있게 검토하여 대안을 제시하고 있음
- 학교급식의 수준 향상을 위해 검토하여야 할 방향을 제시하고 있음
 - 학부모 급식비 부담 경감
 - 양질의 식재료 사용
 - 급식관리체계 등
 - 특히, 급식전담직원의 배치, 식재료 공급계약, 급식지원심의회 등에 관한 사항에서 그 고민의 깊이를 볼 수 있었음
- 전문지식을 갖춘 전담직원
 - 학교급식의 적절한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조리 및 회계, 운영관리, 위생관리 등 급식의 질과 안전을 위한 전담 직원 기준, 업무규정 등을 정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는 적절한 학교급식을 위해 필요한 요소와 인력을 분석하게 하고 업무를 명확히 하여 업무 수행의 책임성을 제고할 것
- 식재료
 - 질 높은 학교급식을 위해 학교에서 사용하여야 하는 식재료 기준을 세부적이고 상세하게 제시하고 있음
 - 그러나 식재료의 범위가 너무 좁으면 공급이 제한되어 수급이 어렵고, 제도적으로 식재료 공급을 지원할 수 있도록 준비된 공급망 등의 상태, 시장의 상황, 가격조건 등을 면밀히 고려하여 검토할 필요
 - 식재료의 추적가능성을 규정한 부분은 학교급식의 안전과 위생을 위하여 필요한 부분을 잘 지적하였음

- 생산품의 직접 사용
 - 학교가 직접 재배하거나 학교와의 협력을 통해 생산된 생산물과 그 매각대금을 학교급식으로 사용하도록 한 규정은 새로운 형태의 교육활동의 산물을 학교급식에서 수용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규정으로 시의적절한 것으로 생각됨

- 학교지원심의회
 - 시도에 두도록 한 학교지원심의회는 학교급식의 개선을 위해 일반자치단체의 참여를 보장하도록 한다는 점에서 유의미 함
 - 활성화 될 경우 학교급식의 상당한 지원이 될 것으로 전망

- 장기적으로 검토할 사항들이 있음
 - 학부모의 부담경감, 학교급식의 질 제고를 위한 관리체계의 재검토 등의 필요성에 공감함
 - 그러나 현실적 어려움과 현행 제도 상 제약, 학교현장의 추진 주체의 생각의 차이 등으로 당장 실현하기 어려운 점들도 있음
 - 필요성을 강조하여 성급하게 추진하다가 어려움을 겪는 사례들이 많이 있으므로 내실있는 준비와 다양한 주체들의 합의를 통해 진행시켜 나가야 할 것

- 학부모, 시민단체, 교원 등 많은 분들의 참여와 논의를 통해 학교급식을 개선하기 위한 좋은 방안을 마련할 것으로 기대

교육과 생명은 상품이 아니다

이 철 호

전교조참교육연구소 부소장

지난 7월 2일 '교육공공성실현 교육개혁촉구 비상국민회의'가 열렸다. 이 자리에 참석한 교육관련 100여개 단체와 개인들은 현재 한국사회는 이미 빈곤이 고착화되어 가고 있는데 이 과정에 교육이 중요한 기제로 작동하고 있으며, 대학서열체제로 인한 학벌사회의 모순으로 입시지옥은 갈수록 격화되고 있고, 초중등교육만이 아니라 대학교육 조차 실종되어 가고 있기에 교육의 위기 상황임을 선언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국민들의 바람에도 불구하고 공교육을 정상화하기보다는 대학구조 조정, 국립대 민영화, 경제논리에 따른 평준화 해체, 사학청산법, 교육주권을 포기하는 외국교육기관특별법, 국민의 열망을 저버린 급식법 개악 등을 시도하고 있기에 이날 회의를 통하여 당면 교육위기에 대한 실천적인 대안을 제안한 바 있다.

이날 주요하게 논의된 과제들은

- EBS 수능 방송 일제시청 중단 및 수능 출제 연계 방침 철회.
- 서열화 시험인 수능 폐지 및 대학입시제도의 개혁.
- 사학청산법의 폐기 및 사립학교법의 민주적 개정.
- 안전한 우리 농산물을 사용한 직영 무상급식 실시.
- 외국교육기관특별법의 폐기 및 교육개방 중단 등이었다.

또한 지난 총선시기에도 교육개혁 진영의 단체들은 총선교육연대를 구성하여 주요한 개혁의제를 제출하였으며, 제 정당에서는 총선교육연대의 공약요구안을 의제로 받아들이기도 하였다. 이 공약요구안의 4대 핵심요구는

- 학생회 학부모회 교직원회 법제화와 교장선출보직제 실현으로 학교 자치 민주화 토대 구축
- 민주적인 사립학교법 개정으로 사학의 공공성 강화
- 안전한 우리 농산물을 사용한 직영·무상 학교 급식 실현
- 개방화·시장화 정책을 중단하고, 공교육에 대한 국가의 지원 확대 였다.

국민들의 교육에 관한 열망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지난 6월 15일 국무회의에서는 “제주 국제자유도시 및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을 통과시켰다. 외국의 교육기관은 학교에서 장사를 하여 얻은 이익을 송금할 수 있고, 일주일에 국어, 국사 한 시간만 수업을 받아도 대학 입학에 필요한 학력을 인정해 줄 수 있다는 이 법안은 그나마 유지되어왔던 공교육의 기본 원칙을 근본적으로 훼손시키는 것이다.

게다가 오늘 토론이 진행되고 있는 급식 문제에 이르면, 도대체 정부가 입만 열면 말하는 국익의 정체가 의심스럽기만 하다. 그간 우리 농촌을 살리고 우리 아이들에게 우리 농산물을 먹게 하자는 급식법 개정 운동이 자발적인 참여로 전국 곳곳에서 전개되었으며 시·도 단위의 조례로 만들어졌다. 그러나 이렇게 국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한 국민참여운동을 참여정부가 나서서 가로막고 있다. 즉, 우리 농산물을 우리 자녀에게 먹이자는 급식조례가 국제법을 위반하였다고 외교통상부, 행정자치부, 교육부가 나서서 시비를 걸고 있는 것이다. 미국이나 일본에서는 자국 농산물을 먹게 하는 법률안이 버젓이 시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도대체 우리 정부의 관료들은 어느 나라와 어떤 국민들을 위한 공복인가?

이제 본격적인 토론에 앞서 먼저 발제하신 두 분께 감사드린다. 이빈과님은 급식운동의 주요한 전개와 당위성과 함께 구체적으로 법안을 비교해 줌으로써, 급식법 개정 방향을 제시해 주셨다. 송기호님은 국민전체의 삶과 직결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론화되지 않은 채 밀실에서 은밀하게 진행되고 있는 WTO개방 협상의 내용을 소상하게 분석함으로써 또한 급식법 개정운동의 방향 정립에 주요한 이해를 주셨다.

토론자는 발제자가 제시한 급식법 개정의 세 가지 지점에 전적으로 동의하며 이에 대한 의견을 덧붙이고자 한다.

첫째, 학교 급식은 직영이어야 한다.

학교급식은 공정거래나 경쟁에 의한 선택의 문제가 아니다. 학생과 학부모는 학교급식 이외의 다른 선택이 없기 때문이다. 게다가 교육부가 발표한 학교급식관련 주요 통계현황에 의하면 2003년 위생사고 발생 건수가 위탁급식이 직영급식의 13.4배, 피해 학생수가 14.6배에 이르고 있다. 이런 명확한 통계자료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직영을 실시하지 않겠다는 의도를 이해할 수가 없다.

위탁업자는 당연히 영리를 목적으로 운영을 할 수 밖에 없기에 질관리에 소홀할 수 밖에 없다. 또한 독점공급 계약의 과정이 업체와 학교간의 이해관계에 따라서 이루어질 가능성이 더 크다는 것이 지금까지 입증된 바이다. 하기에 직영으로 해야 학교급식이 영리성을 떠나 질 좋은 급식의 공급이 가능하다는 상식적인 판단이다.

직영급식에도 단점은 있다. 직영급식이 무수히 많은 교육적인 효과나 바람직하다는

결론에도 불구하고 이를 봉쇄하는 단점은 바로 장점이 많다는 것이다. 교장의 경영 수완을 보일 수 없다는 것, 기업의 이익을 보장하지 못한다는 것, 교육에 관한 공공의 책임의 영역이 늘어난다는 것, 바로 이런 단점 때문에 도입이 어려운 것은 아닐까?

다음으로, 우리 농산물을 사용해야 한다.

우리 농산물을 우리 아이들에게 먹이자는 것이 WTO DDA 협상에 위배된다고 대한민국 정부가 말하고 있다. 그런데 국민들이 정말 궁금한 것은 알 수 없다는 것이다. 협상이 어느만큼 진행되었는지, 주요 의제는 무엇인지, 이 협상이 반드시 해야만 하는 것인지, 협상의 결과 우리 삶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국민들은 모르고 있다. 여하튼 이런 중차대한 문제를 민주주의적 의사 수렴의 과정 없이 정부는 진행하고 있다. WTO 체제는 초국적 자본의 이윤추적에 유리한 환경을 구조적으로 보장해주는 기구이며, 우리 입장에서 보면 생명산업인 농업과 교육이나 문화, 의료 등의 공공성 희생 위에 국내외자본의 이익을 위한 체제임이 분명하다. 하기에 DDA 협상에 있어서 핵심적인 사안인 농업과 공공성 파괴를 막아야 한다. 구체적으로 교육, 보건의료, 문화, 물, 식량 등을 DDA 협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이는 '자유무역의 대상'이 아니라, 헌법에서 보장하는 '권리의 영역'이기 때문이다.

주목하는 지점의 하나는 우리가 유전자 조작식품이나 수입 식품들에 대해 너무 모르고 있다는 것이다. 아마 정부에서 고집하고 있는 '우수'농산물의 정체는 '아직 부패하지 않은' 이거나 '아직 먹을 수 있는' 정도의 의미일 것이다. 그러나 조금만 더 연구해 보면 지금은 먹을 수 있다고 판정을 하고 있지만 그것이 정말 먹어도 좋은 것이었는지 아무도 장담할 수 없다. 우리의 미래인 우리 아이들은 제 땅에서 자란 제 철에 난 음식을 먹을 권리가 있다.

마지막으로, 무상이어야 한다.

정부의 정책은 경제와 복지의 양 날개로 나는 것이다. 국민경제활동의 성장의 결과로 얻은 부분을 국민들에게 복지로 되돌려 주는 것, 하기에 국가 정책의 기본은 경제 성장이며, 국가 경제의 기반이 든든할수록 더 나은 복지 정책이 펼쳐질 수 있다. 그러나 얼마나 더 국민경제의 수치가 높아져야 국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정책이 펼쳐지며, 복지 정책을 펼치기에 필요한 최소한의 정치적인 준비는 어느 정도인가. 국민소득 2만 불이 달성될 때까지 기다려야 하나?

복지의 기본은 교육이다. 교육은 이제 교육 내부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 전체의 문제이다. 하기에 국민들의 복지를 위해서는 교육의 기회와 결과에 있어서 가능한 한 차별을 줄여나가야 한다. 하기에 그 사회의 무상의무교육 수준은 현실적인 경제의 조건과 함께 그 사회의 복지에 관한 의식 수준이며, 미래를 위한 그 사회의 합의 수준이다. 사실 교육부의 산출 자료에 의하면 무상급식 실시 비용이 연 2조 1820억 (6061천명 × 2000원 × 180일)가량 소요된다. 이는 정책적인 판단의 전환만으로 충

분히 실시가 가능한 수준이다.

이제 토론을 마치면서 한 말씀을 더 드리고자 한다.

학교급식정책은 교육정책임이 분명하지만 교육정책만은 아니다. 보건의료정책이며, 농업정책이며, 국가균형발전 정책이다. 그리고 노동정책이기에 급식 정책은 경제 정책일 수밖에 없다. 현재 정부의 경제정책의 추진 기본원리가 효율성이라면, 그 효율성의 적용시기와 범위에 있어서 너무나 근시안적이다.

실제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6ha이상 기업농 중심의 농업 재편 정책 방향을 그대로 견지한다면 우리농산물을 사용한 안전한 급식 정책은 애초부터 꿀 수 없는 꿈이다. 분석에 의하면 이 정책으로 인해 농촌의 일자리가 30만개 정도가 사라진다고 한다. 당연히 기업농 정책으로 농촌 자체가 사라질 것이며, 소농경제는 붕괴할 것이며, 소규모 학교는 통폐합 될 것이다.

기업형 영농에서 친환경 영농을 한다는 것은 당초부터 불가능한 상상이다. 농촌학교 살리기는 농촌의 균형발전전략으로 생각해야 하며, 이는 소농을 중심으로 일자리를 살려 나가는 정책이며, 이럴 때에야 비로소 유기농 중심의 친환경 농업이 살아남을 수 있다.

우리 아이들의 건강한 미래를 위하여, 지속가능한 다음 세대를 위하여 지금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다시 생각할 때이다.

농업회생을 위한 학교급식법 개정의 방향

박 응 두

전국농민회총연합 정책위원장

1. 학교급식법 개정의 방향과 내용에 대해

“식량자급율 26.9%

국민일인당 기준 미국 농산물 최대 소비국

농민 평균 연령 60세 육박

도농간 소득 격차 73%

농가부채가 농업소득을 앞질러“

국민에게 안전한 먹거리를 공급하고 국가경제 발전의 기초산업으로, 각종 원자재와 노동력을 공급하고 공산품의 소비지로서 역할을 해온 농업농촌이 처해 있는 상황을 증명해주는 수치들이다.

학교급식은 두가지의 분명한 자기 방향을 갖아야 한다.

그 첫째가 성장기에 있는 배우는 학생들에게 안전한 먹거리를 급식으로 제공함으로써 건강을 유지하게 하는 것과 올바른 식습관을 길러 내고 민족문화의 전통을 계승하여 장차 국가발전에 필요한 인재를 육성하는데 있다.

예로부터 먹거리가 인성을 결정짓는 중요한 문제이기에 제철에 자기 지역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우선 소비하도록 하였다. 이는 복잡한 유통과정을 거치지 않은 신선 농산물을 먹거리로 제공함으로써 건강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할 뿐아니라 우리 먹거리가 생산되고 소비되는 과정에 깃들여져 있는 문화적 정서까지도 체현하게 하는 의미를 담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성장기에 있는 학생들이 한번 길들여진 입맛을 바꾼다는 것은 대단히 어려운

문제이기에 학교급식을 통해 올바른 식습관을 길러주는 것은 건강한 미래사회를 위해서 꼭 필요한 국가적인 시책인 것이다.

둘째는 학교급식에 필요한 식재료를 우리 농산물을 우선 사용하게 함으로써 개방으로 인해 해체 일로에 놓여있는 농촌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일으키는데 있다.

현재 농업, 농촌은 계속되는 수입개방으로 인해 농가소득이 줄어들고 부채가 증가하여 심각한 위기에 직면해 있다. 또한 계속되는 가격폭락으로 인해 생산의욕을 잃어가고 있어 식량자급도가 26.9%(쌀을 제외하면 5%)까지 하락해 있는 실정에 있다. 때문에 애써 생산한 농산물에 대한 안전한 판로를 확보하는 것은 농촌사회 유지의 필수적 관건이다.

학교급식에 우리 농산물을 사용한다는 것은 무엇보다도 우선 자가지역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우선 사용하도록 하는데 있다. 물론 광역도시와 수도권은 우리농산물을 사용한다는 취지에 맞게 지방자치단체나 생산자 단체와 식재료 공급계약을 맺고 안정적이고 계획적인 공급계약을 체결함으로써 해당지역 농업생산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특히 이러한 과정은 식재료 공급에 따른 급식의 문제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생산현장에 대한 체험학습등을 통해 농업을 올바르게 이해 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함과 동시에 노동의 가치에 대한 인식을 제고시키는 의미를 가져야 한다.

2. WTO 규정에 대한 입장

학교급식법 개정의 핵심골자는 식재료로서 우리농산물 사용의 의무와 급식공급 체계로서 직영화에 대한 문제이다. 직영화의 문제는 논외로 하더라도 우리농산물 우선 사용에 대한 논란에 대해 다음과 같은 견해를 피력한다.

우리 농산물 사용에 대한 의무규정이 WTO 규정에 합치하는 가 하는 문제는 국내에서 논의할 문제가 아니라 WTO에서 판단하고 결정할 문제이다.

WTO에 의해서 우리나라의 학교급식법이 논의되거나 규정위반의 문제가 제기되어 제소가 되기 위해서는 그에 대한 구체적인 정황이 드러나고 그로 인해 심각한 무역왜곡이 발생했을 때 가능하다. 때문에 몇가지 문구 해석에 얽매어 학교급식법 개정이 가지고 있는 기본 정신을 왜곡하거나 훼손하는 것은 빈대 한마리 잡기 위해 초가삼간에 불을 놓는 격이다.

특히 이문제는 관련조항에 대한 적극적이고 자주적인 해석을 통해 선 적용을 통해 제기되는 문제를 해결해나가는 전향적인 입장이 필요하다. 그것이 장기적으로 국익에 필수적인 과제임에는 더욱 그러하다.

또한 최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제정과 관련하여 정부에서 제의를 요구하는 것은 농업의 문제를 식량안보, 식량주권의 문제로 보지 못하고 개방 대세론에 길들여진 탓이라고 할수 있다. 농산물의 절대적 수입국인 우리나라는 이미 식량안보가 심각하게 위협을 받고 있기 때문에 국가의 정당한 권리로서 식량의 수급과 관련된 정책을 자주적으로 결정해야 한다.

3. 개정법안에 대한 견해

전반적인 체계와 내용에 대해서는 동의하나 제 1조 (목적)의 규정에 따른 내용들이 급식법안에 충분히 명기되어야 한다. 이에 다음과 같이 각 조항에 대해 보다 분명한 내용이 반영되어야 한다.

1) 식재료공급업자의 정의에 대해

[개정안 제 2조(정의) 4항] - “식재료공급업자라 함은식재료를 공급하는자를 말한다”

⇒ “식재료공급업자라 함은 식재료를 공급하는자를 말하며 생산자 및 생산자 단체를 포함한다”.

2) 식재료의 규정에 대해

[개정안 제 10조(식재료) 1항] - “학교급식에는..... 품질이 우수하고 안전한 식재료를 사용한다”

⇒ “학교급식에는 품질이 우수하고 안전한 식재료를 공급하되 우리농산물을 우선 사용하도록 한다”

4. 결론을 대신하여

학교급식은 종국적으로 생산과 소비의 일원화를 통해 소비자의 건강권을 지켜냄과 동시에 생산의 계획화 안정화를 통해 농업의 발전을 꾀하는데 있다. 때문에 학교급식이 올바르게 시행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생산의 기본 토대인 농업,농촌에 대한 새로운 인식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학교급식조례 제정과정의 갈등 해소방안

2004. 6. 29

국무조정실

1. 배경

□ 경 위

- 일반자치단체장이 학교급식의 식재료 구입에 대해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 마련(2003. 12 학교급식법 시행령 개정)
- 일부 자치단체의 경우 “우리농산물 사용”이라는 표현으로 조례제정을 추진함에 따라 재의 또는 대법원 제소로 사회적 갈등 확산
 -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WTO의 관련규정을 명확하게 해석하고 정부의 입장표명 필요
- * 국무조정실, 외교부, 재경부, 농림부 등 관계부처 회의를 개최하여 관련조례 내용의 WTO규정 합치여부 및 합치될 수 있는 표현 검토

□ 조례제정 현황

- 기 확정된 조례
 - 전남·경북·인천 등 3개 광역자치단체
 - 진주·나주 등 7개 기초자치단체
- 대법원에 제소 또는 재의를 요구하는 사례가 생기고 있음
 - 대법원 제소 : 경남도, 전북도
 - 재의 요구 : 안산시, 제주도
- 추진 또는 추진 예정인 자치단체
 - 우수농산물로 표현 : 20개
 - 우리농산물로 표현 : 17개(광역3, 기초14)

2. 자국 농·축산물 구입에 대한 WTO관련규정 내용

(관련부처의 의견을 종합한 견해)

□ WTO 일반원칙, 조달협정 및 농산물 협정과 상호관계

- “내국민대우원칙”의 내용 및 적용범위(GATT 제3조 내국민대우)
 - 국내산과 외국상품을 차별하지 않아야 함(중앙·지방정부도 포함)
 - 다만, 정부조달행위를 규제하는 법령과 국내생산자에 대한 보조금지급 또는 국내 상품에 대한 정부구매 행위는 예외(제8항)
- * 정부조달 : 공공기관이 공공목적을 위해 물품 또는 서비스를 구매하는 행위
(단, 재판매용으로 하는 구매는 제외)

○ WTO 조달협정의 내용 및 적용범위

- 가입국은 정부 구매계약에서 외국산을 차별하지 않아야 함
- 다만, 각국이 시장개방을 약속하지 않은 분야에 대해서는 미적용
- * 우리나라의 경우 일정금액 이상의 중앙정부(13만SDR : 214백만원)와 광역자치단체(2십만SDR : 329백만원)의 조달행위에 대해서만 개방하고,

기초자치단체의 조달행위는 미개방

○ 농산물협정의 내용 및 적용범위

- 정부가 농업생산자를 위하여 행하는 모든 국내보조에 대해서 허용보조의 경우 그 유형을, 감축대상 보조의 경우 금액한도를 규정
- 감축대상 보조에 해당하는 경우, 농산물 생산액의 10%(약33천억원) 범위내에서 허용

○ 협정간 상호관계

- GATT규정과 WTO개별협정이 상충될 경우 WTO개별협정이 우선 적용됨 (마라케쉬협정 부속서1)
- WTO농업협정은 WTO여타협정(보조금 및 상계관세협정, 정부조달협정 포함) 및 GATT규정보다 우선적용(WTO 농업협정 21조)
- ⇒ 농업협정에서 인정된 범위내의 보조정책에 대해서는 “내국민대우원칙”의 적용을 받지 않음

□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면서 국제규범과 조화될 수 있는 표현

○ 광역시 및 도의 조례(WTO농업협정에 의거)

- 광역시장, 도지사는 학교급식에 우리 농축산물을 사용하는 경우 WTO 농업협정에서 허용된 범위내에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 “광역시장, 도지사는 학교급식 지원을 위한 식재료를 구매할 경우 우리 농산물을 우선적으로 구매하여야 한다”라는 표현은

- 광역자치단체의 경우 연간 329백만원 한도내에서 국내 농산물을 우선 구매시 WTO규정에 합치되나, 실제로는 그 이상이 되기 때문에 동 표현은 WTO규정 위배

○ 시·군·구의 조례

- 시장·군수·구청장은 학교급식 지원을 위한 식재료를 구매할 경우 우리 농산물을 우선적으로 구매하여야 한다(WTO 조달협정에 합치)
- 시장·군수·구청장은 학교급식에 우리 농축산물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WTO농업협정에서 허용된 범위내에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WTO 조달

협정에 합치)

- * 교육장이 “공립 초등·중학교장이 학교급식 식재료를 구입할 경우 우리 농산물을 우선적으로 구매하여야 한다”라는 지침시달은 WTO 조달협정에 합치

4. 향후 조치방향

- 의회 또는 시민단체와 협의를 통해 조례내용을 조화된 내용으로 수정하도록 권고(수용시 합의서를 체결한 뒤 재의결 또는 제소 취소)
- 조화된 내용의 범위내에서 조례가 제정되도록 추진예정인 의회 또는 시민 단체에 권고 또는 설득
 - * 행정자치부, 교육부의 “학교급식조례제정 관련지침”시달여부 검토

메모